

최종보고서 | 11-1541000-000397-01

농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연구주관기관 : (재) 지역재단

농림수산물식품자료실



0000099

농림수산물식품부

최종보고서 | 11-1541000-000397-0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연구주관기관 : (재) 지역재단

농림수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12.

지역재단 이사장 정영일

연구책임자 : 박진도(충남대)

공동연구원 : 김태연(단국대)

장종익(서울대)

유정규(지역재단)

박창규(지역재단)

연구보조원 : 하지숙(지역재단)

목 차

제 I 장 머리말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 II 장 사회적기업의 일반적 개념과 현황	5
1. 사회적기업의 일반적 개념과 발전	5
1)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기업	5
2) 북미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의 개념논의와 발전	10
2.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	15
1)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인증사회적기업	15
2)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의 현황	16
3. 현행 사회적기업의 지원체계와 한계	18
1) 현행 사회적기업 지원체계와 한계	19
2)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제도의 한계	22
제 III 장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활동영역	29
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필요성	29
1) 농어촌의 활력저하와 다양한 농어촌지역개발정책의 전개	29
2) 농어촌의 주체적 노력과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필요성	36
2.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활동영역	36
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정의 및 요건	36
2)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	39
3.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유형화와 지원대상	41
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유형화	41
2) 농식부가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42
제 IV 장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과제	45
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실태	45

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45
2)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별 분포	48
2. 현행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실태조사	49
1) 조사개요	49
2) 조사결과정리	51
3. 현행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과제	72
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의 정책방향	72
2)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74
제 V 장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육성방안	77
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요건	77
1) 현행 사회적기업의 요건	77
2)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요건	79
2. 기관·조직 인증에서 사업·프로젝트 인증으로 전환	81
1) 기관·조직 인증제도의 문제점	81
2) 사업·프로젝트 인증기준	83
3. 사업·프로젝트의 지원방안	86
1) 기존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	86
2) 사업에 대한 지원프로세스	87
3) 사업별·수익성을 고려한 차등지원	89
4.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조직육성 방안	89
5. (가칭) 농어촌형사회적기업 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방안	92
[부록 I]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에 관한 외국의 사례	94
1. 영국의 농촌 사회적기업 정책	94
2. 일본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의의와 과제	113
3. 캐나다의 농촌 사회적기업 정책	139

[부록Ⅱ]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모색을 위한 포럼결과 정리부록	148
1. 농촌형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실천방안	148
2. 한국의 농촌형 사회적기업 확대전략	160
3. 지역개발과 농촌형 사회적기업	174
[참고문헌]	185

【표 목 차】

<표 2-1> 유럽연합에서의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고용현황(2002~2003)	10
<표 2-2> EMES 네트워크의 사회적 기업 기준	11
<표 2-3> 유럽과 캐나다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법적 형태	13
<표 2-4> 구미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법적규정)	13
<표 2-5> 유럽의 사회적기업의 활동 영역(실제)	14
<표 2-6> 2009.9.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 건수	16
<표 2-7> 2009.9. 현재 사회적기업의 유형별·업종별·조직형태별 분포	18
<표 2-8> 2009년 사회적기업지원기관 현황	25
<표 3-1> 현행 사회적기업과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비교	39
<표 3-2> 농식품부가 지원해야 할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사업분야	44
<표 4-1> 2009년 9월 현재 농어촌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46
<표 4-2> 도시 소재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48
<표 5-1> 인증(=지원)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3
<표 5-2>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중점 지원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5점만점)	84
<표 5-3> ‘사업’의 평가(=심사, 인증)기준 例	85
<표 5-4> 사업별, 수익성을 고려한 지원비율(영국 농어촌기업지원 例)	89
<표 6-1>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특징	115
<표 6-2>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관점	118
<표 6-3>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유형	138
<표 6-4> 활동영역으로 구분한 연대협동조합(2007년7월31일 현재)	142
<표 6-5> 연대협동조합의 주요 통계	143
<표 6-6> 퀘벡 연대협동조합의 대표적 사례 요약	144
<표 6-7> 농촌형 사회적기업 활동 분야의 내발적 발전과의 관계	176

【그림 목 차】

<그림 2-1> 2009.9. 현재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인증 건수	17
<그림 3-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유형 분류	41
<그림 6-1>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영역	117
<그림 6-2>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사업화 과정	120
<그림 6-3> 생활자 요구(needs)와 커뮤니티비즈니스 과정	121
<그림 6-4>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기대 효과	122
<그림 6-5> 커뮤니티비즈니스론의 종합적 시각	136

제 I 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필요성

- 국가적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불균형발전은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측면까지 전 분야에서 심각한 수준임
 - 2006년도의 농림어업인 설문조사 결과 농어촌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답변으로 복지기반확충이 35.1%, 자녀교육여건개선 28.6%, 생활환경개선 12.7%, 주거환경개선 12.2%, 문화예술환경개선 4.8% 순이었으며, 2008년도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농산어촌주민들의 복지수준, 자녀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15.2%, 13.9%로 낮은 수준이었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질병치료시 '의료기관이 멀다'는 의견이 도시지역(4.2%)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24.3%)
 - 그 원인은 농어촌지역이 갈수록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그 결과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고령화는 심해지며, 또 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 등 생활 전반의 여건이 낙후되고, 그러한 원인으로 인구는 더욱 더 감소하는 '빈곤의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기 때문임

- 정부는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통합 차원에서 기초생활권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통해, 주거·교육·문화·복지 등 생활여건과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여건이 하나의 완결된 생활공간 내에서 충족되도록 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이러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추진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대책이며, 기초생활권의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임을 감안해 정부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통해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보다 향상된 사회서비스(National Minimum)를 전국 어디에서나 제공받고,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앞서 언급한 '빈곤의 악순환'도 시정될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기회를 정부가 나서서 직접 수행할 경우 행정비용의 비효율적 집행은 물론 사회서비스 등의 내용면에서 소비자들의 요구 (Needs)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임. 또한, 그러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의 특성상 많은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이 그 역할을 맡기에 한계가 있음
 - 한편,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공동화, 지역경제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보건의료·문화·교육 등의 사회서비스와 지속가능한 영농활동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기본서비스(National Minimum)를 보장하는 일이자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는 일이란 인식이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음
 - 또한, 국내외에서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음. 노대명(2008)은 “서구에서 사회적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태생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공급, 그리고 사회적 경제(또는 제3섹터) 육성이라는 세 가지 목적에 관심을 가진 각 주체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함.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영리기업과 다름없이 수익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둔 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사회적 기업이 기존의 사회서비스 공급조직들과 다름없이 전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복지단체나 비공식부문 경제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함. 일본의 지역경제학자인 미야모토 겐이치(宮本憲一, 2009)는 “공공개발사업과 비교해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사업이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고용효과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이나 의료·보건효과가 크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다양한 순기능을 제기하기도 했음.

-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을 통해 복지, 보건의료, 문화,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인증기준 과 심사요건에서 농업·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지원체계, 정책 프로그램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과 정책과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 영국 통상산업부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용되기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이라고 정의함.
 - OECD는 “사회적 기업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활동 및 공익활동을 포괄하는 것이며, 이윤극대화에 두지 않고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주 목적인 있다”고 설명함.
 - 이탈리아 사회적기업법은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민간조직으로서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주된 활동이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교환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정의함.

- 국내에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분기별로 현재까지 모두 7차에 걸쳐 총 252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음. 2007년의 경우 법 시행 초기의 엄격한 기준적용과 신청단체의 준비도 미흡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청대비 인증율이 33%(총 165개 기관 신청, 55개 최종 인증)로 낮았으나 이후 사회적기업 설립지원기관 위탁 운영 등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어 인증율은 꾸준히 향상됨. 또한 2008년 까지 신청 대비 인증율에서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영리조직 형태나 협동조합들이 높은 인증율을 보임
 - 이들 252개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 분포도를 보면 비수도권 비중이41.8%(07년 1차)에서 54%(09년 7차)로 12% 증가하였고, 2007년말 인증 사회적기업의 52.9%가 대도시에, 58.8%가 수도권에 소재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수도권 편중도 완화됨. 그러나 16개 광역 지자체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절대 다수가 분포하고 있으며, 농어촌 소재는 62개, 농촌대상 19개, 농어촌에 소재하면서 농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12개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향후 지역별 활성화 정책 설계 시 사회적기업 분야에서도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됨
 - 특히, 현재 252개 인증 사회적 기업 중 농촌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은 친환경(자

원순환)영농(새벽공동체), 로컬푸드((사)흙살림), 보건사업(안성의료생협), 노인간병(청람사회복지회), 친환경농업 교육((사)흙살림), 농어촌 지역 컨설팅((주)이장), 친환경 농자재 생산(고삼농협 생명농업지원센터), 농산물가공사업((합)햇살나눔), 전통문화 체험(전통문화사랑모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지만 숫적으로 보면 미미함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고, 그러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들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함
 - 또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여건의 개선 과제를 검토해 특히, 농림수산식품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와 역할을 도출하고자 함

- 이러한 연구 목적은 세부적으로 크게 네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첫째,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으로서 ‘(가칭)농어촌공동체회사’의 분야별 사업영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연구하고자 함.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부터 향토산업 일자리 창출분야까지 가능한 수준에서 구체적인 사업과제들에 대해 의견수렴, 검토하고자 함
 - 둘째, ‘(가칭)농어촌공동체회사’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의 위상과 형태, 역할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함
 - 셋째,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 즉, 지원기준과 지원프로그램, 지원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함
 - 넷째, 외국의 사회적기업 활동사례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제Ⅱ장 사회적기업의 일반적 개념과 현황

1. 사회적기업의 일반적 개념과 발전

1)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은 유럽에서 발전해온 사회적 경제라는 보다 넓은 개념의 하위 범주 속에 위치함
- 사회적 경제는 비영리조직 및 제3섹터 개념과 어떻게 다르고 어떠한 배경 하에 그 개념이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임

(1) 1980년대 초 프랑스에서 발전해 온 '사회적 경제'의 개념¹⁾

-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1970년 프랑스에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mutual), 민간단체(association) 등의 전국연합조직들이 사회적 힘을 증가시키고, 대정부 협상력을 증대하기 위해 연대조직을 형성한 것으로 계기로 스스로 공통된 정체성을 나타낼 개념어를 모색했는데, 1977년 키퍼런스에서 사회학자인 앙리 데로쉬가 '사회적 경제의 기업'이라는 단어를 제안함으로써 오늘날 사용되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 1981년 사회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개발정비계획장관으로 임명된 미셸 로카르는 '사회적 경제를 위한 부처간 위원회(DIES)'를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도적 개념규정이 이루어지게 됨. 이때 사용된 개념정의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그리고 생산활동(교육, 서비스 등)을 주로 하는 민간단체(association)'의 총체였음. DIES의 설립은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 단일한 정부측 파트너를 요구했던 사회적 경제 진영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음. 이 위원회 안에는

1) 엄형식, 2008에서 발췌, 인용

지위, 재정, 훈련 등을 연구할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러 기금을 동원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발전기구(IDES)'가 설립되었음

- 이러한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부문이 제도화되어가는 반면에 신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은 일련의 사회운동세력들이 대안경제운동의 일환으로 경제활동을 통한 노동통합, 대안금융, 지역화폐, 공정무역 등을 실천하는 대안적 경제 혹은 연대적 경제라는 이름의 운동으로 발전하였음

(2) '사회적 경제'개념의 유럽전역으로 확산²⁾

- 프랑스에서는 전통적 사회적 경제와 연대적 경제가 다소간 갈등적 성격으로 발전했던데 반해, 프랑스 이외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흐름과 이에 자극받은 전통적 사회적 경제,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받아들여 됨
- 프랑스 출신 자크 들로르가 유럽공동체 의장으로 선출된 후, 유럽위원회는 1989년 사회적 경제를 다루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음. 이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는 '공동의 욕구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 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한다'고 언급되어 있음. 이후 유럽공동체는 1989, 1990, 1992, 1993, 1995년에 유럽사회경제 컨퍼런스를 추진하였음
- 1997년에 열린 EU 룩셈부르크 고용관련 정상회담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고용과 관련된 유력한 방안으로서 공식 언급하였고, 사회적 경제는 고용, 사회정책, 유럽연합의 확대, 지역개발, 공공조달, 노동자 소유, 노동조직, 개발원조와 관련된 핵심적인 정책 목표에 포함되었음
- 사회적 경제 개념의 유용성이 확인되면서, 유럽 각국에서도 사회적 경제개념을 받아들여면서 제도화하고 있음. 2002년까지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6개 국가에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부서가 신설되었고, 프랑스 이외에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2) 엄형식, 2008에서 주로 인용

스페인,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영국에서 공식적인 개념 정의가 이루어졌음

(3) 유럽연합에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 논의³⁾

-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가 CIRIEC (International Centre of Research and Information on the Public, Social and Cooperative Economy)에 의뢰하여 조사 연구된 2007년 보고서(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그리고 재단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유럽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및 재단 등의 연락협의회'가 정의하는 사회적 경제의 원칙(Charter of Principles of the Social Economy)은 다음과 같음
 - ① 자본보다 개인 및 사회적 목적의 우선
 - ② 자발적이고 공개 가입원칙
 - ③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재단은 예외)
 - ④ 조합원, 이용자, 그리고/혹은 일반대중의 이익의 결합
 - ⑤ 연대와 책임 원칙의 견지와 적용
 - ⑥ 정부당국으로부터 독립과 자율적인 경영
 - ⑦ 잉여의 대부분은 지속가능한 발전, 조합원의 이익, 혹은 일반대중의 이익을 위해 사용함
- CIRIEC가 유럽경제사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정의한 사회적 경제의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사회적 경제는 "민간이 자율적인 결정과 공개조합원가입원칙에 입각하여 공식적으로 조직한 기업들의 집합으로서 이 기업들은 조합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장을 통하여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 보험 및 금융을 제공하되, 의사결정과 조합원 간의 잉여 혹은 이윤의 배분이 조합원이 기여한 자본량이나 수수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조합원들은 1표를 가지는 기업들임. 사회적 경제는 또한 민간이 자율적인 결정과 공개조합원가입원칙에 입각하여 공식적으로 조직한 조직들도 포함하는데,

3) Chaves and Campos, 2007

이 조직들은 가구를 위한 비시장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잉여는 이러한 조직을 설립하고, 통제하고, 혹은 자금을 제공하는 경제주체들에 의해서 전유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님"

○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관련하여 유사한 개념이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의 개념임. 그러므로 시장이나 국가도 아닌 제3섹터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적 경제 개념과 비영리조직 개념 등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보다 뚜렷해질 수 있음

- 비영리조직의 기본 요건은 다음 다섯 가지임 : ①조직의 공식성, ②민간조직, ③자율조직, ④이윤배분 금지(이윤을 창출할 수 있지만 그 이윤을 조직의 소유자, 창립자, 임직원들에게 배분하지 않음), ⑤자발적 조합원가입 및 참여

○ 사회적 경제와 비영리조직은 민간이 공식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라는 점, 의사결정의 자율성, 그리고 자발적 가입 및 참여 원칙이라는 점 면에서 유사함

- 그러나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음

① 비영리(non-profit) 기준

· 비영리조직 접근은 제3섹터 조직이 이윤이나 재무적 성과를 획득하거나 분배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지만 사회적 경제 접근은 비영리(non-profit) 기준이 제3섹터조직의 필수적 요소는 아니라고 봄. 이러한 점에 볼 때, 협동조합과 상호공제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지만 비영리조직접근에서는 이러한 조직들이 제3섹터에서 제외됨. 이는 협동조합과 상호공제조합들이 조합원에게 잉여의 일정부분을 배분하기 때문임

② 민주주의 기준

· 비영리조직 개념 하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않는 조직도 제3섹터에 속하지만, 사회적 경제 개념 하에서는 이러한 조직들은 제3섹터에서 제외됨. 예를 들면, 병원, 대학, 학교, 문화 및 예술단체 등이 민주주의 기준은 충족시키지 않지만 비영리조직 개념의 다른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시장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비영리조직 개념 하에서는 이들이 제3섹터에 포함된 반면에 사회적 경제 개념에서는 포함되지 않음

③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준

- 사회적 경제 개념 하에서의 모든 조직의 주요한 목적은 사람들 혹은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반면에, 비영리조직 개념하의 조직들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우선적 목적은 아님
- 이상과 같은 점에서 비영리조직들은 스스로를 시장도 공공부문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를 제공하는 부문이라고 위치지우는 반면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스스로를 시장과 국가 사이에 위치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에 위치 지움
- 사회적 경제 개념에 의해서 접근된 제3섹터는 스스로를 남겨진 부문(residual sector) 이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공공부문과 자본주의적 민간부문과 더불어 한 경제사회의 중요한 제도적 부문으로 설정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부문은 특히 사회적 배제, 장기 실업, 지역불균형, 지역자치, 그리고 보다 공정한 소득과 부의 재분배문제 등 선진국 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의 일부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 통합된 복지국가의 형성에 주요한 부문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함

(4) 유럽연합에서의 '사회적 경제'부문의 현황⁴⁾

- 위에서 논의된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따라 분류된 협동조합, 공제조합, 민간단체 등에 종사하는 경제인력을 조사한 결과, 15개 구 유럽연합에서의 사회적 경제부문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6.7%에 해당하는 11백만명을 고용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부문으로 나타났음. 10개 신규 유럽연합가입국가들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4.2%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4) Chaves and Campos, 2007

<표 2-1> 유럽연합에서의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고용현황 (2002-2003)

국가	협동조합	공제조합	민간단체	합계
벨기에	17,047	12,864	249,700	279,611
프랑스	439,720	110,100	1,435,300	1,985,150
아일랜드	35,992	650	118,664	155,306
이탈리아	837,024	*)	499,389	1,336,413
포르투갈	51,000	*)	159,950	210,950
스페인	488,606	3,548	380,060	872,214
스웨덴	99,500	11,000	95,197	205,697
오스트리아	62,145	8,000	190,000	260,145
덴마크	39,107	1,000	120,657	160,764
핀란드	95,000	5,405	74,992	175,397
독일	466,900	150,000	1,414,937	2,031,837
그리스	12,345	489	57,000	69,834
룩셈부르크	748	n/a	6,500	7,248
네덜란드	110,710	n/a	661,400	772,110
영국	190,458	47,818	1,473,000	1,711,276

*) 공제조합의 수치는 협동조합과 통합되어 집계되어 있음.

자료: Chaves and Campos(2007), p.20

2) 북미와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논의와 발전

(1) 미국과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개념의 등장 배경⁵⁾

-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라는 단어의 사용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음. 1980년 간디사상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빌 드레이튼이 기업가로서의 열의와 활동가로서의 의식을 모두 갖춘 개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후원을 하는 '사회적 기업가들(social entrepreneurs)'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초기의 사례로 여겨지고 있음
- 1993년부터는 하버드 대학의 MBA 과정에 '사회적 기업 이니셔티브'라는 과정이 설치되었으며, 이후 여러 대학의 MBA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을 다루게 되었음. 이러한 흐름은 2001년 대학간 네트워크인 '사회적 기업 지식네트워크(social enterprise

5) 엄형식, 2008, Defourny, 2001

knowledge network, SEKN)'로 이어지고 있음

- 미국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기업의 의미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가진 활동을 수행하거나,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형태의 NPO기업, 일반기업 또는 공공부문(SEKN)"으로 정의됨(엄형식, 105쪽, Defourny, 2005)
- 반면에 유럽에서 발전된 사회적 기업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민간부문 중심의 활동들로서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전달,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등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는 제반의 조직들을 통칭함
 - 1970년대 이후, 유럽은 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실업이 증가하고,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사회적 욕구가 늘어난 반면, 재정제약으로 인해 국가의 사회서비스 전달능력이 저하되는 사회문제를 경험하게 됨.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비영리민간 영역의 활동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통해 실업자와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노동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였음. 유럽 각국에서 등장한 이들 흐름은 매우 다양한 위상과 제도적 지위, 활동내용을 지니고 있었으며, 국가마다 독특한 발전경로를 경험하였음

<표 2-2> EMES 네트워크의 사회적 기업 기준

경제적 기준	사회적 기준
-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 높은 자율성 -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 - 최소 수준 이상의 유급노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목적 - 시민그룹의 주도로 설립 - 자본소유권에 기초하지 않는 의사결정권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 제한된 이윤배분

자료 : Defourny, 2001

-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의 전면적인 사용을 촉발시킨 것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유럽연합 15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EMES(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Network가 수행한 연구들임. EMES 네트워크는 15개국의 연구 참여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마련하는데 1년을 소요했는데, 그 결과

제시된 기준은 경제적 기준 4가지와 사회적 기준 5가지임

(2) 북미와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제도적 정착과정

- 1990년대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제도화되었음
 - 1991년 이탈리아에서의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법의 제정: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A형 사회적협동조합)과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능(B형 사회적협동조합)을 정형화시킴
 - 1995년 벨기에에서의 사회적목적기업(social finality company, SFS)법의 제정: 협동조합, 일반기업 등 기존 법적 지위를 지닌 조직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수행할 때 이를 확인해주는 법
 - 1997년 캐나다 퀘벡의 의회는 협동조합법을 수정하여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s)의 설립을 허용하도록 함. 연대협동조합 서비스의 이용자와 연대협동조합의 노동자 및 후원자도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1998년 포르투갈에서의 사회적연대협동조합(social solidarity cooperative)에 관한 법 제정
 - 1999년 스페인에서의 사회적협동조합(social initiative cooperative)에 관한 법 제정
 - 2001년 프랑스에서의 공익협동조합(collective interest cooperative society, SCIC) 법: 협동조합 일반법 내에 조항으로서 공익협동조합을 추가, 공익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지만, 지배구조를 적어도 3등분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노동자, 이용자, 제3자 등에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함으로서 다중이해관계자 모델을 조직구조에 실현
 - 2003년 핀란드에서의 일자리통합사회적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WISE)법
 - 2004년 영국에서의 지역사회이익기업(communitiy interest company)법
 - 2005년 이탈리아에서의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법 제정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이외의 기업, 협동조합, 민간단체의 사회적 기업적 성격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
 - 2006년 폴란드에서의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법 제정
- 현재까지 알려진 사회적 기업의 법적인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짐

<표 2-3> 유럽과 캐나다에서의 사회적기업의 법적 형태

구분	협동조합 모형	회사 모형	개방식 모형
특징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지닌 특수한 협동조합으로 규정	사회적 성과와 이윤의 분배 제한조건을 지닌 주식회사형태	특정 법적 형태의 규정 없이 사회적 성과에 대한 규정을 제시
해당 국가	이탈리아, 캐나다(퀘벡), 포르투갈, 프랑스, 폴란드	벨기에, 영국	핀란드, 이탈리아

출처: Cafaggi and Iamiceli, 2009를 바탕으로 작성

(3) 구미에서 '사회적 기업'의 활동영역⁶⁾

○ 법적인 활동영역

<표 2-4> 구미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법적규정)

국가	활동영역
이탈리아	교육, 사회 및 헬스케어 서비스 (A형 사회적 협동조합),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B형 사회적 협동조합)
포르투갈	취약계층, 장애인, 노령층, 아동, 극빈층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 등을 포함한 지원
프랑스	사회적 유용성을 지닌 공익 재화나 서비스(general interest goods or services)의 생산과 제공,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높여주는 기능
폴란드	실업자, 노숙자, 알콜중독자, 약물중독자, 정신질환자, 출옥자, 피난민 등에 대한 사회적 및 직업적 통합 지원
영국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활동
핀란드	사회적 기업은 상업적 원칙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추구해야 하며 사회적 목적은 불구자 및 장기실업자에 대한 고용기회의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탈리아 (사회적기업법)	공익을 추구하면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social benefit goods and services)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활동; 사회적 지원, 헬스케어, 교육, 환경보호, 문화 보존 및 증진, 사회적 관광, 대학이후의 교육, 문화서비스, 방과후 교육,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
캐나다(퀘벡)	활동영역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6) Cafaggi and Iamiceli, 2009

- 실제 활동영역 : 2001년에 출간된 EMES 네트워크가 유럽 15개국의 사회적 기업의 활동영역을 조사한 결과, 크게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또는 대인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등에 포함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Defourny, 2005).

<표 2-5> 유럽의 사회적 기업의 활동영역 (실제)

분야	국가	예
개인서비스	오스트리아	아동그룹(Children's Groups): 부모의 활발한 참여로 지원되는 보육서비스
	프랑스	부모가 선두에 보육조직
	덴마크	사회적 주거: 불우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기존 기관의 대안으로 디자인된 주거기관, 훈련 및 케어서비스에 초점을 맞춤
	영국	홈케어협동조합: 파트타임으로 구성원을 고용하는 협동조합
	스웨덴	협동조합 로컬 개발조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개인의 재활과 재통합에 그 목적이 있음.
	이탈리아	A타입 사회적 협동조합: 보건, 훈련 또는 개인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포르투갈	장애 아동의 훈련과 재활을 위한 협동조합
노동 훈련, 통합	벨기에	벨기에 남부의 OJT기업과 노동통합기업, 북부의 통합기업과 사회적 워크숍
	이탈리아	B타입 사회적 협동조합: 위험한 상황에 놓인 개인의 노동통합분야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독일	시장지형적"사회적 기업"으로 임시 공적 지원을 받음. 그 목표는 일자리의 창출, 경제발전의 촉진, 장기실업자의 사회적 및 직업적 통합에 있음.
	룩셈부르크	환경, 농업, 건설, 쓰레기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 및 경제적 활동을 통해 구성원에게 통합을 제공하는 협회: 대부분이 국가에서 보조하는 선도프로젝트임.
	스페인	장애인 또는 기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개인을 위한 노동통합기업
지역 개발	핀란드	지역별 노동 협동조합이 9개의 협동조합 개발기구로 조직되어 로컬과 지역 차원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역할 담당
	네덜란드	"지역관리기업(neighbourhood management enterprises)": 불우 지역주민들에게 공유인프라를 제공하고 개인주택을 개선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급일자리 창출
	아일랜드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가진 로컬 공동체 개발기업으로 사회적 주택, 노동통합, 신용조합, 근접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출처: Defourny, 2005

2.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현황

1)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인증 사회적기업

- 서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기업은 오랜기간 동안 시민사회의 실천영역으로서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보완한다는 측면이 강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정부가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래적 의미의 사회적기업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즉, 정부의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우려되는 측면도 크다는 것임
 -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활동이 크게 고무되고 있다는 점이며, 우려되는 점은 내용적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에 의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임.
 - 또한, 현재의 사회적기업은 물론이고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가 정부로부터의 각종지원 특히, 인건비 지원에 있다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본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 2007년 1월 3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공포된 이래 2009년 말까지 정부는 총 9차례의 인증결과를 발표했으며, 2009년 12월 말 현재 총 264개의 정부인증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 인증은 노동부장관 소속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담당하며,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공무원과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를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7) 현행 제도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인증받지 아니한 자)가 사회적기업 혹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사회적기업육성법」 제19조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현황

- 2007년 법 시행 이후 2009년 7월까지 총 515개 기관이 인증을 신청하여 총 8차례에 걸쳐 심의를 한 결과 251개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신청대비 인증율은 48.7% 정도를 나타냄⁸⁾
- <표 2-6>에서 보듯이 2007년도는 총 165개 기관이 신청하여 55개 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신청대비 인증율은 33.3%을 보였으나 2008년도는 총 243개 기관이 신청하여 144개 기관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증율이 68.3%로 높아졌으며, 2009년도는 64개 기관이 신청하여 34개 기관이 인증을 받아 인증율은 53.1%로 나타남.

<표 2-6> 2009.9.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 건수

	2007년		2008년				2009년		총계
	10월	12월	4월	7월	10월	12월	5월	7월	
신청건수	113	53	54	46	81	104	45	19	515
인증건수	36*	19	30	24	48	64	26	8	251
인증율(%)	31.9	35.8	55.6	41.7	59.3	61.5	57.8	42.1	48.7

*) 2007년 당시, 36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나 그동안 4개소는 인증이 취소되어 현재는 32개 기관만이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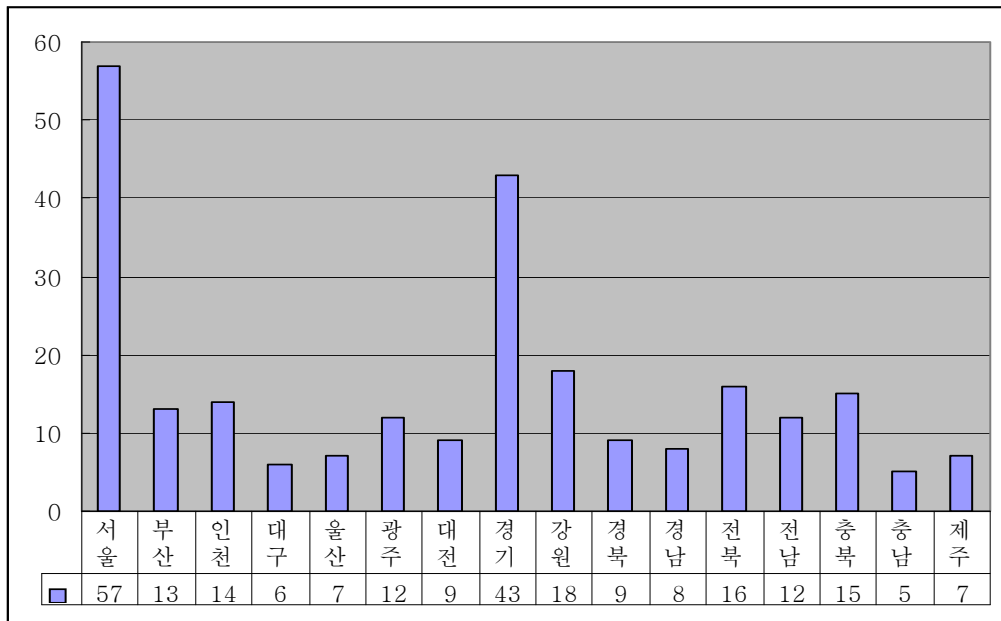
자료 : 노동부·사회적기업연구원(2009.9), 『사회적기업 개요집』

- 법 시행 초기에는 비교적 엄격한 기준적용과 신청단체의 준비미흡 등이 원인이 되어 인증율이 낮았으나 그동안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기관 위탁운영 등 지원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증율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
- 2009년 9월 현재, 251개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 분포도를 살펴보면 서울(57개), 경기(43개), 인천(14개) 등 수도권이 전체의 45.4%인 114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은 54.6%인 137개가 산재해 있는데(<그림 2-1>), 이는 2007년 말 인증 사회적기업의 58.8%가 수도권에 소재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집중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의미함
- 그러나 16개 광역 지자체별 분포를 보면 아직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에 절대 다수가

8) 노동부·사회적기업연구원(2009.9), 『사회적기업 개요집』 참조. 2009.11.말 현재, 인증사회적 기업은 총 266개소임.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소재는 62개, 농촌대상 19개, 농어촌에 소재하면서 농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12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그동안 우리의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도시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음

<그림 2-1> 2009. 9. 현재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인증 건수



자료 : <표 2-3>과 동일

- <표 2-7>에서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일자리제공형이 전체의 43.8%인 110개소이고, 혼합형(일자리제공+사회서비스)이 28.3%인 71개소, 기타형이 14.7%인 37개소, 사회서비스제공형이 13.2%인 33개소의 순임
-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정책이 실업극복대책의 일환인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사회적기업=노동부'라는 인식을 고착시킴으로써 다른 부처에서 다양한 사회적기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가로 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분포는 9개⁹⁾ 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표 2-7>에서 보면 사회복지(52개), 간병·가사지원(33) 등 이른바 사회적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적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 산림보전·관리 분야는 1개소

9)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관광·운동, ⑥보육, ⑦산림보전·관리, ⑧간병·가사지원, ⑨기타로 분류하며, 1개 기관에서 복수사업을 하는 경우는 주사업을 기준으로 분류함

도 없음

- 또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기업 약 40%가 수도권에 위치하며, 59%는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에 분포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노동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등이 확대됨에 따라 부처간 사업 아이템 중복문제가 제기되자 2008년 말부터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선정 시 가사·간병 분야를 대폭 축소해 왔으나 여전히 비중이 높은 편이며, 최근에는 보육과 보육서비스 분야에서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표 2-7> 2009.9. 현재 사회적기업의 유형별·업종별·조직형태별 분포

분류		인증기관	
		개소	%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33	13.2
	일자리제공형	110	43.8
	혼합형	71	28.3
	기타형	37	14.7
	합계	251	100.0
업종	교육	11	4.4
	보건	9	3.6
	사회복지	52	20.7
	간병·가사지원	33	13.1
	환경	41	16.3
	문화예술 관련	12	4.8
	보육	20	8.0
	기타	73	29.1
합계	251	100.0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61	24.3
	상법상 법인	103	41.0
	비영리단체	47	18.7
	사회복지법인	29	11.6
	생활협동조합	10	4.0
	영농조합	1	0.4
	합계	251	100.0

자료 : <표 2-6>과 동일

- <표 2-7>에서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 등의 상법상 법인이 전체의 41.0%인 103개소로 가장 많고, 사단법인·재단법인과 같은

민법상의 법인이 24.3%인 61개, 비영리단체가 18.8%인 41개 등으로 순으로 나타남

- 한편, 2009년 9월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시 신청서에 기재된 유급근로자 수 총 7,228명으로 기관당 평균 28.8명이며, 전체 251개소 중 100인 이상고용 기관은 8곳인데, 이중 5곳이 2007년도 1차에 인증을 받은 곳임
- 반면, 2008년도 4차에 인증받은 총 64개 기관 중 10명 미만이 소규모 사업장이 27개소로 전체의 42.2%에 달함으로써 점차 소규모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줌

3. 현행 사회적기업 지원체계와 한계

1)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주요내용

-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앞에서 소개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이외에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사회서비스의 범위, 사회적기업의 유형구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1) 사회적기업의 개념

-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사회적 임무 지향적(social mission-driven)인 조직'을 의미함
-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매우 다양한 유형과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영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회적 목적을 지지하기 위해서 혹은 이를 달성하려는 사회적 기업 자신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음

- 즉,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음(법 제2조)
 - 이때 취약계층이라 함은 ①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②55세 이상 고령자 ③장애인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④성매매 피해자 ⑤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임
 -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취약계층이 아닌 자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으며, 인증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음
- 외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영국 통상산업부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용되기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이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OECD는 "사회적 기업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활동 및 공익활동을 포괄하는 것이며, 이윤극대화에 두지 않고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탈리아 사회적기업법은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민간조직으로서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주된 활동이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교환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정의함

(2)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서비스의 범위도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와 이에 준하는 보육 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로 정함
- 즉,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정부의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이나 제한된 사회서비스 지원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렇게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사업이나 자연경관 보전 및 유지사업 등 다양한 활동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3) 사회적기업의 유형

-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 또는 기타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의 4개의 형태로 유형화하고 있음(동법 시행령 제9조)
-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2011년 6월 30일 이후 50% 이상)이어야 함
-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수혜자 비중이 30% 이상(2011년 6월 30일 이후 50% 이상)이어야 함
- ‘혼합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일자리 제공형이 혼합된 유형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자의 비중이 각각 20% 이상(2011년 6월 30일 이후 30% 이상)이어야 함
- ‘기타형’은 일명 ‘지역사회공헌형’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지만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비율을 판단하기 어려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결정한 유형임

(4)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에는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경영지원(법

제10조), 시설비지원(법 제11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지원(법 제13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사회서비스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을 지원(법 제14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뿐만아니라, 법 제12조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배정받은 근로자 1인당 약 83만원 수준의 인건비와 4대 보험 부담분 지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인건비 지원과 별도로 전문인력 고용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음

○ 그밖에 조기정착지원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2)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제도의 한계

(1) 인증을 받아야만 사회적기업이 될 수 현행제도의 한계

○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만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제도는 민간(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와 다양한 활동영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제약함

- 본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적 목적수행을 1차적인 과제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정부 영역이 아니며, 시민사회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생성, 발전해 왔음

-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해 놓은 일정한 틀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역사가 우리보다 앞선 서구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움

- 현행 우리의 인증제도는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정부나 시민사회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먼저, 정부로서는 '인증=지원'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발전 여부가 정부지원(=인증)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의해 규정될 뿐만 아니라,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성과가 부실할 경우 그 책임도 정부에서 떠 안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시민사회로서는 지원(=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결국 사회적기업의 본래적 목적이 왜곡될 수 있음¹⁰⁾

- 또한, 현행의 정부 인증 사회적기업제도는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게만 인건비 등을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재정의 정부의존성을 높여서 재정자립성을 저해하며, 사업내용도 정부가 제시하는 내용으로 한정지어져 사회적기업이 지역주민의 요구나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만들
- 결과적으로 현행과 같은 방식의 정부인증(=지원)제도는 시민사회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에 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기존의 사회적기업들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전체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나 시장의 한계 또는 실패를 대체할 사회적경제의 일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이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

(2) 인건비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이 갖는 한계

- 현재와 같이 정부가 단편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방해하며,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 실제로 현재의 사회적기업 혹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서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곳 중 정부의 지원이 끊기더라도 지속가능하다고 답변한 곳은 전체 20(설문조사 14곳, 심층면접조사 6곳) 중 1곳도 없었음
- 또한, 정부의 인건비 중심의 지원은 사회적기업 내부의 조직적 결속을 저해할 개연성('어차피 내 인건비는 정부가 주는 것'이라는 사고와 도덕적 해이)을 담고 있으며,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된다면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현행 제도 속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경영지원, 시설비지원,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지원, 자문비지원 나아가서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것임

10) 현재 일부의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중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 ①지원금으로 조직이나 단체에 필요한 실무자를 충원하는 사례, ②정부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기간만 조직이나 단체를 운영하다가 지원이 종료되면 사업 자체를 접는 사례, ③사회적기업으로서는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사업에 지원금을 활용하는 사례 등이 있음

- 그 결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외에는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법적인 규정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관련정보의 제공,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활성화,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보완이 필요함

(3)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부족과 형식적 자문

-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고, 인증제도가 등장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크게 증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며, 심지어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조차도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회계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우리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역사가 일천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제10조)에는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기관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마다 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7년에는 설립지원기관 2개(함께 일하는 재단,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운영지원기관 3개(사,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장애인중심기업협회), 회계지원기관 1개(주, 나눔과 썸), 홍보지원기관 1개(인컴브로더)가 운영되었으며,
- 2008년에는 설립지원기관 3개(함께 일하는 재단, (사)사회적기업연구원,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지원기관 4개(사,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주)네무파트너 에스씨지,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한겨레경제연구소), 회계지원기관 1개(회계법인 새시대), 홍보지원기관 1개(주, 인포마스터)가 운영되었고,
- 2009년 말 현재는 6개의 권역별 지원기관('고용지원센터')과 권역별 지원기관과 협력하는 17개 컨소시엄기관이 참여하고 있음(<표 2-8>참조)

<표 2-8> 2009년 사회적기업지원기관 현황

지역	구분	기관명
서울 강원	권역별 지원기관	(재)함께 일하는 재단 (강원 영서 : 원주 협동조합운동협의회) (강원 영동 : (사)함께 사는 세상)
	컨소시엄 기관	한겨레 경제연구소 (지역경제디자인센터)
부산 경남	권역별 지원기관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컨소시엄 기관	부산 카톨릭대학교 경영사회복지연구소 (주)세종경영컨설팅 사회연대은행부산사무소 부경회계법인 동화노무법인 부산사무소
대구 경북	권역별 지원기관	(사)대구사회연구소
	컨소시엄 기관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경기 인천	권역별 지원기관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컨소시엄 기관	경기광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지원팀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광주 전라	권역별 지원기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기관	목포대학교(전남) 나주대학교(전남) 조선대학교
대전 충청	권역별 지원기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기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대전지부 (사)일하는공동체 (주)엔씨스콤 다름세무회계사무소 호죽노동인권센터

자료 : www.socialenterprise.go.kr/bbs/info.php

- 이러한 권역별 지원조직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지원과 운영을 지원함은 물론이고, 회계와 홍보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지극히 형식적인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기관의 인원 부족 특히 전문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가령, 서울과 강원권역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으로서 (재)함께 일하는 재단이 있고, 그 중에서 강원외 영서지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가 있는데,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에서 영서지방을 전부 담당하기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 경영지원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자문만 할 수 있을 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자문을 할 수 없는 실정임. 현장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는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가령 강원도 모 지역에서 농산물 가공과 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데, 정작 자문위원으로 방문한 사람은 농산물가공과 유통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경영지원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음
-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인큐베이팅과 실질적인 경영지원이 가능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사회적기업가 육성 등 운영주체의 역량강화노력의 미흡

-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 특히, 우리와 같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며, 건전하고 유능한 사회적 기업가의 존재유무가 곧 사회적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노동부에서는 2008년부터 사회적기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설립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는 자립가능한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해 사회적기업가의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과정'과 전문경영기술 및 세부 영역별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기업가의 경영 역량강화 및 사회적기업의 경영친화적인 환경을 제고하고자 하는 '특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기업가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통합과정 8곳과 특화과정 12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교육시간은 통합과정 10주, 60시간 이상, 특화과정 6주 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이 사회적기업의 운영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필수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실제의 사회적기업 운영자와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임.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사회적기업 혹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의 경우 이러한 교육과정에 참여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임¹¹⁾
-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필수요건을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정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6) 일자리창출 중심의 사고와 (농어촌)현실의 괴리

- 현행 사회적기업 정책은 일자리수의 양적 확대를 제1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개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음. 즉,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갯수가 중요할 뿐 어떤 일자리인지, 그것이 지역경제 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임
- 가령 친환경농자재 공급 사회적기업의 경우 그 원료로 수입산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보건의료분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지역주민에 얼마나 밀착해서 존재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음
- 하지만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자재 생산이나 지역주민 밀착형 보건의료 사회적기업의 존재는 사회적기업 활동의 지역경제 순환이나 사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인임
-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어촌경관의 유지·보전, 도농교류 활성화, 자원순환형 농업생산, 로컬푸드운동, 지역개발 등 농어촌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적 활동을

11) 실제로 이번 연구를 위해 현장방문조사를 한 사회적기업 혹은 예비사회적기업 8곳 중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있는 곳은 1곳에 불과했으며, 그것도 노동부에서 지정·운영하는 곳이 아닌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이었음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으로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인건비만을 지원하는 현재의 지원방식은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활동의 기반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단편적 지원이며, 도시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 지원은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은 농어촌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수준임(도시지역의 경우에도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 있음)
- 그리고 현행 인건비 지원과 일자리 운용 중심의 심사기준은 영농활동 분야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영농활동의 경우 계절적으로 편중되고, 일일 시간대별 작업시간도 불균등한 특성이 있음.
- 타 농업·농어촌정책과의 연계성 부재로 사회적기업에 참가하는 농민이 후계자 자금 반환을 청구받는다거나 자녀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함

제Ⅲ장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활동영역

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필요성

1) 농어촌지역의 활력저하와 다양한 농어촌 지역개발정책의 전개

(1) 농어촌지역의 활력저하

- 1960년대 이후 우리의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은 수입대체·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과 거점중심의 도시화정책으로 일관해 왔음. 그 결과, 산업으로서 농업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공간으로서 농어촌 역시 급격하게 위축되었음
 - 개방화에 따른 농산물의 가격하락과 투입재의 가격상승으로 생산농가의 채산성은 악화되었고, 이는 결국 농가부채의 증가와 농가경영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음.

- 농업입지의 위축과 농가경영의 위기는 농어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 내 각종 인프라의 쇠락으로 나타났음. 교육·의료 등 열악한 농어촌생활여건이 인구감소를 유발하고, 인구감소는 교육·의료등 생활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였음
 - 그러한 의미에서 ①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②교육, 의료, 주택, 복지, 문화 등 사회서비스에서 도농간 격차 확대, ③농어촌사회의 양극화(계층 간 소득 격차 확대)와 농어촌 취약계층의 증대, ④농어촌지역의 막개발에 의한 환경파괴와 농어촌의 역사 문화 자원의 훼손은 농어촌 활력저하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농어촌지역 활력저하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농어촌인구의 과소화와 급격한 노령화'라고 할 수 있음
 - 1980년 전체인구의 43%였던 읍·면을 합한 농어촌인구는 1990년 25.6%, 2000년 20.3% 2005년 18.1%로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목표했던 농어촌인구 유지 목표

(20%)가 이미 무너졌음

- 한편, 농어촌인구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200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농어촌 고령인구비율이 읍지역 11.8%, 면지역은 24.2%를 기록했으며, 1,028개 면 중 82%인 991개 면의 고령화비율은 이미 20%를 넘어섰고 209개 읍중에서 초고령사회단 계로 접어든 곳이 전체 읍의 25%인 52개에 달함
- 이러한 농어촌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는 농어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취업기회와 사회서비스 제공'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활력저하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지역의 발전을 추동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내부의 인적구성을 붕괴시켜서 지역 스스로의 발전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2) 농어촌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중앙정부 정책의 전개

- 2000년대 들어 정부에서는 국가균형개발 차원에서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음
 - 2000년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2000년 이후 추진방법과 내용이 한층 강화된 정책 사업으로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행안부의 소도읍육성사업, 농식품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이 있고,
 - 2000년 이후 새로이 시작된 정책으로는 어촌어항관광개발(2001~), 녹색농어촌체험마을(2002~), 아름마을가꾸기(2002), 전통테마마을(2002~2009), 정보화마을사업(2002~), 농촌마을종합개발(2004~), 신활력사업(2005~), 전원마을조성사업(2005~), 농촌건강장수마을(2005~)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2007~), 농촌신문화공간조성사업(2009~) 사업 등이 대표적임
- 현행 농어촌지역개발정책의 공통적 특징
 - 1990년대 중반 이후 혹은 2000년대 들어서 나타난 농어촌지역개발정책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 농어촌이 갖는 다면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주민주도의 상향식 개발전략을 지향한다는 것이며 셋째, 도·농교류를 통한 농어촌활성화 추진 등으로 요약됨
 - 이는, 농업개발을 통한 농촌발전보다는 농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책이념의 변화인 동시에 의사결정방식의 민주화와 지역단위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것임

- 이러한 정책변화는 우리농업을 둘러싼 대외적인 여건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지방자치의 실시라고 하는 정치시스템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음

○ WTO체제의 출범 및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농정추진체계의 변화

- 1995년 1월 1일, WTO의 출범은 우리농업의 전면개방과 동시에 우리농정의 국제화 즉 세계적인 단일기준에 반하는 농정수단의 채택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세계농정의 변화는 곧 우리농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그런데, 이미 선진각국의 농정은 농업이 갖고 있는 다면적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정채택을 서둘러 왔고 따라서, 우리의 농정도 이러한 흐름을 무시할 수 없게 됨
-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 역시 농어촌지역개발계획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 → 지방자치의 실시는 곧 지역의 문제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하향식의 지역개발정책의 더 이상 추진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임

○ 각 부처의 독자적인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지역개발정책 중 농업의 다면적 가치를 중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각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적임
- 또한 과거와는 달리 농어촌지역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여러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기존의 마을별개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업으로서 법정리 3~5개 권역을 하나의 공간단위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나 내용면에서 과거의 사업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
-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과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전통테마마을사업' '팜스테이사업' 등은 모두 이른바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활성화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형식적이거나 지역주민의 합의와 지방행정과의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지역개발정책

-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경우는 새마을운동의 아류적인 성격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독자적인 지역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일정한 평가지침에 따라 대상마을을 행정에서 선정하지만

-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계획수립 및 자율적인 자금집행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지역개발정책과는 특징적이 차이가 있고 주민의 자발성 고취와 공동체 복원 등 일정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진안군의 '으뜸마을가꾸기사업'과 '그린빌리지사업'이나 남해군의 '행정시책 우수마을 인센티브 제도', 서천군의 '어메니티마을만들기' 등도 지자체와 주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독자적인 농어촌지역개발 계획으로 주목받고 있음
- 한편, 농어촌지역개발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계획'과 현 정부들어 추진된 '기초생활권정책'도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음
-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기초생활권정책'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목적으로 행정구역이나 도·농의 어원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예산사업구조를 간결화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정책기획과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주도의 통합적발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 특히, 기존의 210개 지역개발계정을 7개분야 24개 사업군으로 통폐합하고, 각 부처별·새부사업별로 승인·지원되던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을 포괄재정지원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지역의 자율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집행 및 관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지역활력증진을 위한 지역 스스로의 주체적인 노력을 지지·보장하고 있기 때문임

2) 농어촌의 주체적 노력과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

(1) 정부정책의 한계와 지역의 주체적 노력 강화

- 2000년대 들어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지역개발정책은 지역주민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근저로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자율적인 사업추진을 강조하는 등 과거의 정책에 비해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대부분의 사업이 정책의 공간적 범위를 '마을'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 ②유사한 정책이 여러 부서에 의해 중복적·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 ③농어촌관광에 대한 지나친 편중, ④지역주민의 정책수용능력 부족, ⑤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한 각 정책의 특성 상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그 결과로 마을과 마을, 공간과 공간의 자원을 상호결합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자원 네트워킹에 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고,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식이 유사한 여러 사업을 농림부, 행자부, 환경부, 산림청 등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중복과 효율적인 자금집행이 곤란,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으며, 지역자원의 과도한 이용과 남용을 초래하였을 뿐만아니라 각 사업간의 특징과 목적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결국은 사업의 지속성 자체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음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업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한 '공모방식의 사업선정' 방식 또한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형식적 상향식에 그쳤을 뿐 지역의 자율적이고 창의성을 확보하는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음
-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및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주민들의 역량을 너무 앞서 감으로써 많은 사업들이 정부 지원이 끊기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¹²⁾
- 한편, 중앙정부의 다양한 농어촌지역개발정책은 지역의 자각과 주체적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음
- 중앙정부의 농어촌지역개발(마을만들기) 사업에 자극받아 자기 지역을 주민 스스로의 힘에 의해 활성화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주체적인 노력이 나타났으며, 동시에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을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로서는 광역단위로 전남도의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전북도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 기초단위로 완주군, 평택시, 서천군, 원주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로컬푸드'사업 등이 대표적임
-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활성화 노력은 '기초생활권정책'이 본격화되는 2012년 이후가 되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부터 기초생활권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기존의 계속사업들이 중

12) 한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지역개발분야의 재정지원에 의해서 창출된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84%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음

료되는 3~4년 이후가 되어야 지역의 자율적인 사업편성과 집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2) 농어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전략과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필요성

○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발적 발전전략'

- 그동안 우리는 지역발전을 '하드웨어 중심'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자원유치' 등으로 간주해 왔고, 이러한 경향은 아직도 큰 변화가 없음. 그러나 그동안 대규모 정부재정 지원이 들어간 농어촌개발정책사업은 이러한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즉, 여러 가지 정책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이나 장비들이 정책지원이 종료된 이후까지 과연 얼마나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지역 스스로의 능력과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인식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른바 '내발적발전 전략'임
- '내발적 발전'이란 외부지원에 의한 개발이 주민참여의 결여, 지역자원의 고갈 등 환경문제 발생,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며, 지역발전의 주체와 발전동력을 지역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전략임. 즉,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발전의 성과가 지역 내로 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임

○ 내발적발전 전략의 주요원칙과 사회적기업

- 발전 주체: 지역주도의 상향식 발전, 주민참가와 자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의 파트너십
- 발전의 동력: 원칙적으로 지역내부에서 찾으면서(driven from within), 외부와의 관계 중시
- 발전전략: 지역 자원의 최대한 활용과 발전의 성과를 최대한 지역 내에 보전
- 발전 목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통합 발전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은 농어촌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추진해 나갈 핵심주체의 하나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 : 노동부의 사회적기업과는 별도로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한마디로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현재의 사회적기업으로는 농업·농어촌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 농어촌사회는 ①농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회가 필요하며, ②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 증대와 인구 노령화 등으로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의 수요부족으로 시장 공급은 어렵고, 정부부문의 비효율성(고비용 구조)도 증대하며, ③농어촌사회의 공간적 특성(낮은 인구밀도와 분산적 거주)으로 인한 사회서비스 공급체제의 특수성이 존재하고 ④국민들이 요구하는 농업농어촌의 다면적 기능(가치)이 증대하고 있으나, 그 기초가 되는 지역자원(농업 및 환경, 역사 문화 자원 등)은 파괴되고 있어 이러한 지역자원의 보전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할 주체가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농어촌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 그렇다면 농업·농어촌문제의 해결에서 기존의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일까.
 - 첫째, '지역(community)'적 관점이 부족함. 즉,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에는 '지역'에 대한 인식이 빠져 있는데 반해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지역'적 관점이 문제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가령, 친환경농자재를 만들어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을 상정할 경우,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 한다면 필요한 생산요소를 어디에서 조달하든(=수입원 자재에 의존하든 지역내에서 조달하든) 고용만 발생하면 되지만,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생산요소의 조달 역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 즉, '지역순환'을 중시됨. 사회서비스 제공도 마찬가지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간호서비스'의 경우, 현재의 방식은 대도시의 큰 병원에서 소정의 인력을 고용(=일자리 창출)해서 목표(=숫자)만 달성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함. 즉, 누구에게 어떠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보다는 그것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개수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할 경우 단위당 비용이 많이 들고 적합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에는 필요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없음

- 둘째, 지역주체의 역량강화라는 관점이 부족함. 농어촌 사회 문제의 핵심은 이를 해결할 농어촌 내부 주체의 부재에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체의 문제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에서 훨씬 심각한 상황이며, 협동조합이 종합체제를 이루고 있으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이처럼 주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부의 각종 사업도 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하지만, 현재의 사회적기업에서는 지역주체의 역량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실정임
 - 결국 기존 사회적기업의 시각으로는 농업·농어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곧 농어촌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결국, 창의성과 혁신성을 지닌 사회적 기업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존재하느냐는 농어촌사회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며, 사회적 기업가의 육성이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임
- 각종 농어촌지역개발정책의 결과로 만들어진 시설이나 설비 역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통해 지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음

2.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활동영역

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정의 및 요건

(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정의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이란 ?
-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여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적 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
 - '기업적 방식'의 핵심은 지속성(going concern)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

- 비스의 생산과 분배, 유통, 소비 과정에 참여하여 최소한 수지를 맞추거나 적정한 잉여창출을 추구하는 것임
- 따라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이 사업 대상이 되며,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이 일반적인 기업과 크게 다른 점은 농어촌이라고 하는 ‘지역’이나 지역의 ‘주민’을 중시하며 사회적 의의나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임
- 물론, 농어촌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기업은 기업대로 사회적으로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음. 단지, 기업은 영리추구를 제1의 목표로 함에 비해 사회적기업은 그 사업의 의의나 의미를 기업행동의 가치기준으로 한다는 것임. 가령, 토요일에 도시락을 만들어서 혼자 지내고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집에 갖고 갔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것이 일반기업에는 없는 점임
 - 이러한 요소가 ‘사업’으로서의 채산성을 갖추면서 사회적 목적을 해야하는 사회적기업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 이러한 농어촌과 농업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는 농어촌형 사회적기업도 하나의 ‘기업’인 이상 채산성을 맞추고 계속성을 확보하면서 조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그 활동분야에 따라서 수입의 구성하는 요소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지균형’의 의미도 일반기업의 그것과는 다름. 가령, 기업의 경우는 기업활동이 시장을 통해 평가받고 시장으로부터 얻는 용역이나 서비스의 판매액이 곧 기업의 총수입으로 되지만, 사회적기업은 수입원이 다양함
 -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수입은 ①국가로부터의 보조금, ②일반후원금, ③사회적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하는 투자, ④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가격 등의 총합이 됨. 여기서 국가로부터의 보조금이 갖는 의미는 국민최저한(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불해야 할 (재정)지출액을 사회적기업에 (수급자)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 판매하는 서비스를 국가에서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수입을 일반기업의 그것과 동일시하여 시장에서 얻는 수입만으로 그 비용을 전부 충당해야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됨

(2)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요건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① 삶의 보람, 다른 사람에 도움이 되는 즐거움, 지역예의 공헌 등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자발성)
 - ②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갖고 있으며(민주성)
 - ③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 제공하고(공익성),
 - ④ 사업의 계속을 위해 효율성을 추구하지만(계속성),
 - ⑤ 거기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 즉 잉여금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음(비영리성)
- 이러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은 첫째,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활동을 해야 함.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운영은 지역의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발전계획의 하위 영역이면서 사업운영의 결과물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해야 함
 - 둘째,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일자리의 확대는 고용 창출의 양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다양함을 의미하기도 함. 일자리가 다양하다는 것은 지역에서 기회가 많아짐을 의미함. 또한 지역의 역량 강화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이 지역에서 피드백(feedback)되어야 함을 의미함
 - 셋째, 농어촌의 취약한 역량을 고려할 때 사회적 기업은 지역 외부에서 자원을 유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사회적 기업 자체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며, 지역 자체로는 취약한 내부 역량을 외부 자원을 통해서 보완하는 의미도 있음. 이 때 유념해야할 바는 외부 자원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수준에서의 연계임.
 - 넷째, 사회적 기업의 운영이 지역 내 각 주체들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함.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특성은 사회적 자원의 조직화임. 이는 사회적 기업이 지역의 공조직임을 의미함. 지역 내 각 주체들이 사회적 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기업의 성과가 지역 주체들의 공동의 활동을 통한 산물일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역 내 자원이 부족한 대신 각종 관계가 도시에 비해 좀 더 밀접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협력은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¹³⁾

<표 3-1> 현행 사회적 기업과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의 비교

	현행 사회적기업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목 적	①일자리창출 ②사회서비스공급	농어촌 지역활성화
활동 공간	특정되지 않음	특정됨, 지역사회(communitiy)단위
사업 내용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 제공	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활동 - 일자리 및 소득기회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자원 보전, 지역역량 강화 등
참여자	사회적 기업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	사회적 기업가, 농어촌지역의 모든 주민

2)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사업 대상으로 함. 즉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이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이 활동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도시형 사회적기업과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독자적으로 활동영역을 다룬 연구나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사회적 기업의 조직적 특성, 사회적 기업의 효과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 농어촌지역 저발전의 문제점과 원인, 농어촌의 내생적 발전전략의 핵심적 요소 등을 토대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기대되는 활동영역을 개략적으로 살펴 볼 수 있음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은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필연적이거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품질 측정의 곤란성으로 시장거래의 비효율성이 높은 것이어야 함. 이러한 특성을 지닌 재화와 서비스는 특히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의 문

13) 김정원(2008), 「농어촌형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사례연구-진안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6(2).

제점과 그 원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휘하거나 또는 준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활동 영역**

- 농어촌 지역개발 혹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 대안에너지, 문화, 도농교류, 기타 농어촌의 어메니티의 증진 등과 관련된 직접적인 생산과 유통, 기술 개발, 정보제공, 컨설팅, 교육사업 등 농어촌의 내생적 발전전략의 핵심요소들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농어촌청소년 교육여건의 격차 축소에 기여할 수 있는 초, 중, 고 학생의 문화, 예술, 체육활동의 증진 (도농간 교류 포함)과 관련된 사업
- 빈곤여성, 장애인, 노인 등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농어촌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간병, 청소, 보육지원, 집수리, 급식지원, 약초재배, 농산물 판매 등) 제공

○ **정보의 비대칭성 혹은 품질측정의 곤란성 등의 성격을 지닌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활동 영역**

- 사회서비스 : 보육, 간병, 노인돌보미 및 급식 등의 사업, 농어촌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의료협동조합을 설정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 농어촌지역에서의 노동력의 계절적 수급불일치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제공, 알선, 인력관리 등의 사업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의 활동영역**

- 농어촌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할 수 있지만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창업(起業), 자금조달부터 조직운영이나 사업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음. 그러므로 농어촌지역에서의 사회적기업 설립과 운영지원을 주업무로 하는 중간조직이 필요하며, 특히 초창기에는 이 조직의 역할이 중요함
- 중간조직의 역할 :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의 인큐베이팅, 사업과정에서의 컨설팅 및 사업결과의 모니터링(=평가)을 통해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으로 구체적으로는 ① 정보의 수발신, ② 자원이나 기술의 중개, ③ 자금의 중개, ④ 인재(사회적 기업가)의 육성, ⑤ 경영능력의 향상, ⑥ 대내적 대외적인 네트워크의 형성,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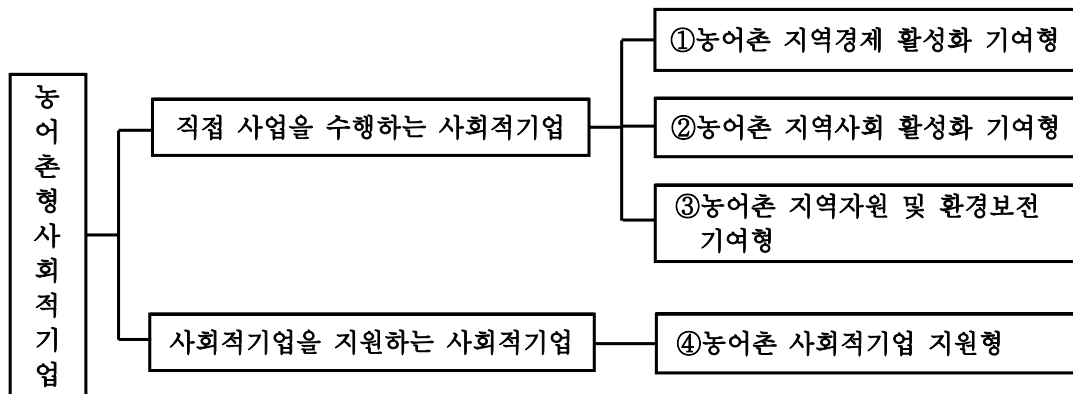
- 활동 사업 주체의 평가, ⑧ 커뮤니티의 가치 창출 등의 기능
-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의지와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임

3.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유형화와 지원대상

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유형화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은 크게 직접사업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과 그러한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다시 농어촌 지역경제활성화 기여형과 농어촌 지역사회활성화 기여형, 농어촌 지역자원 및 환경보전 기여형으로 나눌 수 있고, 후자는 농어촌 사회적 기업지원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그림 3-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유형 분류



①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형

-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 기회 창출
- 활동 사례 :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전통공예 등 지역연고산업(향토산업), 지역특화산업, 관광 및 도농교류(그린 투어리즘), 지역통화, 재래시장 경영, 취업지원, 마을만들기, 정보 서비스 등

②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형

-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제공
- 활동사례 : 복지, 교육 및 평생 학습, 문화, 보건의료, 고령자 및 장애우 돌봄, 여성, 청소년 및 아동 지원 등

③ 농어촌 지역자원 및 환경 보전 기여형

- 농업농어촌의 다면적 기능의 기초인 지역자원 및 환경보전
- 활동사례 : 지역의 농업자원 보전(마을 산·하천의 환경 미화, 식수, 에코 투어리즘, 용배수로의 유지 관리, 못·비오름의 보전, 유희농지의 활용, 다랭이 논 보전 등), 야생동식물 보호, 유형 무형의 전통적 문화유산 보전 및 활성화(전통건축물, 문화재, 문화 및 예술, 축제, 식문화 등), 지역 에너지, 리사이클링

④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지원형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intermediary)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 활동 사례: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의 인큐베이팅, 컨설팅 및 모니터링, 인재 육성, 자금 중개 등

2) 농수산식품부의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 지원 대상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의 확정

- 위의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지역경제활성화 기여형, 지역자원 및 환경보전 기여형,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지원형 등 세 가지 유형의 농수산식품부의 주된 지원 대상이 될 것임
-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농수산식품부도 하겠지만 복지부, 교과부, 문화부 등의 주된 활동 영역이 될 것임
- 부처별로 지원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을 엄밀하게 나누기는 어려우나 대략 위와 같은 이미지로 접근하면서 부처간 조정과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농수산식품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사업분야

-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활동대상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 즉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이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이 활동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물론이고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지경부 등 여러 부처가 원활할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농식품부는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을 관장하는 주관부처로 해당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는 종합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임
 - 그러한 의미에서 농식품부에서 육성, 지원해야 할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 유형은 <그림 3-1>의 ①③④를 주된 영역으로 하면서 ②를 협력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구체적인 사업분야는 <표 3-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농수산식품부가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사회적 기업
-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및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자발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족
 - 중앙정부 지원에 의한 마을사업들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하고, 많은 사업들이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농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지속성을 갖도록 이들 마을만들기 조직들이 정책사업 종료 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 이 경우 정부 지원에 의해 각종 시설 등 하드웨어는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비 지원 없이 이들이 본래의 목적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및 경영 지원 등을 하면 됨

<표 3-2> 농식품부가 지원해야 할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사업분야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유형	사업분야
지역경제활성화 기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푸드 - 농산물가공 및 유통 - 전통공예 - 향토산업 - 지역특화산업 - 관광 및 도농교류: 산촌유학 등 - 지역통화 - 재래시장(농민시장) - 취업지원 - 마을만들기 - 정보 서비스
지역사회활성화 기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부문에 대해 타 부처와 협력적으로 혹은 필요한 경우 단독으로 농식품부가 지원 - 복지, 교육 및 평생 학습, 문화, 보건의료, 고령자 및 장애우 돌봄, 여성, 청소년 및 아동 지원
지역자원 및 환경 보전 기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농업자원 보전 - 환경 및 경관보전 - 야생동식물 보호 - 전통 문화적 유산: 민속주, 축제, 이벤트 - 지역 에너지 - 리사이클링
농어촌 사회적기업 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 육성 - 컨설팅 - 자금 중개(공여)

제Ⅳ장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과제

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현황

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 2009년 9월 현재, 정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 분포를 보면 서울이 57개, (22.7%)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43개(17.1%)로 두 번째이며, 인천(14개)을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의 45.4%인 114개가 집중되어 있음
- 2009년 9월 현재 농어촌형사회적기업¹⁴⁾은 농어촌소재 사회적기업이 전체 사회적기업의 17.9%인 45개이며, 이중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농어촌자원 활용, 농어촌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농업·농어촌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약 절반인 22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농어촌소재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사업내용이 직·간접적으로 농업·농어촌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회적기업 즉, 비농어촌소재 사회적기업 중 농어촌주민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농어촌자원 활용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17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농어촌소재 혹은 비농어촌소재 사업적기업 중 농업·농어촌적인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의 25.3%인 62개이며, 그중 사업대상이 농업·농어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39개 정도라고 할 수 있음
- 2009년 9월 현재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는 사회적기업 중 농어촌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은 <표 4-1>과 같음. 여기서 농어촌은 행정구역상 읍·면을 일컫음. 따라서 군(郡) 뿐만아니라 시(市)도 포함됨

14)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규정이나 분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행 사회적기업 중 농어촌소재 기업과 농업·농어촌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편의상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으로 분류함

<표 4-1> 2009년 9월 현재 농어촌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지역	사회적 기업	주요생산품	비고	
강원	정선 정선재활용센터	재활용폐기물처리용역사업,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가공·판매사업	자활	
	횡성	(합)햇살나눔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유)열린재가사회서비스센터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재가방문요양, 취약계층 가사/간병서비스	자활
		(유)늘푸른 환경	학교 청소용역, 청소용품 판매	자활
		(유)청정자원	재활용품	자활
	영월 (유)늘푸른 환경	청소용역서비스	자활	
경기	남양주	에코그린	재활용품	자활
		살림의 집 행복나눔도시락사업단	도시락,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화성	(주)컴윈	본체, 모니터, 기타 스크랩재활용	자활
		(주)다산환경	재활용품, 가전, 철재	면소재지
	김포 (주)백두식품	느릅으로 만든 냉면, 찜빵, 차	탈북주민	
	파주	에덴복지재단 에덴하우스	쓰레기종량제봉투, 방충음향장치, 종이인쇄, 의류, 피복, LED, 친환경천연소재	장애인
		(주)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서비스,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복지정보신문	
안성 (주)이장생명농업지원센터	컨설팅, 생태건축, 미디어 구축 축산생균제, 농작업대행, 소포장, 배송			
인천 강화	콩세알 나눔센터	두부, 발효식품, 농산물		
충북	청원 (주)휴먼케어	방문요양 및 목욕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자활	
	괴산 (사)흙살림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산물 생산·인증·가공·유통		
	영동 (유)영동군사회서비스센터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 CSI 바우처 인력, 산모베이비시터 파견사업		
	진천 (주)진천군주거복지센터	집수리 및 일반건축공사, 주거복지서비스	자활	
	충주 (주)두레환경	재활용서비스, 자원순환과 지역환경개선 용역	자활	
충남 금산	(주)플러스	플라스틱 압축품, 재생고형원료	자활	
전북	임실 임실노인복지센터 일자리사업단	간병·가사, 주·야간보호, 농가지원		
	부안 부안농주회	간병, 요양보호, 재가서비스		
	진안	(유)나눔푸드	결식이웃 급식사업, 외식사업, 수제유과, 홍삼 및 유기농산물	자활
		(사)농어촌복지센터	바우처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남원 새벽공동체영농조합	농산물, 유기축산물, 음식물 수거/재활용	자활	
	무주 무주결혼이민가정사랑나눔회 ASIA	천연비누, 천연샴푸	결혼이주여성	
	군산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	양말 생산, 조화 생산, 내의류포장판매	장애인	

전남	영광	청람	간병, 청소, 농수산물 포장	
	곡성	심청노인복지센터 스마일사업단	노인돌봄서비스, 주단기보호서비스, 유기농산물 및 원예작물	
	고흥	사랑나눔	요양보호사 교육, 의료기관 입원환자 간병	
	나주	(주)희망자원	플라스틱류 외 재활용품	자활
	여수	송정인더스트리	천커텐, 블라인드, 버티컬, 롤스크린, 홀딩도어	장애인
경북	성주	(주)늘품테크	생활계 재활용품 수집·운반, 플라스틱류 선별 및 압축	자활
	안동	안동애명복지촌 참사랑보호작업장	벽돌, 블록생산, 자활농장, 이동스팀세차	장애인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	새싹채소, 베이비채소, 현수막	장애인
	칠곡	(주)제일산업	종이컵 제조, 판매	장애인
경남	창원	(주) 늘푸른자원	폐가전 재활용, 의류재활용	자활
	함안	늘푸른주식회사	병원세탁물 용역	장애인
	거창	(주)거창돌봄지원센터	방문목욕, 방문요양, 반찬서비스	자활
울산	울주	(주)일터	재활용품, 재생컴퓨터	장애인
제주	서귀포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햄, 소시지, 2차 육가공품, 제과제빵	장애인
	제주	청수아리랑김치	각종 김치, 밑반찬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물수건 및 침구류 세탁, 종이컵	장애인

자료 : <http://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구성.

- 한편, 45개 사회적 기업 중 20개가 행정구역상 시(市)에 위치해 있음. 물론 행정구역상 시(市)라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으로서 정체성이 더 강한 지역도 있으나, 이처럼 많은 사회적 기업이 행정구역상 시(市)에 있다는 것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들이 농어촌 주민이 아닌 경우도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함. 특히 재활용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들이 지역민이 아닐 가능성이 큼
- 한편, 농어촌소재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사업내용이 직·간접적으로 농업·농어촌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회적기업 즉, 비농어촌 소재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표 4-2>),
 - 경기도가 5개로 가장 많고, 전남이 3개, 인천이 2개이며 부산, 대구 등 나머지 지역의 1개소임

<표 4-2> 도시 소재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시·도	개수	업체명
부산	1	솔라피데
인천	2	도농직거래상생사업단, 실업극복인천본부 급식센터
대구	1	햇빛촌콩나물사업단
경기	5	위캔, 안성의료생협, 에이스푸드, 짜로사랑, 열린사회
강원	1	원주의료생협
충북	1	올리
충남	1	한빛회 꽃밭사업단
전북	1	새벽공동체
전남	3	여수YMCA, 목포YWCA, 순천YMCA
경남	1	사천 경남케어센터
합계	17	-

*) 비농어촌소재 사회적기업중 농어촌주민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농어촌자원 활용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자료 : 노동부가 발표한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문, www.socialenterprise.or.kr/의 인증 사회적기업 검색 게시판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2)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별 분포

- <표 4-1>에서 보듯이 2009년 9월 현재 농어촌소재 사회적기업 45개 중 자활지원사업으로 출발을 했거나 장애인 직업 재활을 목표로 운영되었던 사업장이 각각 17개와 10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뿌리가 대부분 지역자활센터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라는 것을 의미함
- 부분적으로 겹치는 경우도 있으나 업종별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과 결부되어서 돌봄서비스를 공급하는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13개로 가장 많고, 재활용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11개를 차지함. 농업·농어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산물의 생산·가공과 유통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은 8개에 불과함
- 이는 현재의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은 농업·농어촌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함

2.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설립배경과 목적 파악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존재형태 및 운영실태 파악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과 향후 전망 파악
- 현행 사회적기업 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 도출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가의 요구사항 청취

○ 조사일정 및 방법

- 조사일정 : 1차, 12월 8~9일 / 2차, 1월 5~6일
- 조사방법 : 현장방문 면담조사

※ 연구참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기관·업체대표 혹은 운영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에 유선으로 보완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 안성 생명농업지원센터, 안성 의료생협, 횡성 햇살나눔
- 예비사회적기업 : 청주 올리, 춘천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단, 횡성 우리텃밭

○ 조사대상 사회적기업의 특성 정리

	조직형태	고용인원	주요사업	지원종료대비 대응책
생명농업지원센터	유한회사	3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자자재 생산공급 친환경 농산물(잡곡) 소포장 농산물, 농자재 배송 학교농장 및 친환경먹거리 네트워크 로컬푸드, 농산물가공(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시설의 확보 학교농장사업 강화 농산물가공 사업준비
안성의료생활협	생활협동조합	1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으로서 예방, 치료, 재활활동 가정간호 서비스 소모임운영을 통한 건강한 마을만들기 환경단체,보건복지단체와의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특성(사회서비스제공)상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도 종료될 수 밖에 없음
생명살림올리	주식회사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활용 올리버거 5종과 쿠키 등 농산물가공 및 판매 로컬푸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급식을 위한 가공시설 확장
햇살나눔	합자회사	1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친환경농산물 배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제품품질향상을 통해 존립 가능
우리텃밭	영농조합(?)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노인)을 일차리 창출 유정란 생산 및 유통 소규모축산을 통한 소농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처확대 노력 중 시설확장
춘천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단	생활협동조합산하사업단(권소사업)	1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산물 회원직거래 유치원, 학교 등 지역단체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이주여성 다문화식당과 친환경농산물 조리가공 지역농업 유통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거래회원 확대 홍보, 마케팅 강화 (전담팀구성,기획중) 행정과의 협조강화 생산농가와 협조강화

※ 고용인원은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인원을 말함

※ '전망'은 면담결과를 토대로 면담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작성함

2) 조사결과 정리

(1) 고삼농협 생명농업지원센터 : 사회적기업

가. 사회적기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 2003년 고삼농협 '조합원 농가경제와 삶의 질 조사'에서 일자리 필요성 대두
 - 낮은 소득, 높은 생활비 구조를 띤 소농·고령농가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남
 - 취업에 의한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소득이 농어촌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관건임을 인식 함
 - 생계악화 농가가 방치될 경우 새로운 농어촌사회문제와 공동체유지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농가 소득의 양극화, 농업인 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농협사업 위기감
 - IMF이후 규모화 된 농가들의 농협사업 집중도가 낮아지고, 소농·고령농가의 농작업 대행, 복지사업 등 비수익성 사업 요구가 늘어남
 - 경종농가 역시 농업수익정체, 농업 경영비 증가가 계속되어 농업기반시설과 친환경 농업지원이 확대됨에도 사업참여도가 낮아짐
 - 농가경영 부실, 소득 양극화는 농협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의 내부순환, 지역활성화 필요
 - 규모화 중심의 시장논리에 따라 지역내 소규모 공동시설(퇴비장,도정시설, 육묘장)이 방치되거나 운영효율이 낮아졌음
 - 농자재의 외부(수입) 의존도가 높아 농어촌내 부존자원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지역내 먹거리의 순환도 낮아 농어촌 지역내 경제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 농어촌 여성, 고령농가들의 소득사업으로서 농산물 가공사업, 농어촌관광사업 추진필요

나. 사회적기업 추진목적

- 농어촌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어촌 만들기에 기여

- 지역내에서 필요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으나 경제성이 없거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추진되기 어려운 일들을 지역내 인력의 집단적 조직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
- 지역내에서 순환시킬 자원이 많다. 반면에 현재 농자재의 대부분은 수입
- 종전에 고삼농협이 그러한 일들을 해온 것은 농협직원이 수행해온 것이며, 사회적기업 활동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하도록 함

다. 사회적기업 추진경과

○ 2004년 사회적일자리 시범사업 참여 (10개월, 9명)

- 사업명 : 농자재생산, 농산물가공
- 고삼농협에서 신청 : 안성의료생협의 사업안내
- 사업내용 : 유기퇴비 생산, 짚겨팰렛생산, 도정공장 운영
- 시설확보 : 2000 친환경지구조성사업으로 확보된 농협시설 활용
; 유기퇴비장(110평), 소규모 도정공장
; 미생물 배양기(100리터 1식, 500리터 1식)
- 운영형태 : 정부지원금 + 사업수익
- 운영평가 : 초기 안정적인 사업량 확보 부족과 참여자 근태관리 어려움이 큼. 참여자들은 단체(직장)생활의 경험을 큰 보람으로 느낌

○ 2005년 사회적일자리 사업(1차년도 12개월,10명)

- 사업명 : 농자재생산, 농산물가공
- 운영형태 : 고삼농협 계약직 직원으로 관리
월 고정급여 (정부지원금 + 추가임금)
생산팀장 운영(추가임금)
- 퇴비제조시설 보강, 지게차구입, 보조하우스설치 (78백만원, 농협투자)
- 비료(퇴비)생산업 등록
- 대전 대덕연구단지 캠퍼터 EM기술 및 미생물 활용 협의
- 지역내 축산의 환경개선을 위한 축산생균제 생산(고삼농협 보조사업)
; 미생물배양기와 소형 짚겨혼합기 활용
- 여성참여자 외부교육실시, 짚강정제작으로 짚판매 지원

- 농어촌 취약농가에 농자재 배달 지원

○ 2006년(2차년도 12개월,10명)

- 사업명 : 생명농업지원센터
- 운영형태 : 고삼농협 계약직
- 안성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축산 미생물 기술지원 받음.
- 안성축협으로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확대
- 잡곡소포장, 양곡유통사업지원(남1, 여2)

○ 2007년(3차년도 12개월,25명)

- 사업명 : 생명농업지원센터
- 운영형태 : 고삼농협 계약직
- 축산생균제 시설 및 장비 보강(1억2천, 안성시,농협 지원 활용)
-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
- 7월 : 농어촌체험(도농교류사업)사업 (5명)
 - ; 쌀홍보행사, 어린이 농어촌체험교육, 지역자원 조사사업 참가
 - ; 도시소비자 농어촌체험행사 지원 / (주)이장과 사업연계
- 10월 : 참여자 10명 추가 - 취약계층(장애인,여성) 고용

○ 2008년(사업단 분리)

- 비영리민간단체 '생명농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인증
- 2월 정부지원 종료로 사업단을 고삼농협에서 비영리단체로 분리
 - ; 최소인원 9명(행정복지1, 농자재생산 6, 자재운송 2)
- 4월 '생명농업지원센터'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노동부 2008-7호)
- 5월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신청 : 15명

○ 2009년(법인전환)

- 5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등록, 법인전환
- 신규사회적일자리 추가 : 학교농장 지원사업(18명 추가)
- 7월 축산전문인력 채용(축산사료 마케팅 1명 추가)

마. 사회적기업 현황

○ 조직형태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 대표 : 최병찬 (고삼농협 직원, 농협에서 경영자 파견)
; 출 자 금 : 1천만원(14명의 사회적기업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

○ 유급근로자수 : 34명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 일반 : 6명(남4명, 여 2명)
- 저소득농가 : 4명(남 3명, 여 1명)
- 차상위계층 : 1명(여)
- 기초생활수급자 : 2명(남)
- 장애인 : 6명(남 4명, 여 2명)
- 노인(55세 이상) : 15명(남 6명, 여 9명)

○ 사회적일자리 임금수준

- 1인당 평균 임금은 83만원(최저임금 수준) 수준이며, 추가수익 발생시 배분
- 기존 참가자들은 약 130만원~150만원을 수령함

○ 인력선발 기준

- 농사면적 적은 사람, 사회생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젊은 사람, 장애인

○ 운영위원회 운영(정관에 기재된 특별위원회)

- 위 원 : 고삼농협 조합장,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삼면장. 참여자 대표 등으로 구성
- 역 할 : 사회적기업의 방향설정, 대외적인 운영방안 협의

○ 사업내용

- 친환경 농자재 생산 및 농작업 대행(11명)(고삼농협과의 도급계약 생산)
; 축산생균제(축산미생물) 생산
→ 마을내 주거인접형 축산경영에 따른 악취, 파리방제로 공동체지지와 가축질병예

- 방 및 가축의 생리활성 지원, 사료효율증대
- ; 농업부산물 활용 발효사료 제작. 안성관내 새송이버섯농장과 계약하여 일 4톤의 버섯부산물을 수송, 미생물로 발효시켜 축산농가에 공급
 - 자가 TMR농가에 원료공급, 배합사료, 또는 조사료 일부 대체
 - 발효사료 제조업, 폐기물처리업 등록, 2.5톤 중고트럭 2대 구입
 - ; 벼 육묘(일반벼, 친환경벼 못자리 대행)
 - 친환경 농산물(잡곡) 소포장 (2명)(고삼농협과의 도급계약 생산)
 - ; 잡곡(콩 등) 선별, 소포장 실링작업
 - 농산물, 농자재 배송 (3명)(고삼농협과의 도급계약 생산)
 - ; 친환경 양곡 학교급식 배송
 - ; 고령농가에 생활물자 및 농자재 배송
 - 학교농장 및 친환경먹거리 네트워크(18명)(직접 계약 체결 및 수행)
 - ; 학교에 체험농장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서비스
 - ; 농어촌에 순환농장(농사체험장)을 마련하여 교육장으로 활용
 - * 6,000m² 농지임대, 농장준비중
 - * 참여자 교육 : 7월-8월(주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주)이장)
 - * 교육내용 : 생태농장설계, 채소정원, 천연염색 등
 - 지역내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농산물가공사업(준비중)

바. 현행 사회적기업 제도의 한계

- 농업·농어촌의 특성이나 관행과의 충돌
 - 처음에는 농민들이 출퇴근 개념을 몸에 익히는 것이 힘들었다
 - 농어촌의 특성상 시기별 작업량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일거리를 지속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 인건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참여는 저조함. 반면, 젊은이들에 비해 노인들이 사업에 참가하는 충성도가 높다. 각자의 다양한 재주, 지역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 사회적기업 참가자 선정과정에서 현행 타 제도와의 충돌문제를 해결해야 함

-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노인의 경우 제외 문제, 농민후계자자금 지원받은 사람의 경우 후계자자금 반납과 사회적기업 참가중 하나를 양자택일해야 하며, 사회적기업 참가자의 경우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제외 문제

사. 농업생산 및 지역개발분야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가능성

- 농어촌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 즉 안전한 농산물 생산, 농산물 가공,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있음
 - 이를 위해서 정부(농식품부)에 의한 기반조성 지원 필요(*새로운 지원사업이라기 보다는 현재의 각종 지원사업들의 목표와 세부내용을 이러한 관점으로 재구성)
 - ; 사안별로 농식품부(기반조성)+노동부(일자리 창출지원)의 결합 필요성
 - 농식품부가 산하의 공적 조직을 통해 '지원센터'기능을 수행하거나 그것을 수행할 지원기관을 육성해야 함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으로 로컬푸드와 지역내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사업의 추진 필요
 - 예를 들어 정부의 친환경농자재 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 아이템의 발굴 및 정부 사업내용의 변경

아. 시사점

- 로컬푸드, 지역 내 자원순환을 통한 친환경농자재 만들기,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은 그 자체를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음. 이러한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공간(지역)의 유지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전제한 활동들임
- 따라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일자리수'에 국한된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정책과 달리 농어촌공간(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그것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초점(목표)을 맞춘 제3섹터 조직체로 규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 예비계획,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농어촌 공사나 컨설팅 업체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사회적기업가로 구성된 지역개발 사회적

기업도 함께 참가하도록 해서 일종의 '사회적경제 시장'에서 정부조직이나 민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경쟁하도록 한다거나, 사업추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사회적기업이 권역사업의 사무국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활동영역을 구상해볼 수 있음

(2) 안성의료생협 : 사회적기업

가. 사회적기업 추진배경

- 안성지역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1차 보건의료 활동 전개
- 지역주민의 '양심적인 의료기관을 만든다', '내 병원 갖는다'는 차원의 적극적 참여
- 협동, 참여, 사회적 책임, 정직, 배려, 신뢰 등 6가지 가치를 존중
- 1994년 300여명의 조합원과 1억2천만원의 출자금으로 시작

나. 사회적기업 추진경과

- 1987년 고삼면 가유리 주말진료소 활동으로 시작
- 1994년 4월 안성의료생협 창립(농민의원 설립, 안성농민한의원 인수)
- 2002년 생협 치과의원 개원
- 2003년 5월 우리생협의원 개원
- 2004년 6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재가간병사업) 시작
- 2006년 5월 건강증진센터 개소
- 2007년 5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지도자 대학 시작
- 2008년 4월 사회적기업 인증
- 2008년 7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립
- 2009년 1월 마을별 건강모임 시작

다. 사회적기업 현황

- 조직형태 : 생협법에 근거한 생협법인(비영리 특수법인)

- 이사장 : 이정찬(농업인)

○ 조합원 및 출자금, 직원수

- 2009년 4월 현재 조합원 3100세대, 출자금 6억8천만원
- 직원수 74명

○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규모 및 인건비 지원수준

- 가정간호사업(간병사업) 14명, 전문인력 3명(보건예방, 전산관리, 작업치료)
- 월 약 83만원(주40시간×최저임금)+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라.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주요 사업내용과 특징

○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주요사업

- 안성농민의원, 안성농민한의원, 생협치과의원, 우리생협의원 운영
-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으로서 예방, 치료, 재활활동
-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불편자, 저소득층 방과후 교실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 주치의제도, 환자자조모임
- 소모임 운영을 통한 건강한 마을만들기
- 환경단체, 보건복지단체와의 연대

○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의 특성

- 도시지역과 비교해 큰 병원이 부족하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복지서비스와 결합된 통합의료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함
- 가정간호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부재

마. 사회적기업 활동 관점에서 본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 기본적으로 농어촌지역의 특성이 원거리 진료 등 의료활동에 대한 수가체계 내 미

반영

-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규모가 직종별로 차등이 없어 의료분야 인력확보 및 유지 어려움
- 노동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일자리 수에만 중점을 둔 정책 추진
- 복지부는 돌봄사업에서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배제함. 의료분야 사회적기업은 민간의료시장과 노인요양보험 사업에만 참여할 수밖에 없음
- 질 좋은 의사와 공공의료 기능을 갖춘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농어촌지역 의료체계의 과제임
- 농어촌지역 내에서도 시내권과 면, 리 단위 지역간의 의료기관 불균등한 편중

바. 농업생산 및 지역개발분야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가능성

-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출현 가능성이 큼
 - 예를 들어, 예방분야에서 1회적이고 형식적인 주민건강교육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마을주민 건강 교육·컨설팅 담당 사회적 기업(ex, 농민체조분야의 사회적기업가), 전문 가정간호 및 재가서비스 사회적기업, 거동불편자 교통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제공 사회적기업, 등
- 또한 그러한 농어촌지역 의료분야 사회적기업의 활동은 사실상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을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한시적 인건비 지원과 같은 단편적인 지원방식이 아니라 전문인력 인건비, 교통비, 다양한 사업비 등 활동분야별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하고 지원시한도 한시적 지원과 영구적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보다 활발한 의료분야 사회적기업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 시사점

-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복지부의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과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관심없는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일자리) 정책을 개선하고, 농어

촌지역 현장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분야의 '의료 분야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모델'을 검토해야 함

(3) (주)생명살림 올리(all 리) : (예비) 사회적기업

가. 사회적기업의 추진배경

- 생협활동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운동을 전개한 경험과 '민들레 워커즈 콜렉티브' 활동 과정에서 콩 비지의 활용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콩버거 아이템 착안

나. 사회적기업의 추진경과

- 1995년 청주 YWCA 생협활동
- 2005년 청주 YWCA의 '민들레 워커즈 콜렉티브' 활동
- 2008년 4월 사회적기업 인증
- 2008년 7월 사회적기업 일자처 지원 시작

다. 사회적기업의 현황

- 조직형태 : 주식회사
 - 사장 : 이해정(전 청주 YWCA 간사, 여성인력지원센터 활동)
 - 채용조달 : 청주 YWCA에서 대출받아 채용조달
- 사업현황
 - 매장 2개 및 단체, 학교, 어린이집과 직접 공급
 - 매장 2개의 매출규모는 전체 매출의 약 25%로 다소 취약함
 - 2009년 매출액(계획) 2억7천만원
- 사회적일자리 규모 및 인건비 지원수준
 - 2008년 9월부터 15명(매장 5명, 홍보팀 4명, 팀장 1명, 제조 5명)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로컬푸드 관점에 따라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주재료로 올리버거 5종과 쿠키 등 3종의 가공식품을 판매

○ 식재료 조달원칙 : ① 지역 친환경농산물 ② 최대한 가까운 타지역 친환경 농산물 ③ 지역 농산물, 공정무역

- 패티만 별도로 공급
- 학교 가사실습시간 강의
- 지역내 로컬푸드 네트워크와의 교류

라. 사회적기업 올리의 특성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고용 창출, 지역농산물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

○ 환경운동과 식품가공사업의 결합

- 글로벌 푸드시스템에 의한 푸드마일리지를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 지역 농민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 지역 농민단체 등과의 연대활동, 로컬푸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상호 신뢰관계 구축으로 믿을 수 있는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조달하고 재료 농산물 유통시-템 효율화를 꾀함

마. 사회적기업 활동의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들

○ 지역내 친환경농산물 원료의 안정적인고 효율적인 조달 문제

- 얼굴있는 먹을거리의 생산, 유통, 가공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안정적인 생산-소비관계의 구축 필요. 예를 들어 시민주체의 농산물 직매소 설치

○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인건비 지원 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소지가 큼

-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없어 사회적기업 참가자들의 업무에 대한 소홀 가능성
- 총액으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다양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바. 농산물 조직화 및 가공분야의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가능성

- 로컬푸드 개념이 결합된 생산자 주체 지역농산물 가공, 유통사업
 - 지역사회내의 먹을거리 신뢰관계 구축과 네트워크 활동이 중요. 올리의 경우 농민단체, 시니어클럽, 복지관, 자활센터, 사회적기업과 네트워크 활동 전개
 - 생산지 견학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와의 관계 형성 필요
 - 소비자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사. 시사점

- 지역사회에 기반한 친환경농산물 가공, 유통, 소비 과정의 성패는 먹을거리 신뢰관계형성과 다양한 네트워크임
 - 농민주도의 농어촌지역사회 기반 로컬푸드 먹을거리 가공 사회적기업 구상 필요
- 또한 미래의 소비자인 학생들에 대한 식품안전교육 활동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올리버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하는 점을 유념해야 함

(4) 춘천 친환경농업유통사업단 : (예비) 사회적기업

가. 사회적기업 추진배경

- 농산물시장체제의 세계화로 인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 가중
 - 복잡한 유통단계, 화학처리 농산물과 유전자조작농산물의 범람
- 땅과 자연이 살아야 농민이 살고, 농민이 살아야 소비자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음
 - 춘천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비롯한 6개 관련단체가 연대하여 '춘천시 친환경농산

물유통사업단 결성

○ 참여기관

- 춘천시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춘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춘천노동복지센터,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한림대 산학협력단

나. 사회적기업 추진경과

○ 사업단 추진과정

- 2008us 6월, '춘천지역먹을거리순환위원회' 창립
- 2008년 7월, '소비자회원직거래(CSA)' 시범사업시시 : 40가구 모집 및 실시
- 2008년 8월, 춘천로컬푸드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2008년 12월 '춘천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단' 본격추진(노동부,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 선정) → 회원직거래 40가구 사업종료, 간담회실시

○ 사업단의 주요역할

- 회원직거래(생명이 꽃피는 밥상) : 생명밥상, 시골반상
- 유치원, 학교 등 지역단체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 여주여성 다문화 식당과 친환경농산물 조리가공
- 춘천시와 친환경농업활성화 공동사업
- 지역농업 유통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다. 사회적기업의 현황

○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인원 : 16명

- 생산, 물류, 조리가공, 교육홍보, 다문화카페, 유정란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음
- 2008.12~2010.11까지 지원 → 만약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3년간 추가지원 가능 :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 여부. 만약,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하고 지원이 중단된다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자립화를 위한 노력 : 회원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전개할 계획임

- 2009년 매주 배송 : 90~130가구 공급
- 초기는 물품이 부족하여 국공립 어린이집만 20여곳 공급

라.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의의

-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순환의 실천
 - 친환경농업생산자연합회와 지역내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지역농업을 보호하고 지역내 물질순환시스템을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
 - 공동체지원농업(CSA)의 정착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단체급식의 개선

마. 현행 사회적기업 제도의 한계

- 과도한 서류, 서식의 잦은 변경, 서류추가
 - 출근부, 업무일지 등이 있는데도 개인별로 근무상황부를 추가로 요구함
 -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데도 또다시 1년별로 서류요구
- 경영지원조직의 한계
 - 광역단위로 묶어서 한 개 기관 : 서울, 강원은 '함께 일하는 재단'
 - 강원지역은 '함께 이하는 재단' 내 2명이 담당 : 1명은 영동, 1명은 영서(조세훈)
 -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능
- 지역내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미약함
 - 특정사업에 응모하는데 아무런 배려가 없다
 - 사회적기업의 경우,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면에서서 취약(예; 취약계층 고용)한데도 일반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내 자립이 불가능함
- 사회적기업의 운영자들도 사무, 행정, 제도, 법적인 내용을 모른다.
 - 컨설팅이 필요하다.

-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화'해야 하는데 어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모른다.

사. 시사점

-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인건비'만 지원가능, 시설지원은 불가능
 - 노동부, 인건비지원 / 농림부 시설비지원가능 → 노동부와 농림부사업의 연계추진이 필요함
- 경영지원조직의 개선
 - 소권역단위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어촌을 이해하는 전문가집단으로 자문단 구성
- 활동가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전교육, 연찬의 필요
 - 사회적기업의 운영자들의 자세와 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정립이 요구됨
 - 따라서, '사업'이나 '기관'인증 전 단계에서 사회적사업가의 리더십과 활동가로서의 자세, 역량을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함 → 가령,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이나 관련 '사업'의 인증을 희망하는 사람은 2개월 전에 사회적기업가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을 광역단위 혹은 전국단위로 개설하고 관련 과목(예: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행정실무, 가공사업, 유통사업과정 등)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
- 부처 간의 사회적기업 관련정책의 연계가 필요
 - 현재와 같은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사업만으로는 농업농어촌의 당면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음. 시설이나 장비와 관련한 문제는 해결할 수없기 때문임. 가령,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관련 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현재는 하우스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우스개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자체가 불가능함
 - 따라서, 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 정책(가령, 농림부 사업)과 노동부정책을 연계한다면,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지자체와 지자체를 묶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가령, 로컬푸드나 학교급식 등의 경우 군단위의 경우, 소비자계층의 조직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개의 지자체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사업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여 하나의 소권역을 형성하고, 이들을 공동으로 관할하는 공동물류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광역물류기지의 건설도 필요함

(5) 우리텃밭 : (예비) 사회적기업

가. 사회적기업 추진배경

- 농산물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우리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여성농업인단체(전여농)의 사업으로 출발함, 황성에서 시작한 사업을 전여농이 전국사업으로 확대함
 - 전국의 광역단위마다 1개씩의 사업이 진행 중
- 여성 농업인으로서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소농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다양한 사업내용이 진행되고 있음
 - 황성 우리텃밭의 경우는 유정란사업을 중심으로 진행 중임

나. 사회적기업 추진경과

- 추진과정
 - 유정란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중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보를 얻어서 사업계획서를 사회적기업 신청에 맞추어서 작성함
 - 사업개시일 : 2009년 7월 1일
 - 노동부의 인력지원(근로취득일) : 2009년 8월 10일
- 사회적기업의 활동분야를 유정란으로 택한 이유
 - 자본주의적 대규모축산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 : 대규모 농장은 효율성은 클지 모르지만, 병이 오면 전체가 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대규모축산의 위험성, 소규모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규모농가의 협동화가 필요함

다. 사회적기업 현황

- 현재의 사육규모 : 1200수 / 월 750~800만원 수입
 - 자립가능한 사육규모 : 5000-6000수
-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인원 : 12명
 - 2군데 농장에 분산 근무
 - 향후 5000수 규모로 농장이 늘어나면, 추가로 6곳 이상의 농장을 설치해야 함
 - 한 농장당 1~2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로 소규모 농장을 지향하며, 농장과 농장의 협동을 통해 규모화의 장점을 획득해 나갈 계획임
- 현재의 계사(鷄舍)는 개인(윤종상)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하였고, 개인당 1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 만큼(1이당 약 80만원씩 총액 9600만원 정도)씩 출자하고, 여기에 조기정책지원금(시설비, 홍보마케팅 지출가능) 1000만원을 융자받아 시설설치비는 반환함

라.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의의

- 취약계층의 고용
 -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취업이 불가능한 농어촌 노인들을 고용함
- 소농의 보호와 작부체계의 전환
 - 대규모 축산을 지양하고 소규모 농장의 협동을 통한 규모화의 장점을 확보
 - 우리텃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횡성텃밭 꾸러미'사업(일종의 택배사업, CSA) 전개 : 소량다품목화를 통한 단작체계의 한계를 극복

마. 현행 사회적기업 제도의 한계

- 현재의 노동부 사회적 기업은 농어촌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음
 - 가령, 근로기준법의 준수 : 농어촌현실과는 괴리가 있음, 현재의 규정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 18:00내에서만 인건비가 지급됨
 - 따라서, 만약, 일거리가 없어서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는 근무하지 않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했다면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음 → 이러한 규정을 몰라서 작년에 1인당 50만원씩을 반환하기도 함
 - 또한, 계절적으로 여름철에는 일거리가 많고, 겨울철에는 일거리가 적은데도 무조건 균등하게 월 83만원 지급함

바. 시사점

- 경영지원조직의 개선
- 활동가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전교육, 연찬의 필요
- 부처간의 사회적기업 관련정책의 연계가 필요

(6) 햇살나눔 : 사회적기업

가. 사회적기업 추진배경

- 재학 중에는 학생운동, 졸업 후에는 노동운동에 참여하면서 취업불안정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공회대에서 사회적기업가 육성과정을 이수함
- 농산물가공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취약계층의 고용과 농어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가복지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상 농산물가공사업의 시작하게 됨

나. 사회적기업 추진경과

- 사회적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참여

- 2006년부터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창출 시범사업'에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운송사업단을 조직, 횡성과 홍천의 친환경농산물을 한 살림에 공급하는 사업을 전개함
- 노동부로부터 5명의 인력을 지원받음
- 2007년말, 시범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한 1차인증에서 31개 업체를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함 → 인증사업체의 연착율을 위해 전체지원금의 75%를 추가로 지원하게 됨
-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됨

다. 사회적기업 현황

- 2008년 8월, 17명을 지원받음
 - 농산물 가공/유통사업 10명, 재가복지사업 7명
 - 월 837,000원+4대 보험의 85% ==> 약 85만원
- 2009년 총매출 : 3억원
 - 가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재가복지사업에 투입하고 있음
 - 만약, 지원금이 중단된다면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 지원중단에 대한 대책 : 매출액 제고

라.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의의

- 취약계층의 고용
 - 농산물가공/유통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 총인원의 50% 이상
- 농어촌지역개발에 기여
 - 친환경농산물가공 - 생산농가의 판로 확보
 - 로컬푸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 재가복지사업(7명)

- 농어촌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제공

마. 현행 사회적기업 제도의 한계

○ 제도변경이 너무 잦다 : 1년에 1번 이상씩 변경

- 사회서비스 부분의 경우, 기존의 인증받은 곳과 예비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그대로 관리하지만, 새로운 사업은 복지부로 이관 ==> “사회공헌기업”으로 명칭변경 예정
- 복지부사업의 한계 : 나눠주기에 급급함 --> 장기적인 비전이 없어, 몇 년 하다가 말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임
- 노인요양보험의 시장에 개방됨으로써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음 : 가령, 원주, 횡성 지역의 경우, 관련업체가 일반병원, 복지사, 공무원퇴직자 등이 설립한 업체가 40여 개에 이르고 있음. 노인에 대한 서비스제공 보다는 업체당 사업대상자(머리 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본말이 전도된 느낌임.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될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노인요양업체 설립기준 : 도시지역은 노인요양사 15명이상 확보, 농어촌지역은 노인요양사 5명 이상만 확보하면 설립가능)

○ 인건비만 지원하는 현행방식의 한계

- 노동부의 ‘기업연계형 모델’의 경우, 기업과 연계협약시에 기업의 투자분에 대응하여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경우가 “교보다솜이’가 있음 ==> 실업극복국민재단과 교보생명이 협약을 맺고 실업자를 지원하는 사업
- 통상의 경우, 현행제도는 인건비지원에 한정되어 있는데, 인건비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내에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제고가 중요함. 즉, 사회적공헌을 목적으로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차별적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임
- 가령, 로컬푸드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내에서의 이들 사회적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의 보호가 필요함. 예를들면, 학교급식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 (로컬푸드사업으 하는)사회적기업과 일반외식업체, 그 업체가 수입농산물 식재재를 사용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모두 동등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인건비지원 외에 설비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함

○ 경영컨설팅관련

- 현재도 사회적기업 인증 후에 경영컨설팅 지원이 있음. 그러나, 현재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홍보전단지'만 제작해 주고 있는 실정임

○ 사회적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이 없다.

-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준비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이 인증 및 지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우려되는 사례 : 인건비지원을 받아 개인사업이나 조직의 실무직원 인건비로 충당하는 경우, 3년간 지원기간만 사업을 하고 지원이 끝나면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 자기 사업과 연계하여 흉내만 내고 개인적으로 실속을 챙기는 경우 등이 대표적임

바. 시사점

○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간의 협의회 정례화

- 잦은 제도변경을 자제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업무재배치와 제도변화는 불가피함,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기업에 관한 부처별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정부 내의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임

○ 인건비지원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마련

- 이른바 IMF하의 실업극복을 위해 출발한 우리의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에 1차적인 목적이 주어졌고 이후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건비지원에 머물러 있음
- 향후에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비시장적 지원제도(가령, 학교급식에 대한 우선 참여 지원)가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지원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가의 재량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사회적기업가의 경영능력제고를 위한 컨설팅지원제도의 강화
 - 현재의 '경영지원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실효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컨설팅전문가 pool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경영지원을 요청받고 컨설팅을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는 현행 제도 대신에 컨설팅을 요청하는 사회적기업에게 해당 컨설턴트에 지출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하면, 각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기업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더 충실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임. 다만, 이러한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이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사회적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의 실시
 -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량있는 사회적기업가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활동가들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함
 - 따라서 행정에서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사회적기업가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연찬이 필요

3. 현행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과제

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의 정책방향

(1) 농어촌지역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더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 농업생산기반, 농어촌경관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 식량작물 생산, 토종종자 지키기, 소농중심의 마을단위 영농활동 공동체 활동, 조건

불리지역 영농활동, 전통식품 및 지역농산물 가공·유통, 산림보전이나 하천정화와 같은 자연환경보전 활동

- 농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확대하기 위한 활동
 - 로컬푸드운동, 국민식생활교육, 농산물 직거래, 전통문화체험, 생태교육 등 농업·농어촌의 대국민 공익적 기능 유지·확대 활동

 -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활동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자원 활용, 지역특성화 반영 등이 실현되는 대안적 농어촌지역개발 활동
 -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 마을만들기 활동
 - 지역밀착형 지역자원조사 및 지역주민역량강화, 공공 컨설팅을 위한 활동
- (2) 농어촌지역 사회적기업 주체를 발굴해야 하며,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기업 지원조직 또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 농어촌지역에 존재하는 기존의 다양한 주민조직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지역농협, 농업회사, 영농조합, 협동조합, 생협, 작목반, 사회복지단체, 농민단체, 지역기반 기업체, 민관협치조직 등 농업과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주체의 육성

- 신규인력이나 조직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
 - 영농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기업 활동을 통해 귀농·귀촌자들이 농어촌지역에서 자신들의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교육·사회복지·환경·전통문화·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농어촌형 사회적기업가의 유입, 육성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 지원조직의 육성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정보교류와 공동사업의 추진
 - 외부 전문가 조직과 달리 지역의 자원 등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할 '지역 밀착형 사회적기업 지원조직'의 육성

2)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1)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폐지 및 정부지원대상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사회적기업 활동과제 인증 및 지원제도로 전환
 - 사회적기업은 최소한의 요건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시

- 인건비 지원제도의 개편 및 사회적기업 사업과제별 지원
 - 단편적인 인건비 지원방식을 사업과제수행을 위한 인프라 확보, 관리 및 운영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회보험료(기업부담분), 퇴직금 등으로 개편
 - 사업규모, 사업지속 연도, 사업성과 등을 기준으로 규모가 클수록, 사업기간이 길수록, 사업성과가 클수록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초기의 지원 수준은 1년~2년 정도는 최소한 적자운영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활동영역 확대
 - 사회서비스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개발,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영농활동과 영농지원 사업,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에너지자립마을 경영,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도농교류 및 농어촌관광, 식생활교육, 전통문화의 보전 및 계승, 다문화가정 지원, 지역역량 강화 및 경영컨설팅,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네트워킹 등으로 사회적기업 활동영역 확대
 -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추진과 연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관련 활동에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도록 정책설계

- 사회적기업 투자기금 조성
- ① 정부에 의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투자기금 조성의무를 법적으로 명기
 - 정부가 투자기금을 출연하고, 기금운용은 민간영역의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운용기구에서 운용
 - 사회적기업 지원분야를 사회서비스와 공적인 농어촌지역개발 등 농어촌지역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에 한정
 - 독립적 운용기구와 별도로 다차원적인 평가체계 구축

○ Future Builders England

- 퓨처빌더즈 기금은 1억2500만 파운드르 정부(내무성 주관)가 전액을 2년에 걸쳐 출연, 기금운영은 채리티 뱅크에 의해 구성된 컨소시엄에 위탁
- 정부는 퓨처빌더즈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대신 기금운영에 대한 모니터와 감시체계를 강화함. 퓨처빌더즈는 매달 내무성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1회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제출함. 또한, 정부의 독자적 평가,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가, 내무성에 의해 구성된 20여명의 자문단에 의한 평가 등 3가지 모니터체계를 구축함
- 투자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업적 영역의 외부전문가를 영입한 퓨처빌더즈는 개방적인 접근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들에 적합한 투자모델을 실험하고 테스트 함
- 향후 민간차원의 기부나 투자로 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투자계획은 공동체 결속, 범죄, 교육 및 학습, 건강과 사회적 돌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지원 등 5개의 지원분야를 설정함

②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민간투자여건 확대 노력을 법적으로 명기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투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가 육성 프로그램 지원 의무화

- 시·도별 농어촌형 사회적기업가 및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 확대 및 적극적인 참여 캠페인 전개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론 및 실제 경영모델을 중등교과과정에 반영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지원조직 육성사업 추진을 법적으로 명기

- 법안에 조례제정 근거를 명기하고 시·도별, 시·군별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지원부서 설치할 수 있도록 명기.
- 지자체 지원부서와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지원조직의 민관협력기구 설치 인센티브 제도 운용(사회적기업 지원부서도 노동부에서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개편 필요)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지원조직에 대한 전문인력, 운영비 등 재정지원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기획, 경영전략 등에 관한 정부 및 지자체 연구과제 위탁수행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에 평가체계의 강화

- 정부 및 지자체, 지역사회, 농어촌형사회적기업 전문가의 다차원적인 평가시스템 구

축을 법적으로 명기

(2)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지원조례제정

- 민관협력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창업
 - 지자체가 주체인 지방공기업과 달리 지자체와 민간 공동주체의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창업근거 마련
 - 공익성과 주민참여, 지속가능성을 모두 갖춘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을 지향

- 시·도별, 시·군별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인규베이팅 및 네트워킹 지원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가 육성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 지자체 단위의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가 양성
 - 기존의 농어촌주민을 비롯해서 지역 밖의 역량있는 농어촌형 사회적기업가 양성계획의 수립 의무화

제 V 장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육성방안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요건 완화 : 사업계획 제출 자격부여
- 인증방식의 개선 : 현행의 기관인증 방식에서 '사업(project)인증' 방식으로의 전환
- 지원방식의 개선 : 사업인증(=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의 개선 : 인건비 보다는 사업비 지원
- 중간지원조직의 육성 : 인큐베이팅 기능+역량강화 기능
- (가칭)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육성기금제도의 도입

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요건 완화

1) 현행 사회적기업의 요건

(1) 조직형태

-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 상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 민법상의 법인·조합, 상법상의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의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음(법 제8조 제1항)
 - 여기서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란 ①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②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③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④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생활협동조합', ⑤ 그 밖에 법률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동법 시행령 제8조)

(2) 유급근로자 고용

-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 상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법 제8조 제2항),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는 반드시 유급근로자 명부를 작성 비치 하여야 하고, 근무활동을 월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
- 유급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 뿐만아니라, 비정규직(임용, 상용), 파트타임근로자 등 관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용된 사람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유급근로자로 인정함
- 다만,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나 인증 신청한 사회적기업과는 무관한 근로자는 유급근로자에서 제외함

(3)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법 제8조 제3항)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동법 시행령, 제9조)15)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중이 30% 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이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실현 여부를 위의 3가지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판단함

15)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는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취약계층 해당비율이 각각 50%로 되어 있으며, 혼합형의 경우 취약계층 해당비율이 각각 30%로 되어 있으나, 부칙 제2조에서 해당규정의 적용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하고 있음. 현재는 이 규정이 2011년 6월 30일까지 유예된 상태임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사회적기업은 반드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수혜자와 근로자 등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함
- 그리고, 이러한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명시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5) 이윤배분의 제한

-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회계년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 2/3 이상을 반드시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2)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요건

(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인증의 의미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은 '농어촌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기업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운영되는 조직'이고, 따라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요건은 매우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형식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적기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임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요건은 개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설정해 둬으로써 현행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예 : 과도하고 형식적인 진입장벽)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 규정

- 단, 이렇게 전환할 경우 '인증하면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은 폐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는 부실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조직이나 단체,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 여기서의 '인증' 목적은 부적격자의 '사업'참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비적 장치일 뿐 현재와 같은 지원을 전제로 하는 '인증'이 아님
- 과거 대학예비고사가 있었는데 이 '예비고사'에 통과해야 본 고사를 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음. 여기서의 인증은 현행과 같은 '지원'을 위한 '인증'이 아니라 일종의 '예비고사'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현재도 농식품부에서 지역개발사업 컨설팅회사를 인증(?)하고, 이 업체들을 등재한 책자를 발행하였고, 지자체에서는 이 책자에 등재된 업체들에 한해 컨설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지금처럼 업체 '인증=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인증을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2)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가이드라인

-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요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
 - 조직형태나 활동영역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사회적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면 그것이 곧 사회적기업이라고 간주함
 - 물론,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우리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거의 없음. 다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다면 자원봉사자의 확보라든가 금융조달의 편의성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장점이 있음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사회적 목적 실현 : 농어촌지역의 활성화
 - ② 운영주체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예: 사회적기업가육성과정 이수자 등)

- ③ 민주적인 지배구조 :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예: 정관구비 여부, 참여자의 구성, 다중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의사결정 등)
- ④ 이윤배분의 제한 : 분배가능한 수익의 2/3이상 목적사업에 재투자
- ⑤ 회계의 투명성 : 수입, 지출에 관한 투명한 회계정리와 장부의 비치
- ⑥ 조직의 지속가능성 : 일시적, 미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지역밀착형으로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가
- ⑦ 기타

2. 기관·조직 인증에서 사업(project)인증으로 전환

1) 기관·조직 인증제도의 문제점

- 현행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관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며, 현재의 ‘인증’제도는 ‘지원’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
 - 이처럼 정부에서 일정한 ‘틀’을 만들어, 그것을 충족시키는 기관이나 단체만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기관이나 단체만을 지원하는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 기관·조직인증의 문제점
 - 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을 하게 되면 활동의 내용보다는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실질적인 활동은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더라도 형식적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사회적 기업’ 인증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음(현장의 의견)
 - ② 농식품부에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인증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할 경우, 만약 그 기관이나 조직이 기대했던 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혹은 중도에 문

을 단계 된다면 그 책임이 농식품부로 전가될 가능성 큼

○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project)'에 대한 인증방식

- ①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 ②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심사하여 해당사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음
 - 이렇게 할 경우, 기관이나 단체 그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기 ①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으며, 사업을 인증·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인건비' 지원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성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사업'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방식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지역개발방식의 일반적인 흐름이며, 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기초생활권정책'(=포괄보조방식)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함

[참고의견]¹⁶⁾ 기관인증에서 사업인증으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

- <표 5-1>에 보듯이 현행과 같이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 보다는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통한 차등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남
 - 전문가의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90%가 현행과 같은 기관지원보다는 '사업지원'을 선호했으며, 현행 사회적기업의 운영자와 예비 사회적기업의 운영자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차등지원'방식을 선호하였음

16) 이 의견은 전문가(20명), 사회적기업운영자(9명), 예비사회적기업(12명), 사회적기업준비자(16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조사는 당 재단에서 운영한 세차례의 사회적기업 포럼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E-mai로 발송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체적인 회수율은 35.6%였음

<표 5-1> 인증(=지원)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사회적기업 운영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자(%)	사회적기업 설립준비자(%)
현행과 같이 인증된 기업에 대해 인건비 등 지원	5	20	11	16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 후에 차등지원	90	60	67	68
기타	5	20	22	16

- 기타의견으로는 ①농식품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타당성과 공익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센터를 설립하여 관련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②새로운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공모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타지역에서 사업을 지원할 경우 참여주체의 50% 이상이 해당 지역 내에 3년 이상 거주할 것, ③농어촌지역의 특성 상 여러개의 기업설립을 지원하기보다는 지역분석을 바탕으로 일정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의 사업 지원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2) 사업(project) 인증·지원 기준

- 여기서의 '인증'은 지원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인증. 사업의 심사기준을 말함
 - 현실적으로 공모제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당장은 이러한 심사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별로 지원하는 방식을 실시하다가 장기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함

[참고의견] 농식품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

- <표 5-2>에 보면, 농식품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사업분야는 답변 주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소규모 지역농산물 공동가공공장'

에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로컬푸드 등 지역산품의 유통'이 두번째로 많았음

- 특징적인 것으로는 전문가가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에 3번째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사회적기업 운영자는 '청소년 문화증진사업'에,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자는 '의료생협'에 또, 사회적기업 설립준비자는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농교류사업에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보였음

<표 5-2>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중점 지원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5점 만점)

	전문가	사회적기업 운영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자	사회적기업 설립준비자
소규모 지역농산물 공동가공공장	4.00	4.00	4.22	3.70
로컬푸드 등 지역산품 유통	4.35	3.80	4.56	3.50
마을주민 공동참여의 도농교류사업	3.65	3.40	3.56	4.00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조사 보존사업	3.55	3.60	3.00	3.20
농어촌청소년의 문화증진사업	3.75	3.80	4.11	3.60
농어촌주민의 교육 컨설팅사업	4.00	3.00	3.22	3.50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3.55	3.20	3.33	3.70
농어촌의료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지원	3.15	3.80	4.22	3.40

○ 기타의견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의미, 방향, 실행방안, 지원, 평가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네트워크 또는 기관의 상시적인 운영지원이 필요함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컨설팅 필요
- 농어촌의 사회적기업 참여자들은 대부분 조직(=직장)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함
- 농업농어촌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시대로 '다원적기능' 논의를 확대하여 농식품부가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무관심과 무지를 깨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표 5-3> '사업'의 평가(=심사, 인증)기준 (例)

평가 기준	내용	평가척도
지역 밀착성	사업내용, 목적으로서 지역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가?	①지역문제를 테마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②테마의 지역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인지되고 있는가?
지역 공헌성	지역의 문제 해결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가?	①지역공헌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음 -지역의 고용 확대에 연결이 되고 있는가? -특산품의 판매 확대에 연결되고 있는가?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지역 한정성	일정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가?	①사업의 대상지역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가? ②활동거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가?
주민 정체성	활동의 주체로서 지역주민 등 주민 섹터가 사업을 전개하고, 자본 운영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가?	①참가자가 지역주민 주체인가? ②출자금이 지역주민 주체이고, 행정과 기업 등의 출자가 2분의 1 미만인가? ③운영대표자가 지역주민이고 지역주민과의 협동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④민주적인 운영의 확보, 구성원의 경영에 대한 참가가 실현화되어 있는가?
사업성	독자 사업 수지가 주요한 수입원으로서 계속적으로 확립되어 있는가?	①조직이 법인화되어 있는가? ②사업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가? ③독자적인 사업수입이 2분의 1 이상인가? ④취업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가? ⑤적정한 이익을 내고 있는가? ⑥이익 분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가?

3. 사업(=project)의 지원방안

1) 기존의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

○ 지원방식의 다양화

- 현재와 같이 고용인원 1인당 일정액(노동부 월 약 83만원)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음
- 예산방식에 따라 1인당 지원액을 확정해야 한다면, 사업주체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자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령,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숙련도나 근무연한, 노동능력, 업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지원규모의 다양화

- 사업규모(매출액 또는 인건비 총액 등), 수익발생을 등에 따라 연차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하며, 사업성과가 좋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지원규모를 늘려주는 인센티브 지원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초기의 지원규모는 사업분야(제조가공, 농업생산지원, 사회서비스제공, 네트워킹 및 컨설팅지원 등)별로 적정선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가령, 1년 정도는 손익계산서상의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규모를 정함)

○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의 지양

- 낭비성 예산지원을 방지하고 사업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제안된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 등 운영비는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함. 단, 사업의 성격상 수익이 발생할 수 없거나 혹은 수익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예: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공익성은 높지만 채산성은 낮은 경우 등)는 엄격한 제한과 철저한 평가 하에 인건비지급도 가능토록 함

2) 사업에 대한 지원 프로세스

(1) 지원서 작성 및 자격조건 심사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기관에서는 인증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지표는 사전에 배포함

- 신청서에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시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예상되는 이익과 비용, 공적 또는 사적 자금조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로 현재의 재정상태 등을 나타내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이러한 신청서의 작성을 지역내의 공적·민간 컨설턴트(= 중간지원조직)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위탁할 수도 있음

- 작성된 신청서를 농식품부 혹은 관할기관에 송부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해당 신청자가 자격조건에 적합한지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함

(2) 지원서의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 초기 심사과정을 거친 신청서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기술적·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함

- 신청서에 대한 기술적 평가에는 가령 <표 5-3>의 평가지표 중 정량화가 가능한 객관적인 지표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관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자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 혹은 관할기관에서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가칭)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사업계획 심의위원회'에 제출함

(3) 최종 심사 및 결과 통보

- '사업계획 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관계자, 중간지원기관 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지역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년 2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서를 검토, 평가함. 평가지표는 <표 5-3>을 중심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함
 - 프로젝트의 필요성
 - 프로젝트의 성과
 -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인 영향 면에서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 넓은 의미에서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 재정적인 면에서의 생존가능성과 위험도
 - 공적인 예산지원의 필요성 여부
 - 프로젝트의 관리와 실행 계획
 - 위험평가
 - 지역 농어촌발전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여부
 - 공적예산지원의 효율성 평가

- 송부된 평가보고서와 신청서를 기초로 '사업계획 심의위원회'는 지원한 프로젝트가 해당지역의 활성화에 부합하는지, 예산계획은 타당한지 등에 대해 재검토하고, 프로젝트의 승인, 거부, 보류 등을 결정함

- 거부나 보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거부나 보류된 이유를 적시한 문서를 보내며 때때로 서류 보완한 후 재신청을 권고함. 또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돕는 기관을 소개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함

-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농식품에서 '지원승인 서류'를 송부하며, 이 서류에는 프로젝트의 운영과 정책적 지원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
 - 이와 함께, 승인서류에는 신청자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와 단계별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러한 목표와 단계별 성과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승인당시 신청자와 논의해서 합의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추과정에서 분기별로 '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서'에 그 달성여부가 기록하도록 함

- 만약, 이러한 합의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는 보조금의 지급이 유예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토록 함

3) 사업별 · 수익성을 고려한 차등지원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이나 수익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표 5-4> 사업별, 수익성을 고려한 지원비율(영국 농어촌기업지원 例)

사업의 성격	지원비율(%)
공익적사업 또는 최소경제 이익산출	50~100
일반적인 수준의 경제적 이익산출	30~50
높은 수준의 경제적 이익산출	15~30
농민의 농장다원화사업	30~40(일반지역)
	40~50(조건불리지역)

- 첫째는 지원 신청기업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경우로써, 총 소요비용의 50-100%를 지원하며, 농어촌공동체의 프로젝트처럼 순전히 공적인 사업인 경우에 대해서 100%를 지원함
- 둘째는 일반적인 수준의 경제적 이익이 신청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로써 총 소요비용의 30-50%를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40%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
- 셋째는 신청자의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로써 15-30% 수준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

4.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조직육성 방안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 지원을 주업무로 하며, 특히 초창기에는 이 조

직의 역할이 중요함

- 그러므로, 이 지원조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중간지원 조직은 단순한 '자문조직형태'로 간주해서는 안됨
 - 지원조직 육성을 위해서는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원조건과 방법을 일반적인 농어촌형 사회적기업과는 차별화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야 함
- '지원조직'도 일반적인 '농어촌형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원조직'에 한해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
-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지원조직의 가이드라인과 일반적인 '기업'의 가이드라인은 무엇이 공통적이고 무엇이 다른가
 - '사업'에 대한 지원방식은 '기업'과 '지원조직'을 어떻게 차등화 할 것인가 아니면 공통적인 방식으로 갈 것인가 등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지원조직의 역할
-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의 경영 및 창업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조언 및 상담
 -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의 운영과정과 개선방안에 대한 조언 및 평가
 - 지역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간의 네트워크 운영
 - 사회적 기업 및 지역문제에 관한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 기타 지역 사회적 기업에 관한 각종 경상보조 사업 시행
 - 타 지역 사회적 기업 및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
 - 예산지급 기관에게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보고서 제출
- 지원조직의 조건
- 농어촌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조직
 - 일정기간동안 해당 지역의 농업농어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 온 실적이 있는 조직
 - 구체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조직이나 기관

○ 지원방법

- 첫째, 농어촌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과는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 : 지원조직에 대한 지원방안 즉, 농어촌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지원조직(기관) 육성 방안
- 일정 지역의 농어촌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과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월(또는 분기별) 경영컨설팅 보고서를 해당 기업에 제출할 경우 (또는 경영컨설팅 보고서를 사업운영기관에 제출할 경우에 지원) '지원조직(기관)' 당 연간 일정액을 컨설팅 기관에 지급함
- 기타 농어촌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포럼이나 연찬회 개최시 총비용의 일정비율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함
- 둘째, 농어촌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과 연계 지원의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 사업계획서 작성시 반드시 지원기관과 연계해야 하는 조건 부과
- 지원조직(기관)의 직원이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고 매월 보고서를 기업과 사업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
-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및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실시하고 이를 관리하는 책임을 짐
- 농어촌 사회적기업 지원기간 동안 모니터링 (분기, 반기,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 지원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관리함
- 농어촌사회적 기업의 지원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교육, 포럼, 홍보 역할을 지원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여 서로간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다른 지역 기업 및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운영하도록 함
- 지역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사업계획서의 예산계획에 지원기관의 컨설팅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명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시행함

5. (가칭)농어촌형 사회적기업 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안

○ 필요성

-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의 경우 그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사회적 기업에 대해 단순한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 않음. 이는 현행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임.
- 유럽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된 배경에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금(fund)들이 존재하기 때문임.
- 따라서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경제활성화 기여형의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자금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중요함.

○ (가칭)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발전기금의 조성 방안

- 유럽 등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Future Builders 기금이나 캐나다 퀘벡의 연대협동조합 지원지원처럼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연방국가의 경우)가 주도하여 사회적 기업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민간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위한 벤처자금 펀드들이 조성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곤란함.
- 현실적으로 농수산식품부 혹은 지자체가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을 출연하고 여기에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라는 사회적 목적(가치)의 실현에 동참하고자 하는 민간(공기업 포함)의 광범한 참여를 유도함.
- 현행 1사1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발전 기금의 조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
- 농수산식품부는 사회적 기업 발전 기금의 조성에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기금에 대한 세금우대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기금에 대한 원금 회수 보장 등의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동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자신의 투자원금은 회수가 되어 다른 곳에 투자되기를 원함.

○(가칭)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발전기금의 운용방안

- (가칭)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발전기금의 운용을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가칭) 농어촌 사회적 투자 재단.
- (가칭) 농어촌 사회적 투자 재단은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사업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임.
- (가칭) 농어촌 사회적 투자 재단은 대출 등 금융 중개 업무 이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 경영관리, 마케팅, 회계 그리고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 등도 담당함.
- (가칭) 농어촌 사회적 투자 재단은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들의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프로젝트의 수행 뿐 아니라 연구와 정책개발 그리고 출판 및 각종 행사를 개최함. 영국의 Plunkett 재단의 운영을 벤치마킹.
- (가칭) 농어촌 사회적 투자 재단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되는 민간 조직이고 재단의 기금 뿐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금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하면 감독 기능을 수행함.

[부록 I]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에 관한 외국의 사례

1. 영국의 농촌 사회적기업 정책

1) DEFRA의 농촌 사회적기업 정책

(1) DEFRA 제3섹터 전략 개요

- DEFRA는 2008년 11월에 제3섹터 전략을 발표하면서 그 중 하나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히 하였음.
 - 현재 영국에서 내각부의 제3섹터실에서 제3섹터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범정부적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DEFRA에서도 제3섹터 정책 전략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제3섹터 기관들과의 협력이 DEFRA의 정책목표 성취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 제3섹터 전략에서 밝히고 있는 DEFRA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농촌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
 - 지속가능한 농촌 생활, 공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
 -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향상시키는 것
 -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
 - 제3섹터 기관들이 환경분야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

- DEFRA는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제3섹터 기관들과의 협력하는 방식을 다음이 6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변화시켰음.
 - 해당분야 전문기관이 제3섹터 기관들과 소통하며 이들의 의견을 잘 듣도록 노력함.
 - 제3섹터 기관들의 규모와 활동영역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들 각자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의 정책을 실시해야 함.

- 제3섹터 기관들이 DEFRA의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조하도록 함.
- 제3섹터 기관들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좀 더 나은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장려함.
- DEFRA 정책관련 기관들이 제3섹터 전략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정책을 실시하고 각종 물자를 조달하는데 있어서 좀 더 공급기관과 제3섹터 기관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절차를 개선함.

(2) DEFRA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개요

- 제3섹터 전략에서도 사회적 기업은 NGO나 다른 전국적인 단체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과 지원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주주나 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이윤을 그 기업이나 커뮤니티에 다시 재투자하는 사회적 목적을 갖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의함.
 - 즉,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면서도 사회적, 환경적인 목적을 위해 그들이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기관을 말함.
 -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DEFRA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이들이 활동하는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DEFRA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임.
 - 기본적으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행하는 환경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거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협력적 활동을 수행함.
 - 중소기업, 농촌주민 및 기타 잠재적인 소비자와 관련된 새로운 환경분야 시장에서 사회적 기업의 확대 가능성을 점검함.
-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DEFRA는 6가지의 즉시 실행계획과 한 가지의 장기계획을 제시하였음.
 - i) DEFRA의 사회적 기업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관련 계획을 실행하는 것

- ii) DEFRA의 제3섹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
- iii) 사회적 기업이 환경분야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기 위한 공동 연구의 시행
- iv) 사회적 기업을 환경정책의 프로젝트에 참여토록 하여 환경관련 성과를 발견하고 보고하도록 함.
- v) DEFRA와 영국의 사회적 기업 전도사들간의 연계를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의 독특한 요구와 특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이들이 DEFRA의 정책시행과정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vi) 제3섹터들과의 파트너십 또는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도록 함.
- vii) 농촌의 요구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인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강화하고 과급하는 농촌커뮤니티위원회와 농촌지역 행정기관의 역할을 지원하는 것.

2)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지원 Plunkett 재단의 활동 사례

(1) 개요

- Plunkett 재단은 세계적으로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 기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관임
 - 농촌주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하려는 농촌커뮤니티에 각종 지원과 네트워크 및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
 - 이 재단은 농촌지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음
 - 또한 농촌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을 제공하도록 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 현재 Plunkett 재단은 농촌지역의 생활과 삶에는 커뮤니티 소유의 상점부터 지역 식품기업, 농촌지역 교통체계, 농촌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창업자(Sir Horace Plunkett)의 원칙을 적용

하고 있음

-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해법을 추구함
- 농촌지역의 삶을 풍요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
-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조(Self-help)라는 것을 인식함

○ Plunkett 재단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

- 협동조합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기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해와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연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를 따르고 있음
-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을 주주나 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사업운영에 따른 이익을 해당 사업체나 커뮤니티의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업체”라고 정의한 영국 제 3섹터부의 정의를 따르고 있음
- 즉, 사회적 기업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기업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사회적 목적도 갖고 있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종종 사회적 소유형태로 특징지원 지기도 함
- 어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농촌 또는 도시에 입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자 또는 소비자 또는 그 회원으로써 기본적으로 농촌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활동한다면 이들을 농촌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으로 간주함

(2) Plunkett 재단의 활동 개요

- 재단은 지난 3년간 약 300여개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왔는데, 그 활동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 프로젝트 형성 및 시행
 - 연구와 정책개발
 - 출판 및 각종 행사 개최

가. 프로젝트 형성 및 시행

- 북동부 지역에서는 Enterprise4Inclusion, Strengthening Rural Communities와 같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는 농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의 효과적인 창업이나 발전을 재정적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임
- 잉글랜드 동부지방에서는 Building Communities Fund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본보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들은 각종 자산을 구입하거나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실시함
- 이외에도 재단은 농촌 커뮤니티 소유 상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농촌 커뮤니티에 자금지원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Making Local Food Work 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로컬푸드 관련 커뮤니티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토지와 주민을 연결시키는 다양한 종류의 역량강화 사업을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서 실시하고 있음

나. 연구 및 정책개발

- 농촌문제에 대한 재단의 접근방법이 적절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함
 - 설립 이래로 농촌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선도해 왔음
- 농촌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담당자 및 주창자에 대한 조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재단은 현재 내각부 제 3섹터실 및 DEFRA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 재단의 역할을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농촌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다. 출판 및 각종 행사 개최

- 재단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농촌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에 관한 최신 정보

를 제공하는 것임

- 인터넷 뉴스 서비스(The Plunkett Weekly News), 웹사이트, 연례 농촌 사회적 기업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농촌 사회적 기업들이 자신들의 당면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음

(3) Plunkett의 프로젝트 사례

-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사례 몇 가지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① 농촌 커뮤니티 상점 지원 사업 (Rural Community Shops)

- 농촌 커뮤니티 소유 상점의 신규 개설 또는 기존 상점의 운영 지원
 - 영국에는 현재 190여개의 커뮤니티 상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Plunkett의 지원에 의해 형성된 것임
 - 현재 옥스퍼드셔의 커뮤니티 소매점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농촌 상점경영 및 커뮤니티 발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음
 - 이들은 정부나 기타 기관의 위탁으로 커뮤니티 소유 상점에 관한 연구조사도 시행함
 - 개별 커뮤니티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줌
- 재단은 커뮤니티 소유 상점을 신설하거나 운영하려는 농촌 커뮤니티를 지원하는데, 초기 계획단계부터 상점의 개설과정까지의 전과정에서 상담과 조언을 하며, 그 이후 필요한 경우에 조언을 함
 - 이러한 지원과 조언은 커뮤니티 소매점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다양한 출판 정보 등을 통해서 이루어 짐

② 마을 상점 신설 지원 사업 (Village Core Programme)

- 커뮤니티 소유 상점의 신규개설이나 기존 상점을 커뮤니티 상점으로 전환하려고 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임

-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커뮤니티 상점의 확장을 지원하지는 않음
- 재단에서는 농촌 커뮤니티 상점 당 최대 2만 파운드까지 지원함
 - 농촌 커뮤니티에 재단의 지원 액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른 재원에서 매칭해야 함
 - 즉, 커뮤니티 자체 기부금 등을 통해서 조달하거나 또는 협동조합 금융지원 기관 (Co-operative and Community Finance) 등을 통해서 조달해야 함
- 이 사업의 파트너들은 다음과 같음
 - Esmee Fairbairn Foundation
 - Co-operative and Community Finance
 - 재단은 이 프로그램의 일일 운영을 책임지는 책임기관(Accountable body)이고 프로그램 감독기관(Programme Steering Group)의 지도를 받음

③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Making Local Food Work)

- 지역의 농민들과 지역 소비자들을 연결시키는 사업임
 - 이러한 로컬푸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커뮤니티를 부흥시키고, 건강과 환경을 보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Big Lottery Fund 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 재단은 지역에서 소비자를 찾는 농민, 커뮤니티와 농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조언을 제공하는 기관들을 주도하는 역할을 함
 - 이와 더불어 로컬푸드 사업(운동)을 통해 토지와 주민들 결합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시도를 함

④ 농촌커뮤니티 교통 지원사업(Rural Community Transport Programme)

- 농촌 커뮤니티 교통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 현재까지 8 개 기관의 농촌교통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각 기관은 30,000파운드의 보조금, 55,000파운드의 대출금 및 37,000파운드 가량의 기

타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⑤ 농촌 커뮤니티 역량강화 사업 (Strengthening Rural Communities)

- 농촌 주민에 대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자원재활용, 소매, 육아, 건강 및 기타 사회적 서비스 등 시장실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개선하려는 사업을 포괄하고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설 또는 기존 사회적 기업들이 할 수 있으며 최고 10,000파운드의 현금지원과 5일간의 시설지원을 시행함
 - 자금지원은 주로 경상비용 보상과 자본보조임
 - 경상비용 보상에는 임금, 시설임대료, 시설개보수 비용, 홍보자료 및 활동비용 등이 포함됨
 - 자본보조에는 신규시설, 가구 및 기타 건물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됨
 - 현재 이 사업에 따른 신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추후 사업을 위한 신청서는 접수하고 있음

- 이 사업은 두 가지 재원을 통해서 실시됨
 - The Community Initiative Fund : 자원봉사기관의 서비스 공급 지원
 - The Community Enterprise Fund : 농촌서비스 및 경제적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커뮤니티 기업의 설립 및 확장 지원

⑥ 농촌소외 퇴치 사업 (Enterprise 4 Inclusion)

- Defra에서 재정 지원하는 연구프로그램임
 - 사업적 기업의 방식이 농촌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사업임
 - ACRE, Co-operative UK, The Development Trust Association, PRIME, Voluntary Action Cumbria 와의 컨소시엄에 의해서 운영되면, Plunkett이 대표를 맡고 있음

-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적 방식을 사용하여 농촌의 사회적 소외를 해결하는 활동을 하려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임

- 해당 기관은 보조금과 함께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도 받을 수 있음
 - 현재 잉글랜드에서 98개의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았음
 - 각각의 사례연구 보고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 사업을 통해서 농촌소외에 관한 각종 데이터와 자료를 취합할 수 있음
 - 이러한 자료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분석되고 연구되고 있음

⑦ 커뮤니티 시설개선 사업 (Building Community Assets)

- 사회적 기업들이 농촌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서 행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자산의 소유권을 보증하기 위한 사업임
- 최고 15,000파운드의 연구비 : 자산구입의 타당성 연구 및 계획서 수립 연구기관에 지원
- 250,000~750,000파운드의 자본재 구입비 지원

⑧ Plunkett 모델 확산 사업 (Plunkett Franchise Models)

- 농촌지역의 농민과 거주민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알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동적인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임
- 현재 5가지의 모델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모델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재정조달, 기타 정보 및 지원획득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⑨ 농기업의 인수합병 추진 (Mergers and Aquisitions)

- 농민들에게 인수합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즉, 인수합병에 필요한 각종 법적 절차 및 사례, 정보 등을 제공함

3) Future Builders 기금의 사례

(1) Future Builders 기금의 개요

가. 형성과정

- Future builders는 2002년 9월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자원봉사 및 커뮤니티 단체의 역할에 대한 재무성의 조사보고서(Cross Cutting Review)의 제안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 2003년 가을 영국정부는 Future builders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찾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시작하였음
 - 2003년 12월에 Charity Bank, Unity Trust Bank, 전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sations)와 Northern Rock재단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운영조직으로 선정되었음
 - 그 이후 컨소시엄은 기금관리를 위한 비영리 기업으로 Future builders England Ltd.를 설립하였음

- 2007년에 영국 내각부는 제 2차 Future Builders 기금(2008-2011) 운영을 위한 공개 경쟁입찰을 시작하였음
 - 2008년 제 2차 기금관리 기관으로 Adventure Capital Fund (ACF)가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기금관리를 위해 Futurebuilders England Fund Management Limited를 형성하였음
 - 2009년 9월 17일에 Futurebuilders England Fund Management Limited의 이름이 '사회적 투자기업(The Social Investment Business)'로 변경되었으며 이 기업은 다른 사회적 기업 지원 관련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예: The Communitybuilders programme, The Modernisation fund, The Social enterprise Investment Fund)

나. 기금의 목적과 종류

- Future builders 기금은 영국에서 가장 큰 사회적 투자자인 '사회적 투자 기업(The

Social Investment Business)에 의해 관리되는 기금임.

- 이 기금의 목적은 지역 커뮤니티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3섹터 기관의 재정적인 면과 전략적인 면에서의 능력을 금융 및 전략적인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임
- 이 기금은 영국의 제3섹터 기관에 보조금과 전문적인 지원을 포함한 대출자금을 제공하는데 이들은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사업 입찰과 실행을 위해 이러한 투자가 필요함

○ Future builders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게 지속적이고 신축적이며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함

- 이들은 제3섹터 기관이 투자대출을 받거나 공공부문에서의 계약에 성공할 수 있는 올바른 재정·경영·협력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점검함

○ Future builders는 4가지 종류의 대출을 제공함.

- ① 기준 금리 6% 적용 대출
- ② 2년간 무이자 후 기준금리 복귀 대출 : 2009년 11월 30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 신규투자에 한해서 적용됨.
- ③ 5년간 2% 고정금리 적용 후 기준금리 복귀 대출 : 위 대출과 동일한 기간 동안의 신규대출에 적용됨.
- ④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에 2%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 금리의 변동은 최소 2%에서 최대 10%까지 변동하며 위 대출과 동일한 기간 동안의 신규대출에 적용됨.

○ 그리고 Future builders는 다양한 기금을 조성하여 공공 서비스 공급 사업에 제3섹터 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음

- Full Investment Fund (완전투자기금) : 추가보조금이나 전문적 지원과 함께 제공되는 기금
- Cashflow Fund (현금유동성기금) : 공공 서비스 공급사업 입찰을 위해 필요한 일시적인 자금유동성 지원 용자
- Tender Fund(입찰기금) : 소규모 단기간 제공하는 3년 무이자 융자금
- Consortia Fund(컨소시엄기금) : 대출과 전문적 지원이 결합된 융자금

- Modernisation Fund(근대화기금) : 경제불황 타개를 무이자 융자금
 - Small Organisation Tender Fund (소규모기관입찰기금)
- Future builders는 공공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특정 분야의 기술 또는 지식 개발이 필요한 신청기관에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자문 지원을 제공함.

(2) Future Builders 기금의 종류와 지원 절차

- Future Builders 기금의 활동은 크게 융자금의 제공과 기타 서비스의 제공으로 나누어짐

가. 융자금의 종류와 지원 절차

가) Full Investment Fund (완전투자기금)

(가) 개요 및 지원내용

- 완전투자기금은 대출, 보조금, 전문적 지원으로 구성되며 기금을 원하는 조직의 요구와 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행하며 투자지원금 상한선은 없고 최소 5만 파운드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최소 대출금액은 3만 파운드 (최소 투자 패키지는 5만 파운드)
 - 대출기간은 기관의 상황에 따라 상이함.
 - 조기 상환에 대한 벌금은 부과하지 않음
 - 수탁자에겐 대출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일어나지 않음
 - 상환 시기나 금액은 기관의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출금은 자본비용이나 개발자금으로 충당되게 되며, 금리는 4가지 각기 다른 금리 옵션을 모두 적용할 수 있음.
 - 보조금 요소는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립하는 동안 일정한 수익기금으로서 사용될 수 있음.
 - 전문적 지원은 Future builders의 투자 담당관으로부터 제공되며 이들은 세부적인 프

로젝트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컨설턴트와 함께 일함.

(나) 신청 자격 및 조건

- 완전투자기금에 대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음.
 - 제3섹터 기관으로서 공공 부문 계약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기관
 - 공공 기관에서 신규 또는 지속적인 소득을 확보하는데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기관
 - 현재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이익의 최소 51%가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공공 기금으로부터 얻어지고 있는 기관
 - 대출을 받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 기관
 -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일반적인 은행으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최소 5만 파운드가 필요한 기관
 - 영국 거주민에서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특별한 신청서 양식은 없으며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서 신청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음.

- 신청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기관의 형성과정 및 대출받을 의지와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회계장부 및 과거 재정기록 등)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계약사항 및 향후 입찰계획 사업에 대한 설명
 - 용자가 필요한 이유와 사용처 내역
 - 용자금 상환계획 설명

나) Cashflow Fund (현금유동성 기금)

(가) 개요 및 지원내용

- 이 기금은 총 4백만 파운드의 기금을 갖고 있으며 최대 2년의 단기대출을 공공서비

스 사업 대한 입찰과 실행에 자금이 필요한 기관에 제공함.

- 이 기금은 한 기관이 공공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면서 미처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유동성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단기대출, 단기융자 및 당좌대월보증금을 제공하는데, 유동성을 위한 지원이거나 또는 Future builders 완전투자의 일환으로 제공되기도 함.
- 단기대출에 제공되는 최소금액은 5만 파운드이며, 기관의 요구 및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대출 패키지를 제공함.

○ 단기대출과 단기융자

- 단기융자는 자금의 단기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3~18개월 기간동안 대출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 잔고유지 용자

- 재정잔고를 유지하기 위한 용자로서 사회적 기업이 공공부문 사업에 입찰할 경우 일정한 수준의 대차대조표 잔액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임.
- 별도의 자금을 해당 사회적 기업과 Future builders 공동명의로 은행계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음.

○ 당좌차월보장

- 당좌차월보장은 은행이 해당 사회적 기업에게 당좌차월 제도를 적용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금액만큼 은행에 보장해 주는 것임.

○ 현금유동성 기금

- 단기대출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계약상황에 따른 현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임
- 금리는 앞서 본 것과 같이 4가지 형태가 있음.

(나) 신청자격 및 조건

- 신청자격 및 조건은 완전투자기금의 경우와 동일함.

다) Tender Fund (입찰 기금)

- 입찰기금은 1백만 파운드의 기금으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3천 파운드와 5만 파운드 사이에선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여 사회적 기업이 특정 공공부문 사업에 입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금임.
- 이 기금의 대출금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소요되어야 함.
 - 법률 비용
 - 조달 전문가로부터 조언
 - 금융 전문 지식
 - 입찰 직원 비용 혹은 기타의 용도
- 신청자격과 조건은 다른 기금들과 동일함.

라) Consortia Fund (컨소시엄 기금)

- 컨소시엄은 두 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으로 입찰해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컨소시엄 기금은 컨소시엄 그룹이 공동으로 목표하는 공공 서비스 계약체결을 위해 5만 파운드 이상의 대출과 전문적인 지원을 결합해서 지원하는 것임.
 - 이 기금은 완전투자기금의 형태와 비슷하며 최소 투자패키지는 5만 파운드 이상으로 컨소시엄의 요구과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됨.
- 신청자격
 - 신청기관은 컨소시엄을 관리하기위해 만든 중심조직이나 개별 독립체이어야 함.
 - 컨소시엄은 구체적인 계약에 입각해야 하며 일정한 조직구성을 갖추어야 함.
 - 컨소시엄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입찰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 그 이외의 조건은 다른 기금의 신청자격과 동일함.

- 다른 기금들과는 달리 이 기금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선정과정을 진행함.
 - 기관의 관련 실적
 - 사업방식의 영향력
 - 현실적이고 공정한 서비스 수준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각 회원의 헌신
 - 주요 관련자들의 개별적인 능력

- Future Builders 기금의 지원은 모두 전문적인 컨설팅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자문함.
 - 구체적인 계약 컨소시엄의 구조 결정
 - 준거법 및 컨소시엄을 위한 법률문서 마무리
 - 추가 파트너 확인
 - 강한 입찰준비
 - 부동산 및 법적조언 등

마) Modernisation Fund (근대화 기금)

- 근대화 기금은 경기침체의 영향 하에도 제 3섹터 조직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3만 파운드와 50만 파운드 사이에서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것임.
 - 이 기금은 대부분 대출로 운영되겠지만 보조금 형태로도 지원이 가능하며, 5년간 무이자 대출을 제공함.

- 이 기금은 특히 제 3섹터 기관인 자원봉사자, 자선단체, 사회적 기업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즉, 비영리 기관들이 경기침체에도 미래를 위한 프로세스 및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이 기금은 2010년 3월 31일에 상품이 폐쇄되기 때문에 2010년 1월 15일까지 신청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함

- 기금의 사용처

-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제 3섹터 기관과의 협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
- 다른 조직과의 합병비용
- 신규직원채용
- 새로운 프로세스와 시스템 소개
- 기존 직원의 재교육 및 능력향상

바) Small Organisation Tender Fund (소규모 조직 입찰 기금)

- 소규모 조직 입찰 기금은 소규모 제 3섹터 기관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특정 공공부문 사업에 대한 소액의 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기금임.
 - 보조금은 계약의 10%를 최대 투자비용으로 삼고, 그 금액은 1만5천 파운드를 넘지 않아야 함.
 - 그러나 이 기금은 이미 종료되었음.

-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음.
 - 최소 3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공공 서비스 사업에 대한 입찰 준비를 하고 있는 기관
 - 입찰에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관
 - 작년 회계연도에 25만 파운드 이하의 총매출액을 가진 제 3섹터 기관
 - 설립한지 최소 1년이 넘은 기관
 -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기관
 -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영국 거주민이어야 함.
 - 지난 3년간 공공부문으로부터 13만 파운드 이상의 지원금을 받지 않은 기관
 - 지난 24개월 간 소규모 조직 입찰 기금을 받지 않은 기관

- 기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음
 -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한 후, 원하는 기금을 선택하고, 각종 서류(대출 신청서, 조직에 대한 연간 관리내역, 투자비용내역, 잠재적 구매자의 연락처, 고객의 조직구성과 대출에 대한 의지, 입찰계획의 세부내역 등)를 준비함.
 - 인터넷에 있는 제출문 양식(조직이름, 지역,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문의내용, 투자

규모)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문의

나) Future Builders의 기타 활동

(가) 자금 제공자 포럼 운영

- Future builders 자금 제공자들의 포럼은 제3섹터 기관들을 위한 공동 자금지원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임.
 - 예를 들어 Future builders에 지원금을 신청한 사회적 기업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동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면, 이런 자금제공자 포럼에서는 이 사회적 기업의 사업계획 중 어떤 부분이 상업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줌.
 - 즉, 이 포럼은 제3섹터 기관들이 공공사업 신청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다양한 분야의 상업적 또는 비영리적 투자자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임.
 - 실제 이 포럼의 관련 심사위원회에서 제3섹터 기관들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논의하여 공동투자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이것을 토대로 Future Builders에서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시행하도록 권고함.

- 결국, 이 포럼은 일반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한 사회적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형성된 것임.
 - 이는 실제 일반 상업적 투자자뿐만 아니라 Future Builders 에서도 부적합 신청자가 누구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 Unity Trust Bank, Kingdom Bank, Bridges, Charity Bank, Co-op Bank, Venturesome RBS/NatWest, Triodos Bank, Co-operative & Community Finance Fund, Barclays Bank, Big Invest, Unlimited 등.

(나) 시범 컨소시엄의 운영

- 향후 많은 공공서비스 공급 사업에 대한 입찰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제로 많은 제3섹터 기관들은 이런 사업에 입찰하거나 운영할 능력 부족한 것이 사실임.
 -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Future Builders는 사업계획서 작성, 재정조달 방안 마련, 협상능력 및 운영방안 마련 등 실제 사업신청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지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자원들을 이용하는 새로운 시범적인 컨소시엄을 운영함.
- Future Builders의 기업실장의 주도로 이 시범 컨소시엄은 직접 사업신청과정 전문가 및 공공서비스 공급 경험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제3섹터 기관들로 구성됨.
 - 이것을 통해서 컨소시엄 참여기관들이 재정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공공서비스 사업신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고자 함.

(다) 제3섹터 지원기관 목록 제공

-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제3섹터 기관들과의 협력 또는 통합을 추진하려는 지원기관들의 목록을 제공하여 관련 기관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라) 기업 지원

- Future builders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즉, 사업 시행 초기단계부터 전담직원을 할당하여 특정 사회적 기업의 프로젝트 개발, 평가, 투자유치 등의 단계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좀 더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특별 팀을 편성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함.
- 이들이 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금유동성의 개발 및 분석, 사업 계획, 시장 조사 및 마케팅, 부동산 취득, 기획 및 개발, 법률 구조와 계약, 인적 자원 및 회원 모집, 멘토링 및 지원 등임.
 - 이외에도 각종 세제 및 협상기술에 관한 자문도 제공함.

(마) 일자리 창출 기금 신청을 위한 컨소시엄 운영

- 영국 중앙부처 중 하나인 고용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에서는 10억 파운드 예산으로 장기적인 청년층 실업자들에게 1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고용연금부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들이 신청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특히 지자체, 사회적 기업 및 기타 비영리 단체들의 파트너십에 근거한 신청을 선호하고 있음.
- 따라서 Future Builders에서는 유사한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들간의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이 기금에 신청하여 예산 지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2. 일본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의의와 과제¹⁷⁾

1)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등장배경과 특징

(1)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등장배경과 의미

-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business)라는 용어는 1994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일본식 영어 표현임.
- 당시 일본은 버블경제의 붕괴 후 대도시 중심부에 이가 빠진 것처럼 빈 토지가 생겨나는 이른바 일본형 이너시티(inner-city)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사회와 커뮤니티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등장하였음

17) 細内信孝(2002),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 中央大學出版部. 細内信孝 編著(2003), 『地域を元氣にする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를 참조하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다른 문헌 및 사례들을 참조하여 작성함.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는 지역기업 혹은 주민 주도의 지역활성화사업을 지칭함

-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결합어로서 수익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처음부터 현금수입을 바라고 시작하는 것은 아님. 왜냐하면 지역의 문제를 수익사업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물과 극복하기 힘든 장벽이 있기 때문임. 이러한 경우는 지역 내에서의 공동체적 활동 (community-work), 예컨대 지역 속에서 주민과 함께 활동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역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뜻만 있다면 혼자서도 가능한 것들이 있음
 - 예를 들면 병석에 누워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매주 토요일, 도시락을 배달하는 배식서비스를 자원봉사로 시작하는 등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이러한 선의의 마음자세로 지역의 당면문제에 대응하면서 그것을 지속성, 신뢰성 있는 활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 그러므로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자기 지역을 건강하게 하는 주민 주도의 지역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지금까지 대기업이나 행정이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와 달리,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당면과제, 또는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체계적인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임
 -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책임감도 필요하고 계속성도 요구된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는 사업을 커뮤니티비즈니스라고 함

(2)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특징

-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일반적인 기업과 크게 다른 점은 지역이나 사람을 중시하고, 의지를 갖고 의의나 의미를 추구해 나간다는 것임. 물론, 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기업은 영리추구를 제1의 목표로 함에 비해 커뮤니티비즈니스는 그 사업의 의의나 의미를 행동의 가치기준으로 한다는 것 예를 들면, 토요일에 도시락을 만들어서 혼자 지내고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집에 갖고 갔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대단히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음. 이러한 요소가 비즈니스로서의 채산성을 갖추면서 지역의 커뮤니티 워크나 커뮤니티비즈니스로 전개되어 나갈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 이러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 <표 6-1>임
- 첫째, 커뮤니티비즈니스도 하나의 ‘사업’인 이상 계속성을 확보하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조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둘째,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서로 간에 얼굴이 보이는(face-to-face) 속에서 성립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밀착형 비즈니스임. 그리고 반드시 이익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적정규모, 적정이익의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전개한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임
- 셋째, 영리를 제1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적 비즈니스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중간영역에 있는 비즈니스라는 점임. 영리추구를 최대의목표로 하는 기업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의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 무의미한 것이라는 이분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음. 예컨대 지역에 뿌리를 둔 따뜻하고 얼굴이 보이는 관계 속에서 직업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없으며,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때문에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얼굴이 보이는 관계 속에서 적정이윤, 적정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의 사업(business)으로 영위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함

<표 6-1>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특징

- 주민 주도의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 반드시 이익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적정규모, 적정이익의 비즈니스
- 영리를 위주로 하는 기업적 비즈니스와 자원봉사활동 간의 중간영역의 비즈니스
- 세계적(global)인 시각을 가지고 행동은 지역적(local)으로 전개하는 개방형 비즈니스

- 넷째, 넓은 시야(global), 예컨대 국제적인 관점에서 지역사업을 생각하고 있으며, 행동은 지역(local)에 바탕을 두는 개방형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임. 예를 들면, 경영정보를 관계자에게 개방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상호 신뢰감을 강화하고 일체감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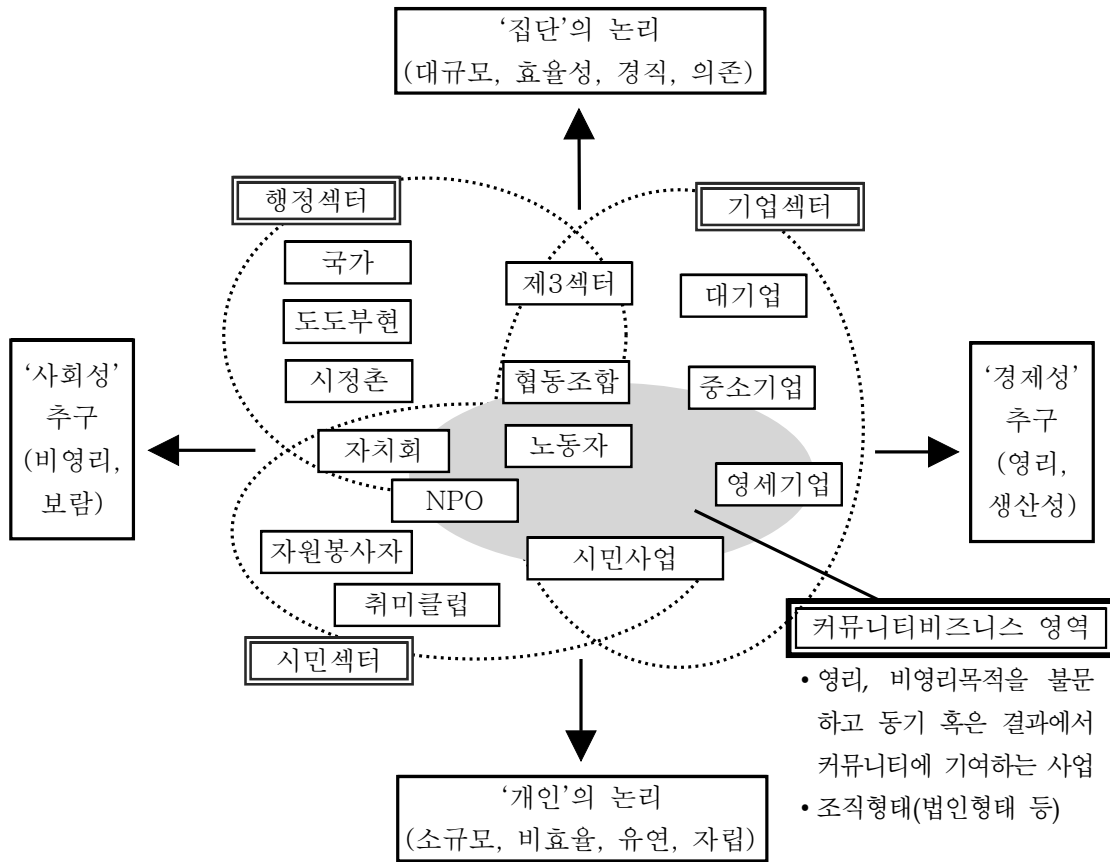
2)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영역과 효과

(1)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영역

-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생활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테마로 복지, 환경, 정보, 관광·교통, 식품가공, 지역가꾸기, 상가의 활성화, 전통공예, 안전, 금융 등 10여 가지를 들 수 있으며, 서로의 얼굴이 보이는 관계 하에서 지역커뮤니티 레벨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일으켜(起業) 나갈 수 있음. 예를 들면 중고령층의 샐러리맨이 대기업으로부터 '퇴직'을 맞은 후 고민하다가 지역에서 무리하지 않고 상호신뢰와 얼굴을 알 수 있는 관계 하에서 식당과 같은 소규모의 비즈니스를 창업함으로써 지역커뮤니티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고도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한층 효율화가 우선됨으로써 지역커뮤니티와 경제가 분리되어, 베드타운이 대도시의 근교에 만들어 졌다. 고도성장기에는 대기업에 취직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는 고용형태, 라이프스타일, 근무방식이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가치관이나 사회구조는 세계적인 흐름과 달라 일본만이 그런 형태의 폐쇄적인 사회를 지속해 나가기 어렵게 되었다. 가치관이나 사회구조가 무너지는 속에서 기업으로부터 퇴직당한 사람은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것을 스스로 찾아나서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 전원이 자립하기는 쉽지 않았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NPO 트레이닝센터」의 추정에 따르면,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기에 합당한 인재는 퇴직자 10명 중에 4명 정도라고 함

-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영역은 <그림 6-1>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사회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경제성을 지향하는 분야들임
 - 이 영역으로 크게 중시되는 분야는 전통적인 중소기업, 시민사업, NPO, 협동조합, 자치회의 일부이다. 물론, 최근에는 기업들 사이에도 지역커뮤니티의 일부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음. 한편, 시민운동도 이제까지의 저항적인 고발형(告發型)으로부터 NPO나 시민사업 등 스스로의 주장을 사업을 통해 반영해 보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커뮤니티비즈니스는 <표 6-2>에서 보는 것처럼 종래의 비즈니스와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대기업의 경우는 이해관계가 단순하고 단기간에 승부가 결정되며, 마케팅을 대규모로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이 특징임. 사업의 컨셉(concept)은 경쟁적이고 이익 지향적이며 효율성과 생산성이 주요한 성과로 간주됨

<그림 6-1>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영역



- 이에 비해,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이해관계는 지역커뮤니티 내의 복지문제, 교육문제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복잡하고 장기적인 성격을 지님. 마케팅은 소규모로 대단히 취약하며, 사업의 컨셉은 지역의 공생을 중시함. 성과는 효율이나 생산성이 아닌 그 사업의 취지나 의의를 추구함. 가령, 복지분야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배식서비스를 하는 경우를 보자. 매일 도시락 150개를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덕에 배달하는 사람이 '병석에 누워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덕에 배달을 가면 환하게 웃으며 말해주는 것이 즐겁다. 그러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일할 마음이 생긴다'고 말함
-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사업적 측면에서 적자가 계속된다면 존속될 수 없음. 그러므로 커뮤니티비즈니스 역시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사업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갖추어 가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

<표 6-2>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관점

	일반적 비즈니스 관점	커뮤니티비즈니스 관점
이해관계	단순, 단기간	복잡, 장기간
마케팅	대규모, 강력함	소규모, 취약함
사업컨셉	경쟁, 이익지향	공생, 풀뿌리적
성과	효율, 생산성	보람, 취지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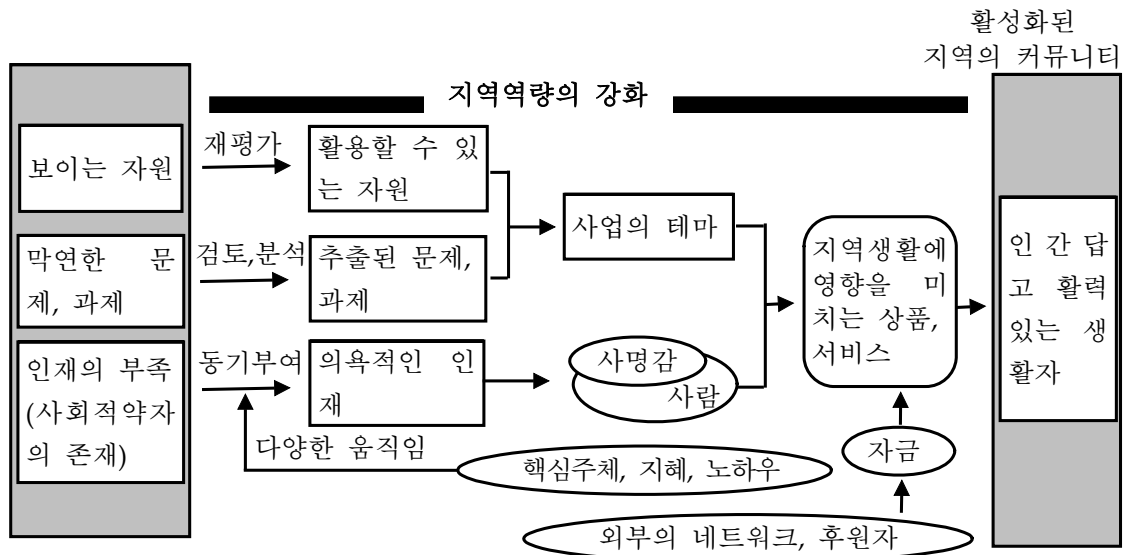
-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목적은 주민 주도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도입해 커뮤니티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업체이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의 일본사회는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 기업은 오로지 영리추구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이었고 그 중간적인 영역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그 중간적인 영역에 위치함
- 일반적인 비즈니스에서는 매출극대화나 이익률제고라는 관점이 중시됨. 물론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경우에도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요소가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비즈니스의 사회적 위상이나 지역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임. 때문에 종래의 영리추구형 비즈니스와는 달리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에 의해 지지되는 경우가 많고, 주체의 대부분은 지역커뮤니티에서 생활하는 주민들로 구성됨. 지역커뮤니티에 이해관계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자금이 순환되며, 지역커뮤니티에 대한 책임감이나 당사자의식이 양성되는 것임
- 커뮤니티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카테고리 분류해 본다면 첫째, 후원자(patron)가 있는데, 이들은 커뮤니티비즈니스에 기부하는 사람들임. 둘째, 파트너(partner)로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예컨대, 투자나 출자를 하는 사람임. 셋째, 응원군(supporters)으로서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함. 넷째, 재원조달자(financer)로서 토지라든가 건물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거나 나아가 사업성을 평가해 자금의 차입여부를 결정하는 본래적 의미의 뱅커(banker)인데,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성공여부가 이러한 참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2)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사업화 절차

-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커뮤니티 속에서 다양한 '사업'이 구상되고 지역주민의 취업을 통해서 적절한 정도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자립적인 생활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나아가 다양화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토대로 재화·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함
 -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따뜻하고 인간적인 배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 고령자나 어린이 주부 등 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총칭함
 -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배경에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불만의 원인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출발임
 - 그러나 활동만으로는 신뢰성이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현재 상황에서는 법인격(法人格)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지역커뮤니티 문제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의 담보가 불가결한 요소임. 따라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커뮤니티비즈니스의 관점을 도입하고, 생활과 비즈니스를 결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건강한 지역커뮤니티 만들기'란 주민 자신이 주체적으로 지역커뮤니티의 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으로서 행정이나 기업은 그러한 주민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즉, '지역커뮤니티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발상에서 지역의 문제를 추출해 내고, 산업진흥, 복지대책 등의 개별적인 '활성화'나 '문제해결'이 아닌 '지역커뮤니티 전체'로서의 문제·과제를 인식하고, 지역커뮤니티 고유의 요구(needs)에 대응하는 활동이 필요함. 예를 들면, 대도시 주변의 뉴타운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되어 복지수요가 급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개별적인 현상을 토대로 '고령화대책'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지역커뮤니티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그림 6-2>는 일반적인 지역커뮤니티가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해 활성화된 지역커

뮤니티로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단순히 지역내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고, 막연한 문제나 과제를 구체적인 발전과제로 도출해서 이를 종합하여 사업테마를 구상함

<그림 6-2>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사업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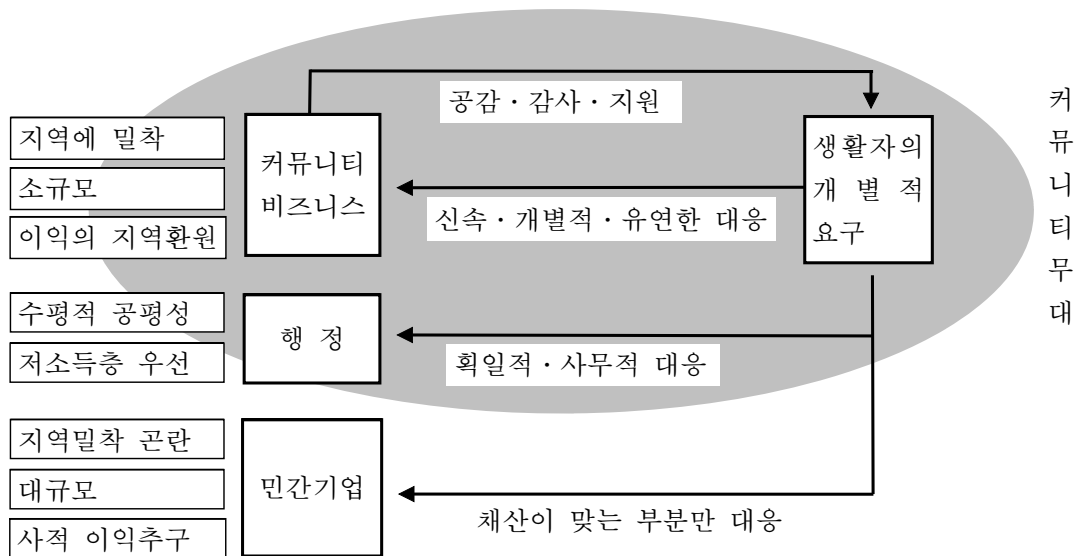
참고 : ○ 커뮤니티비즈니스를 구성하는 요소

- 이때, 지역커뮤니티가 사회적 약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의욕적인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내의 생활자 중에서 사명감이 있거나 혹은 전문성과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사업테마를 도출하고 '지역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추진해 나가는 것임
-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의 네트워크나 후원자는 자금의 지원이나 생산물의 구매 등을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며, 지역의 잠재력도 증대되어 나가는 것임
-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 예컨대, 커뮤니티활동이 소규모의 비즈니스로 이어지고 발전해서 사업성을 갖기 시작하면 커뮤니티비즈니스로 됨. 커뮤니티 활동의 모든 것이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문제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도 사업성의 확보가 필요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자의 요구와 비즈니스를 결합한 커뮤니티비즈니스적인 관점이

필요함

- <그림 6-3>에서 보면, 민간기업의 경우는 생활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하여 채산성이 맞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익은 많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지역에 밀착하기 어렵다. 한편, 행정은 수평적 공평성과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생활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하여 획일적·사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
- 이에 반해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생활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의 지역밀착적인 사업을 일으켜(起業),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생활자를 지원함. 그러므로 이러한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일반적으로 주민들간에 '협동적이고 상호적인 결합(co-operative, mutual union)'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음

<그림 6-3> 생활자 요구(needs)와 커뮤니티비즈니스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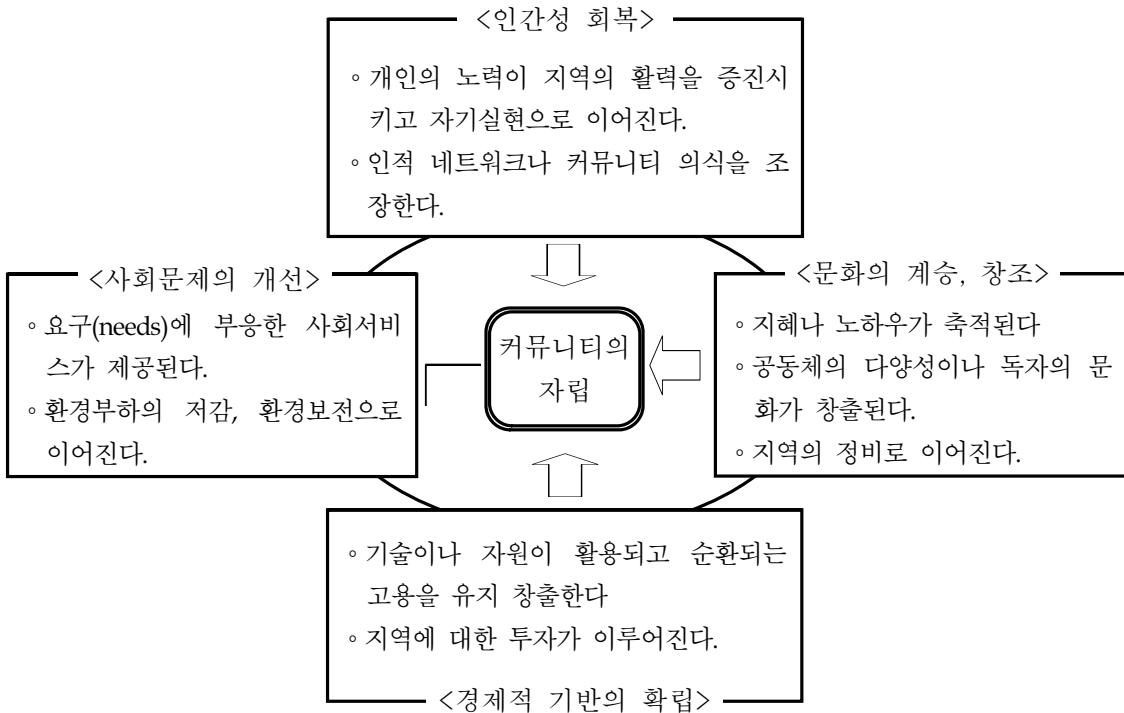


(3)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효과

-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지역에서 시작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를 정리한 것이 <그림 6-4>임
- 여기서 보면 첫째의 효과는 인간성 회복을 들 수 있는데, 개인이 무언가 의미있는

- 일을 함으로써 하는 일이 즐겁고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됨
- 둘째,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기여함. 구로다구(黒田區)에는 소메야(染谷)상회라고 하는 폐유회수업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레스토랑이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를 리사이클해서 한 번 더 자동차의 오일로 활용하고 있음. 이처럼 환경부하를 줄이고 지역에서 재활용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일을 비즈니스화하는 것도 커뮤니티비즈니스로서 중요함

<그림 6-4>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기대 효과



- 셋째, 생활문화의 계승과 창조임. 지역공동체가 취약해지게 되면 축제에서 신주(神主)를 담당하거나 마차(馬車)를 끌 수 있는 젊은이가 없어지고 많은 지역축제도 열리기 어려워질 것임. 커뮤니티비즈니스는 문화의 계승이나 창조와 동시에 지혜나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축적해 가는 효과도 갖고 있으며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다양성이나 독자적인 생활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함
- 넷째, 경제적 기반의 확립임.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돈이 조금씩이라도 돌기 시작하며, 서서히 지역 내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게 됨. 지역사회에 좋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조직이 성립할 수 없으며

적자조직으로서는 활동의 계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더라도 최저한의 비즈니스로서 예컨대 조직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익을 올려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3)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실천사례

- 커뮤니티비즈니스는 당면한 지역문제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주민의 '마음 속에 숨겨진 불만'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저 집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누워서 밥도 챙겨먹지 못한다고 할 때, 어떡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러한 '혼자만의 중얼거림(=불만)'이 행동의 출발이 된다는 것임
- 처음에는 한 사람의 자원봉사적인 활동으로부터 시작지만, '왜 곤란을 겪게 된 것일까'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되고, 그 물결의 파장이 마치 연못위에 돌을 던진 것처럼 점차로 확산되어 나가게 됨
-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이처럼 한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시민기업가(市民起業者)' 타입도 있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 팀을 조직해서 지역을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7인의 유지(七人の侍)' 타입도 있음

(1) 나가노현 오가와무라의 사례

- 나가노현의 과소지역인 오가와무라에서는 '오가와무라에는 산업다운 것이 없지만, 모두가 모여서 무언가 마을가꾸기를 해 봅시다'라는 주장이 나타났고, 이렇게 해서 '오가와무라노쇼(小川の庄)'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향토식품인 '오야키(おやき : 두부구이)'를 나가노현 내의 도시지역에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함. 일하는 사람은 지역에 살고 있는 60세 이상의 할머니들로서 과소지역, 고령자의 지역에서 지역사람들에 의한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만들어진(起業) 것임
- 오가와무라노쇼에서는 지금까지의 고도산업사회에서 대접받기 어려운 사람이나 원재료, 건물 등을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이끌어가고 있음. 예를 들면, 60세 이상의 할머니가 100여명의 직원 중 약 80%에 달함

- 각 집락마다에 '工房'이라는 이름의 오야키회장을 만들고,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걸어서 15분 이내에 통근하는 이른바 직주인접(職住隣接) 개념의 일자리를 만들었음. 이제까지의 고도산업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 한가운데 대규모 오야키회장을 만들고 통근버스로 종업원들을 실어 나르는 대공장의 효율을 가장 중시하였을 것임
 - 그러나 이곳의 '오야키회장'은 60세 이상의 할머니들이 자기가 걸어서 통근할 수 있는 장소에 '공방'이라는 이름의 작은 회장을 만들고, 소수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으며, 그 시설 자체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잠실(蚕室 : 누에를 치는 건물)이나 농협의 유희시설을 활용하고 있음
- 이처럼 이제까지의 고도산업사회에서는 낙오자 취급을 받았던 퇴출된 사람이나 건물을 잘 결합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곳이 '오가와무라노쇼'임
- 이 회사는 자기들의 마을에서 무엇인가를 해 보고자 하는 7명의 유지(지역출신의 향토애를 가진 사람들이 중심)가 모여서 시작된,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좋은 사례라고 할 있음

(2) 스미다리 리버사이드 넷

- '스미다리 리버사이드 넷(すみだりリバーサイドネット)'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의 커뮤니티 네트워크 만들기를 전개하고 있는 회사임. 이 회사는 커뮤니티비즈니스에 관한 전문연구자들의 연구 및 실천조직인 '커뮤니티비즈니스 네트워크'와 함께 토오쿄오에 공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이 회사의 구성원은 토오쿄오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람들로서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회사임
- 이 회사의 이념은 '競争'에 대응한 '協創'으로서, 지역커뮤니티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즉, 경쟁은 분명히 경제원리로서는 우수한 장점이 많지만, 반드시 좋은 점만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는 것, 특히 최근에 와서는 소수의 승자를 만들기 위해 다수의 패자를 양산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전제 위에서 '協創'은 大競争시대 속에서 또 하

나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경쟁에 의해 다수의 폐자를 만들어서 지역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협력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 즉, 커뮤니티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자는 의미인 것임

- 이 회사에서는 토요일의 '커뮤니티비즈니스 네트워크'와 함께 컴퓨터를 활용한 사업인 'SOHO for Mothers'를 어머니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PTA라고 하는 어머니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홈페이지를 작성해 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1998년 4월에 동(同)사무소에서 홈페이지작성에 관한 강습회가 처음 열렸으며 이제 까지 약 4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 갔음. 물론, 이 강습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만엔의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주로 과거 워드프로세스 정도의 능력을 갖춘 지역의 주부들이 참여하였음
- 이들은 강습회를 마친 후 스스로의 희망을 모아서 홈페이지를 작성해주는 사업을 시작하였음. 홈페이지제작 기술교육에서부터 홈페이지 주문 제작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시스템화한 SFM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지역의 범인회에 속하는 주점이나 제과점, 지자체(町)의 홈페이지를 주문받아 제작하거나 지역의 인터넷판 소식지를 만드는 일들을 진행하였다. 물론, 함께하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 네트워크'의 홈페이지도 이 어머니들이 만들었다. 이들이 만든 홈페이지는 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어 이들의 능력은 전문가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이러한 어머니들의 홈페이지 주문제작사업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건강한 발전에 직접 참여하면서 조금씩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어머니가 가정이나 지역의 주역이기 때문임
-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활동이나 사업'에는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起業)의 목적, 비즈니스의 목적을 분명히 한 위에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 또 자기실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 등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이제까지처럼 어딘가에 종속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일하는 것 즉, 일하는 방식(work style)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현재 산업사회는 원래 선택의 기회가 다양한 것이 특징임. 그러므로 다양성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대기업이 있다면 시민들에 의한 '풀뿌리 성격의 커뮤니티비즈니스'도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음. 개인의 생업을 만들어 가는 경제기반의 바람직한 모습은 대기업에 근무함으로써도 확립될 수 있고, 지역에 뿌리를 둔 커뮤니티비즈니스에 의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 양자가 지역 속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3) 일본 사회적기업의 개척자, (주)대지를 지키는 모임

- (주)대지를 지키는 모임은 일본에서 사회적기업을 개척한 조직으로 유명하며, 특히 운동(사명)과 사업(경제)의 통일, 이념과 방침의 명확화, 물품과 돈의 거래 외 커뮤니케이션의 충실화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조직.

<활동 경위와 배경>

- 농약과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고발한 『복합오염』이라는 책이 주목 받던 1970년대에, 학생운동과 연계하여 효율화와 공업화를 추구하는 사회에 의문을 가지고 있던 후지타 가즈요시(藤田和芳) 씨는 무농약 채소 재배에 노력하고 있던 이바라키 현(茨城縣)의 연구자들과 농민들을 만남. 이를 계기로 □□안전한 채소를 공급하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장터를 열었던 데서 「(주)대지를 지키는 모임」이 시작되었음
- □□벌레가 먹고 선별이 안 된 채소가 비싸면 팔릴 리 없다□□는 상식을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가? 농약에 의지하지 않는 농업을 넓히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의 기술보급과 기존 시장과는 다른 물류체계는 물론, 소비단계에서도 □□밭의 사정에 맞춰서 먹는다□□는 인식을 넓힐 필요가 있었음. 정신적 운동만으로는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함. 1975년에 설립된 「(주)대지를 지키는 모임」은, 초대회장에 가수인 가토 도키코(加藤登紀子) 씨와 옥중 결혼한전 전학련(全日本學生自治會總連合) 위원장 후지모토 도시오(藤本敏夫) 씨가 역임. 「대지모임」의 활동

은 마스크를 타게 되었고, 무농약 채소 나누기 행사 등을 통해 회원을 늘려갔음

- 설립 후 2년간 매출이 2000만 엔을 넘었을 때 조직형태에 대하여 검토하게 된다. 그 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조직형태는 소비자 입장에 치우친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고, □□주식회사□□ 형태를 선택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함께 주주가 되자고 호소하였음. 이렇게 하여 운동을 담당하는 임의단체인 「대지를 지키는 모임」과 사업체로서의 (주)대지(현 주식회사 대지를 지키는 모임)가 만들어졌음. (주)대지에서는 그룹별 공동구매와 함께 개인별 구매방식도 도입. 이어서 도매회사도 설립하여 수퍼마켓과 타 단체에 대한 유통망도 확보. 현재 회사 매출은 160억 엔까지 늘어났음. 참여자들을 보면, 생산자 회원 2,500명, 소비자 회원 90,000명, 주주 23,000명에 이룸. 아울러 도쿄에서도 땅값이 가장 높은 곳에서 레스토랑을 직영하는 등 NPO/NGO 단체 중에서도 보기 드문 사업경영을 하고 있으며, 매출 증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는 1차 산업을 유지하면서 비즈니스와 운동을 통일시켜온 결과.

<주요 활동내용>

- 연회비 1,000엔이라도 90,000명이 모이면 큰 활동자금이 됨. 운동체로서의 「대지를 지키는 모임」은, 학교급식에서 안전한 식재료를 도입하는 운동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기 보관 우유 대신 저온살균우유의 개발, 국산 애용을 위한 「THAT'S 국산」운동,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Non-GMO) 사료의 보급, 식품의 수송거리에 따른 환경 부하 정도를 표시하는 푸드마일리지(Food Mileage)캠페인 등 다양한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업계, 언론계, 정부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음. 원자력발전과 방사선조사식품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일본의 숲과 쌀을 지키는 활동, 그리고 팔레스타인 농민 지원활동 등 여러 활동도 하고 있음. 수많은 사람들이 연대할 수 있는 활동으로 추진한 「100만 명의 촛불켜기운동」이라는 캠페인은, 하룻밤 밤에 2시간 동안 전깃불을 끄고 □□고즈넉한 밤을 즐기자□□는 것으로, 국내에서 700만 명 이상이 참가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운동. 원자력발전 반대 운동 과정에서 조직해낸 운동이지만, 고즈넉한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 먹을거리, 환경에 대해서 우리 모두 생각해보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음. 「대지를 지키는 모임」은 생활하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활동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에 취직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많아 채용 시 경쟁률이 100:1이나 됨

- 환경NGO라는 과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대지를 지키는 모임」이 제안해온 활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역과 업종, 입장을 초월해 연대하여 큰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 NGO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와 연관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여, 최근에는 회사명도 「(주)대지를 지키는 모임」으로 변경. 기업과 운동체의 통일 브랜드를 통해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일본의 국산농산물에서 유기채소의 점유율은 아직 0.2%도 되지 않는 상황. 유럽의 6%대 수준에 근접하려면 정치가 아니라 소비자의 의식을 바꾼다는 것이 「대지」의 전략. 최근 들어 세계적인 원자재 및 연료 가격의 급등, 농산물 등의 수입자유화로 인해 1차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려는 노력들은 점점 더 주목 받게 될 것임.

<활동 성격 분석>

- 「대지를 지키는 모임」의 활동은 운동과 사업을 양립시켜온 데서 그 주요 특징을 찾을 수 있음. 유기채소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증가하지 않으면 농가도 유기농업에 힘쓸 수 없다는 발상에서, 처음부터 정치가 아니라 경제와 운동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념과 방침을 명확히 하여 주주와 회원들에게도 운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홍보와 회의에서 의사소통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물품과 돈의 거래 외에 커뮤니케이션이 「대지를 지키는 모임」 활동의 특징.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이해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 계속 발생하고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에 응답하는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이들 활동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깊어짐. 이러한 자유로운 활동과 조직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당초부터 외부자본과 행정의 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있음
- 지금까지는 자금회전이 어려울 경우 농가 지급을 연기한 적도 있었지만, 이 또한 한 집 한 집 직접적으로 맺어온 관계를 바탕으로 □□얼굴 있는 관계□□가 가능했기 때문. 한편으로, 생산농가와 □□대지를 지키는 모임□□이 서로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농가와 거래도 전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정해 놓고 있음.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조건이 있지만, 경영은 각 생산자의 방침과 지역 사정을 존중하여 맡김

- 이러한 동등성과 자주성을 중시하는 자세는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 직원은 회사 일을 하면서 「대지를 지키는 모임」의 운동에 자주적으로 개입. 운동부문의 상근자도 두고 있지만, 많은 직원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동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로써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업무활동으로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활동하며 회원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것. 직장조직도 팀제이며, 직위명이 아닌 이름을 부르며 함. 또한 년 2회 직원합숙을 가져 운영을 논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총회도 위임장 출석은 인정하지 않는 등 조직의 형제화와 관료제화를 방지하는데 힘쓰고 있음. 주주, 회원, 직원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도 요구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동등한 운동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예를 들면 소비 측이 주문하는 상품과 생산된 상품 사이에 간극이 생겨, 소비자의 희망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소비자 희망만을 중시하면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침. 「대지를 지키는 모임」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에게도 상황을 이해시켜 해결방책을 함께 생각하도록 함. 식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현상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소재라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상품중개업과 다른 점이며,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 이러한 운영 방식을 토대로 농약에 의존하지 않는 채소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 환경과 가정에 공급하는 물류체계, 나아가 생산·소비의 입장을 초월한 협력관계 등 이 3가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임.

(4) 폐쇄된 단지의 점포를 주부의 힘으로 재생 - NPO법인 생활협동관 친구

<활동 경위·배경>

- 히타치나카 시(ひたちなか市)는 이바라키 현(茨城縣)의 거의 중앙에 위치. 미토 시(水戸市)의 북쪽에 있는 인구 약 15만 명의 시. 동쪽으로는 태평양에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농지와 녹지가 많음. 히타치(日立)제작소 등의 공장과 원자력 관련 사업소가 많으며, 히타치 시(日立市)와 같이 기업도시가 갖는 풍토가 있음. 히타치나카 시에는 2차세계대전 후 대규모의 주택단지가 교외 여러 곳에 만들어져, 현재 대부분 주민의 고령화를 맞고 있는데, 「생활협동관 친구」가 위치한 단지도 조성 40년이 지나 고령화가 진전. 단지에는 약 2,000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인구는 약 8,000명

○ 단지와 가까운 큰 도로에는 교외형 쇼핑센터가 증가하여 단지 내에 있던 생협 하이코프 점포가 2004년에 폐점했음. 나이가 들어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가까운 점포가 폐점했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라 주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 때, 이대로는 쇼핑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식생활과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느끼고, 무언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행동으로 실천한 분이 예전부터 생협 멤버였던 쓰카고시(塚越) 씨. 우선 예전에 모두 모였던 생협 점포 앞에서 채소 산지직매 장터를 시작하였음. 생협 직원이었기 때문에 물건 구입에 문제가 없었고 주민도 기뻐했음. 장터를 매일 열 수는 없을까, 점포를 부활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한 쓰카고시 씨는 생협과 협의한 끝에 생협 측의 이해를 얻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것이라면 점포를 대여하겠다는 동의를 얻게 됨. 더욱이 500만 엔을 넘는 개보수 비용도 지원받게 되었으며,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었음.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울 것, 운영주체가 법률상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것 등

○ 여기서부터 쓰카고시 씨의 놀라운 도전이 시작. 다양한 연수를 통해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동참을 권유. 주민의 의향 조사와 설문조사 등 2차례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했던 것이 순조로운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되었음. 주부 중심의 그룹으로 과연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범인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음. 그러나 지역사람들의 생각과 주변 친구들을 고려하여 2005년 10월에 NPO법인 「생활협동관 친구」를 설립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 새롭게 치장하여 「생활협동관 친구」를 개점

<사업 개요>

- 「생활협동관 친구」는 단순한 점포가 아님. 기본은 지산지소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의 제공에 있지만, 주민이 모이고 교류하며 서로 돕는 커뮤니티의 거점으로서의 기능과 생활 지원을 중시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담은 복합적인 공간이 되고 있음.
- ① 「식(食)의 지원」 코너 : 생산자 이름이 붙어 있는 채소 지역산 식재료를 이용한 가공식품, 고령자라도 쉽게 조리 가능한 냉동식품, 지역 상품을 사용한 일식(日食) 중심의 반찬을 매일 바꾸어 제공

- ② 「모임」 코너 : 지역의 예술, 복지, 기술 등에 정통한 인재를 선생님이 모시고 건강, 댄스, 꽃꽂이, 서예 등의 다채로운 교실·강좌를 개강 (현재 21강좌)
- ③ 「식사·음료」 코너 : 지역에서 유명한 커피점으로 셀프서비스 커피(150엔), 우동(300엔), 정식(550엔) 등 주부가 손수 만든 요리 제공
- ④ 「휴게」 코너 : 구입한 반찬 등을 먹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다미 공간, 육아 교류의 장으로 활용
- ⑤ 「복지상품」 코너 : 장애자의 작업소 등에서 만든 수제 쿠키와 빵, 그 외 수제품 판매
- ⑥ 「렌탈 박스」 코너 : 수제품, 공예품 등 자유롭게 대여 판매할 수 있는 코너(1개월 대여료 1,000엔~2,000엔)
- ⑦ 「정보·상담」 코너 : 고령자와 육아 담당 중의 할머니 등을 대상으로 한 상담 코너
- ⑧ 「지원 서비스」 코너 : 자택의 전구 교환 등 일상 생활상의 지원 서비스(1시간 700엔)와 1회 100엔의 식료품 택배 서비스
- ⑨ 상기 각 코너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시민교류시장을 개최. 격주 금요일에는 프리마켓과 지역 채소 생산자들의 직매 장터 개최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행사 실시

<활동 분석>

- NPO법인 「생활협동관 친구」의 전체 활동방침의 결정과 조정은 업무추진회의에서 이루어지며, 각 부문별 활동은 반찬부 등 담당부서를 두어 운영하고 있음. 실무자는 각자 자기가 맡을 수 있는 범위에서 일을 함. 업무가 진전됨에 따라 실무자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지만, 많은 실무자를 모을 수가 있었던 것은, 사전에 설문조사(1,500호 대상 조사, 413호 응답)와 포스터 홍보, 나아가 이벤트 등의 개최를 통해 주민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네트워크와 구전(口傳) 홍보를 활용한 덕분
- 집세 부담이 없다고는 해도 광열비 부담은 적지 않음. 당초에는 실무자들이 무보수로 일했으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차차 지불. 많은 실무자들이 관여하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로 장(場)을 유지하고 또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생활협동관 친구」의 큰 특징. (2007년도의 경우 실제 일하고 있는 회원 73명, 연인원 5,264명, 1일 평균 17명이 활동)

-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상품이 필요한지를 주민 앙케이트를 통해 구성함으로써 대형점과의 차별화를 도모. 주민들이 편안한 교류의 장이 되길 요구함에 따라 처음부터 「식(食)」, 「어울림」, 「삶의 보람」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서비스 제공은 식품 등의 물품판매뿐만 아니라 음식, 문화교실, 복지, 택배, 이벤트 등의 다채로운 내용까지 포함. 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점포 기능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까지 넓은 점도 특징이며, 이는 고객 확보로 이어지고 있음. (2007년도 1일 평균 이용자는 187명)
- 공급 농가에게는 대형수퍼에 낼 수 없는 규격 외 채소를 출하하거나 스스로 가격을 정하는 등 이점이 있으며, 지역 농가와 상점의 공존을 증시하고 있는 점도 커뮤니티 비즈니스다운 점
- 게다가 생협이 지역 공헌의 일환으로 시설 대여 등을 통해 지원 의지를 나타내어 건물을 개보수하여 무상대여를 하고 있는 점도 특징. 그 덕택에 생협이 철수한 지 1년 반이라는 단기간에 「생활협동관 친구」의 개점이 가능했던 것
- 경영 리스크를 고려하여 채소 등은 매취가 아니라 위탁판매(수수료 13%~20%)를 하고 있음. 또 계절별 유명 생산품인 말린 감자, 매실, 과일 등의 예약주문은 수수료를 높게 설정하며 매출 신장에 크게 공헌하고 있음. 나아가 실무자 급여에 대해서도 최근부터 고정급으로 하지 않고 이익에서 운전자금을 제한 금액을 작업시간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 것도 포인트라 할 수 있음

(5) 이상향을 향한 농가 레스토랑 - 유한회사 라퓨타 팜

- 후쿠오카 현 가와사키 지역에 있는 「유한회사 라퓨타 팜(Laputa Farm)」은, 귀농한 전문가에 의해 지역자원의 발굴과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 만들기, 농가가 채소를 소비자에게 출하할 때의 유통비용 절감, 이상향 만들기와 고등학교 유치 등으로 유명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라 할 수 있음
- 「유한회사 라퓨타 팜」은, 자가제조 퇴비에 의한 토양 만들기와 저농약 재배로 생

산한 과일 판매·과일 수확 체험 및 지역산 채소만 사용하는 제철채소 런치부페, 빵·잼 판매, 야외 바비큐 등을 취급. 후쿠오카와 키타큐슈 일대에서 연간 5만 명이 찾는 타가와(田川)지역의 인기 관광지가 되고 있으며, 야외 결혼식과 마을 만들기 이벤트 등도 개최하고 있음

<설립 경위>

- 후쿠오카 현 가와사키 조(川崎町)는 치쿠호(筑豊) 탄전의 중심지에 있음. 탄광 전성기의 인구는 4만 명을 헤아렸는데,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 사용이 전환됨에 따라 인구가 급감하여, 현재 고령화율이 26.2%로서 인구 20,322명 가운데 5,326명이 노인인 지역. 요즘 후쿠오카현은 자동차 산업의 진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지만, 가와사키 지역은 남부 지대가 산악 지역으로 교통이 좋지 않고, 치쿠호(筑豊)탄전 시대의 흔적으로 보는 거친 기질도 있어 지역이 쇠퇴하고 있음
- 가와사키 지역의 농가에서 태어난 스키모토 토시오(杉本利雄) 씨는 도쿄의 대학을 졸업 후, 후쿠오카 현 내의 백화점에서 근무하고자 귀성했을 때 가와사키 지역의 이미지가 나쁘게 된 데 놀랐음. 스키모토 씨는 가와사키 지역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바꾸기로 마음먹고 고향의 경관과 농업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스스로 농업을 잇기로 했음. 그리고 가와사키 지역의 자연과 농업의 실태를 연구하여 '가와사키 지역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전한다'는 것을 생각하였음
- 우선 친지들과 함께 농장에서 1,000명을 모아 콘서트를 개최하고, 지역 내 농업후계자들을 결집시켜 농업과 바이오매스 사업에 대하여 공부하며, 유휴농지와 지역자원의 활용을 생각하는 「大ヶ原あぐりの 모임」을 결성. 이 가운데 점점 줄어들고 있던 가와사키 지역의 과수농업에 대해 연구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경영형태로의 전환을 모색. 오로지 과일 품질만으로 상품 매력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과수원의 부가가치 제고 방안으로 농산물 출하용 창고를 개조하여 레스토랑과 제빵 시설을 만들고 동시에 「유한회사 라퓨타 팜」을 설립. 이런 활동으로 가와사키 지역 자연의 풍요로움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었음

<사업 개요>

- 라퓨타 팜은 농업용 도로가 나 있는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하기가 어려움. 그래서 이를 빗대어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온 「천공(天空)의 성 라퓨타」로 불리기도 하지만, 그 덕에 현재는 연간 5만 명이 찾는 인기 지역이 되었음. 중심부에 있는 레스토랑은 지산지소 형태로 제철 채소를 중심으로 한 런치 뷔페인데, 계절 채소와 함께 매월 수십 종류의 다양한 요리를 취급. 가정에서도 쉽게 배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리법(레시피)을 모두 공개하고 있음. 이 서비스가 근교 주부층이나 지역 내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어 화제가 되고 있으며, 결혼식 등도 자주 치르고 있음. 그중에는 □□당뇨병을 앓고 있지만, 이곳 음식을 먹고서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이곳 음식은 잘 먹는다□□등,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좋은 평판 덕에 농가 레스토랑이 사업의 핵심이 되고 있음

<경영 포인트>

- 라퓨타 팜은 지산지소의 채소를 중심으로 한 뷔페를 통해 농가가 채소를 소비자에게 출하할 때의 유통비용을 절감. 그리고 눈에 띄는 관광자원이 없던 지역에 5만 명이 넘는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여 관할 관공서에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농상공과가 설치되었음. 또 스키모투 씨는 백화점에서 배운 전시 및 디자인 감각을 레스토랑의 그릇 배치와 라퓨타 팜의 기본 디자인 등에 살리고 있음. 스키모투 씨는 따뜻한 성품으로 주위 사람들을 잘 이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전문가가 사업에 관여하는 지역재생형의 사업모델에 성공 사례가 되었음. 최근에는 근처 양계장을 매입, 「폐계사 이용형 농업」이라는 컨셉으로 건물 골조를 딸기하우스로 리뉴얼 하여 후쿠오카현 브랜드인 「아마오우」 딸기 생산을 시작. 지금까지 포도와 배를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출하했지만, 앞으로는 과일을 연중출하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방문객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향후 전개>

- 2008년 5월, 주식회사 방식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아트마크·러닝 (Atmark Learning) 사의 히노 코조(日野公三) 사장이 방문하여 가와사키 정장(町長)과 라퓨타 팜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제안. 히노 사장은 후쿠오카 시와 키타큐슈 시의 도시권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많은 고객이 찾는 농가 레스토랑에 매력을 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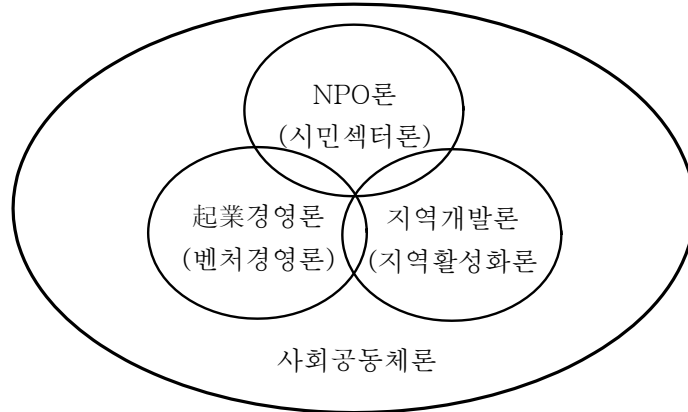
졌다고 했음. 그래서 행정이 관리하고 있던 아다가(安宅) 초등학교의 폐교 부지에 이시가와(石川)현 하쿠산(白山)시의 아트마크 국제고등학교에 이은 학교 설치계획이 수립되었음. 동년 11월에는 국가로부터 특구로 인정되어 가와사키 지역은 아트마크·러닝 사에 아트마크 메이호칸(明蓬館) 고등학교의 설치를 허가 받음. 이 고등학교에서는 라푸타 팜에서의 농업과 레스토랑의 체험 실습, 가와사키 시의 명소 「어락원(魚樂園)」에 있는 일본식 정원 셋슈테이(雪舟庭)를 중심으로 한 문화 학습 등의 프로그램 도입이 계획되어 2009년 4월에 개교. 당초 지역주민으로부터는 등교 거부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고등학교로 잘못 인식된 적도 있지만, 지금은 농가민 박 준비도 지역에서 협력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준비해나고 있음

- 라푸타 팜의 활동은, 지역의 풍요로움, 가능성과 즐거움을 사업에 접목함으로써 생각을 공유하는 범위를 넓히고 동시에 새로운 사업 추진을 가져왔으며, 이로써 지역을 책임지는 새로운 인재 양성이 기대되고 있음

4)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문제인식과 과제

-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커뮤니티문제를 논의할 때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논의의 접점에 위치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4가지 논의에 관련되는 영역으로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상정할 수 있음
- 첫째, 지역개발론·활성화론의 분과임. 종래의 지역개발정책은 고도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중앙정부주가 아니라 지역주민, 시민주도로 나아가야 하며,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생활의 재생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지역개발이 필요함
- 보다 구체적으로는 말하자면 지역가꾸기와 관련한 지역활성화대책을 심화시키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요구(needs)가 있는 지역에 새로운 사업을 도입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이러한 새로운 내발적 지역개발론의 하나로서 위치할 수 있음

<그림 6-5> 커뮤니티비즈니스론의 종합적 시각



- 둘째, 시민섹터론임.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커뮤니티비즈니스는 ‘건강한 지역만들기’라고 하는 공공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시민섹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하나의 법인격이나 조직형태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커뮤니티를 건강하게 하는 활동이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직이나 개인보다는 오히려 법인격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임의단체, NPO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단체를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참여주체로 상정할 수 있음. 단지, 강조되어야 할 점은 사업이 지역성이나 커뮤니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 즉, ‘시민섹터’ 속에서 그러한 지역적 관점을 갖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임
 - 예를 들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조직의 경우, 추진하는 사업이 자기구성원만의 편익을 중시한다면 그것은 커뮤니티비즈니스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는 워커스 컬렉티브(workers collective : 주로 퇴직노동자들의 협동에 의해 설립된 회사나 조합)처럼 ‘지역이나 커뮤니티에 대한 공헌’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유사한 측면이 많아지고 있음
 -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관점에 입각해서 지역의 다양한 활동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시민섹터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

- 셋째, 벤처경영론임.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방법론적으로는 벤처경영론 내지 벤처기업(起業)론과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음. 앞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사례에서 보았듯이 일반적으로는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커뮤니티 자원을 찾아내고, 그것을 현재까지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던 생활자의 요구(needs)를 만족시키기 위해 혁신

(innovation)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서 새롭게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흡사 벤처기업(起業)론적 측면이 병존한다는 것임

- 그러나 벤처경영론과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벤처비즈니스의 경우, 하이테크나 첨단 산업적인 것으로 장래의 성장전망이 좋은 분야들이며 통상, 고위험·고수익(high-risk·high-return)을 지향함
- 하지만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경우는 저위험·저수익(low-risk·low-return)을 기조로 하며, 반드시 사업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최적규모·적정이윤을 유지하는 것이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비경제적인 목적과 합치되기 때문임

○ 넷째,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사회적인 공동체론과도 접점에 위치함.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사회 속에서의 활동을 기초로 하여 출발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러한 활동은 도시형 커뮤니티처럼 클럽이나 협회 등을 기초로 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공동체를 기초로 하는 경우도 많음

- 이처럼 기초로 하는 지역사회의 존재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커뮤니티비즈니스가 형성되며, 또 커뮤니티비즈니스는 그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사회관계가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지역커뮤니티의 바람직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이상의 4가지 논점은 그대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유형화로도 연결됨. 실제로 존재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도 모두 위에서 살펴본 4가지 논점에 포함되지만, 각 커뮤니티비즈니스 마다 각각 역점을 두는 사업목표나 추진방식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이 역점을 두는 포인트에 따라서 사업전개의 모습도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유형화 한 것이 <표 6-3>임

<표 6-3>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유형

사업주체	1. 시민起業家 타입 2. 7인의 유지 타입 3. 지역공동체 타입 4. 실업자 타입	起業의 목적	1. 생활의 질 향상 2. 일하는 방식의 확립 3. 사회문제의 해결 4. 경제기반의 확립
경제시스템	1. 지역내순환형 2. 개방경제형	사업분야	1. 복지 2. 환경 3. 정보 4. 관광·교류 5. 식품가공 6. 지역가꾸기 7. 상점가 활성화 8. 전통공예 9. 안전 10. 금융 11. 기타
조직형태	1. 주식회사 2. 유한회사 3. 협동조합 4. NPO법인 5. 임의단체 6. 공익법인 7. 워커스 컬렉티브 8. 기타		
사업종류	1. 상품 2. 노동서비스 3. 정보서비스(노하우)		

- 일본의 경우 지역공동체는 전후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그 기능이나 역할을 상실했지만, 지금부터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공동체로서의 기능이나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거처’로서의 역할 등 다시 지역공동체가 사회적인 주제로 등장하고 있음
- 1990년대 초에 ‘지역공동체의 건강성을 복원하는데 기여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커뮤니티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행정의 역할이라며 외면했지만, 몇 년 후부터 사회적 변화도 있었고 가치관도 변화함에 따라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함
- 특히, 고베대지진의 영향 등으로 자원봉사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NPO라는 용어 역시 사회적인 보통명사가 되었음. 마찬가지로 커뮤니티에 비즈니스가 붙여진 ‘커뮤니티비즈니스’라는 용어도 시민들의 이해를 획득하게 됨
- 지금까지의 법체계에서는 지역커뮤니티 속에서 시민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기가 적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을 수 없었음. 그러나 지금은 NPO법이 제정·시행중이기 때문에 NPO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규모적인 기업과 같이 개인사업자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경영체도 있었으며, 또 여성이 중심이 된 생활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워커스 컬렉티브(workers-collective)라고 하는 노동자기업의 한 형태도 형성되고 있음

- 지역사회에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지역공동체 가꾸기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시민생활을 지지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주민, 기업, 행정 모두가 종래의 가치관이나 틀을 뛰어넘어 지역공동체를 기초로 사고하고 행동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지역커뮤니티를 포괄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 행정,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며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곧 지역을 활력있게 만드는 것이며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목적이며, 생활자로서 주민스스로가 자신의 생활기반인 지역공동체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문화활동으로서 교류하며 그것을 사업화해 나가는 것이 풍요롭고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재생과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3. 캐나다의 농촌사회적기업 정책

1) 캐나다 연대협동조합의 설립배경과 추진과정

- 1997년 캐나다 퀘벡 의회는 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s)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 법에 따르면, "연대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사업의 이용자 조합원과 협동조합 내에서 일하는 종업원 조합원을 조합원의 범주에 포괄함. 더 나아가 그 협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경제적 혹은 사회적 관심을 지니고 있

는 다른 개인이나 회사도 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음. 이 조합원은 '후원조합원'이라고 지칭함"

- 인구 770만명의 퀘벡주에서 1997년부터 2007년 사이에 479개의 연대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008년 현재 300개가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퀘벡주의 연대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인식보다 훨씬 일찍 이루어진 것임. 캐나다 연방정부의 폴 마틴 총리가 2004년에 지역의 개발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처음으로 발표하였음.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4년 3월 16일에 지역의 내발적 경제발전과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100만 달러를 사용하기로 하였음. 이 자금은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대출과 페이션트 자본기금의 조성을 위한 종자돈,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관한 연구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에 사용되도록 하였음
- 퀘벡은 협동조합이 다양하게 발전해온 지역임. 1830년부터 1930년대까지 농협과 신협이 일찍이 발전해왔으며, 이후 1930년부터 1945년에는 주택, 학생들의 필요, 식품의 공급, 임업, 장의업 등으로 협동조합이 확산되어 왔음. 이후 기존의 협동조합들이 통합 및 강화되어왔음. 이 결과로 퀘벡에는 32,000개의 협동조합과 39개의 공제조합들이 있고, 850만명의 조합원(개인 및 기업), 87천명의 일자리 (이중 60%가 도시이외의 지역에 존재함)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고는 220억불에 달함(Quebec Cooperative and Mutual Council, www.coopquebec.coop/site.asp?page=element&nIDElement=2282)
- 퀘벡주는 전지구적 차원의 세계화와 도시화의 진전의 결과로 농촌의 과소화와 도시빈곤의 진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였는데, 퀘벡주 정부와 민간단체 차원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이슈를 논의하여 왔음. 첫째, 지역개발, 둘째, 마을의 공동화와 주민편의시설의 폐쇄문제, 셋째, 보육활동의 사회화문제, 넷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의 문제(1993년에 실질실업률은 22.8% (873천명),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는 전체 인구의 10%인 80만명에 달함), 다섯째, 노인을 위한 홈케어서비스의 문제 등임
 - 1996년에 퀘벡정부는 1996년에 "경제 및 사회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음. 여기에 기업

주, 노동조합, 협동조합, 여성단체, 지방단체 등의 대표적 인사들이 참여하였음. 여기에 참여한 사회경제조직들 (지역개발회사와 지역경제개발회사, 여성조직, 노동조합, 데잘딩 협동조합, 퀘벡협동조합협의회 등)이 홈케어서비스를 중심적 과제로 설정하고 협동조합법의 개정을 추진해서 1997년에 협동조합법이 개정됨. 이 법은 2005년에 개정되었음. 이 개정된 법에 따르면 연대협동조합은 이용자, 종업원, 후원자 조합원 중 2종류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될 수 있음. 개인은 한 종류 이상의 조합원이 될 수 없음.

2) 연대협동조합의 의의와 설립 및 운영현황

- 캐나다 퀘벡에서 논의되어온 연대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등 유럽에서 추진되어온 사회적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음.
 - i) 연대협동조합은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서 추진됨
 - ii) 연대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설립되고 운영됨
 - iii) 연대협동조합의 자본은 분할될 수 없고, 거래될 수 없으며, 해당지역이외로 빠져 나갈 수 없음
 - iv) 연대협동조합이 활동하는 공간적 범위는 협동조합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v) 연대협동조합의 운영은 조합원들의 책임 하에 있으며, 1인 1표의 원칙을 고수함.
- 1997년부터 2007년까지 479개의 연대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2008년 현재 이 중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 수는 모두 328개였음. 이 기간 동안에 설립된 협동조합 총수는 1,702개였음.
 - 연대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 레저, 개인서비스 또는 홈케어 서비스 등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음(<표 6-4> 참조). 연대협동조합은 퀘벡주 전역에 걸쳐 퍼져있지만, 준도시 및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연대협동조합은 몬트리올과 퀘벡시에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임

<표 6-4> 활동영역으로 구분한 연대협동조합(2007년 7월 31일 현재)

부문		설립	활동 중
농림수산업	Blueberry farms	2	2
	Farming	18	10
	Fishing	3	1
	Forestry	9	6
제조 및 건설업	Clothing	4	0
	Computing	12	6
	Construction	1	0
	Housing	15	13
	Manufacturing	5	3
	Printing and editing	11	8
유통, 운송, 교육, 레저, 문화, 의료, 사업, 사회 서비스 등 서비스업	Transportation	8	2
	Utilities	3	3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29	18
	Arts and crafts	4	3
	Arts and entertainment	33	21
	Cable distributors	2	2
	Commerce	20	16
	Education	10	7
	School cooperatives	2	0
	Food stores	24	13
	Leisure	60	45
	Purchasing groups	2	1
	Recycling	15	9
	Business services	31	21
	Personal services	44	37
	Social services	50	37
Other services	29	24	
컨설팅 및 사회 서비스	Community groups	1	0
	Consulting services	9	7
	Daycare centres	11	5
	Economic development	12	6
합계		479	327

출처: Direction des coopératives, MDEIE.

- 헬스케어서비스협동조합은 여러 지역에서의 의사 부족현상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설립되었음. 2008년 현재 30여개가 있는데, 이들은 의사들을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2005년 현재 퀘벡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부에 주요 통계가 보고된 145개 연대협동조합이 창출한 일자리는 2,124개이며, 조합원수는 5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또한 이들이 조달한 자본금은 16백만 달러이며, 매출액은 56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표 6-5> 참조). 퀘벡주의 연대협동조합 중 대표적인 사례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 <표 6-6>임

<표 6-5> 연대협동조합의 주요 통계

	2001	2003	2005
보고된 협동조합 수	89	114	145
총 자산 (천 달러)	23,492	30,215	50,522
총 자본 (천 달러)	10,577	12,763	16,080
총 매출액 (천 달러)	32,765	46,760	56,604
잉여 (천 달러)	1,462	400	-220
조합원수	23,526	36,791	50,371
일자리수	1,877	2,020	2,124

출처: Statistical data (2007), Direction des coopératives, MDEIE

3) 연대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 퀘벡주의 연대협동조합이 캐나다의 다른 주에 비해서 매우 발전해온 배경에는 민간 부문과 정부의 협력적인 지원체제에 기인한 바가 큼

(1) 민관협력에 기반한 정부의 지원체제

- 연대협동조합은 퀘벡주정부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 어젠다의 한 부분으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연대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

한 조직들의 설립과 성장을 돕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6-6> 퀘벡 연대협동조합의 대표적 사례 요약

기업명 (설립연도)	위치, 인구, 소속 지역	취급 서비스 및 제품	조합원 수 (최소 가입출자금액)
Co-opérative de solidarité en aide domestique Domaine-du-Roy(1997)	St-Félicien, 10,622명 Lake St. John	- 재택 돌봄서비스 -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03년 현재 1,182명의 이용자조합원(\$10), 99명의 노동자조합원(\$50), 18명의 후원조합원(\$100)
Co-op de solidarité en soins et services de Saint-Camille (1999)	St-Camille, 440명, Eastern Township	-고립된 농촌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적 의료인들에 대한 아내 및 문화예술 서비스	'05년 현재 45명의 이용자 조합원(\$250), 2명의 노동자조합원(\$250), 15명의 후원조합원(\$250)
Co-opérative de solidarité récréotouristique du Mont Adstock (1998)	Adstock, 2,399명, Chaudière-Appalaches	-과산한 개인소유스키리조트의 협동조합적 운영	'03년 현재 405명의 이용자조합원 중 371명은 레저조합원(\$50)이며, 34명은 비즈니스조합원(5천달러 이상), 1명의 노동자조합원(1천달러), 5명의 후원조합원(1만달러)
Co-opérative de solidarité en alimentation saine L'Églantier du Kamouraska (1999)	Saint-Pascal, 3,643명 Lower St. Lawrence	-유기농식품가게, 커피숍, 서점 운영 - 유기농텃밭 가꾸기 교육 등	2003년 현재 272명의 이용자조합원(\$50), 6명의 노동자조합원(\$100), 12명의 후원조합원(\$100)

자료: Girard, 2009.

- 퀘벡주정부는 사회적 경제의 대표조직과의 협력을 통하여 연대협동조합의 자금 조달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오고 있으며, 연대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음.
- 퀘벡 정부는 지역공동체 기업을 포함하여 비영리기업을 위한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 경제의 투자기관을 허용하는 법률을 마련하였음. 이 일환으로

새로운 펀딩프로그램이 마련되었음. Investissement Québec은 협동조합적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Collective Entrepreneurship Program)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본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음. Regime d'investissement cooperative는 노동자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 노동자-투자자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협동조합들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투자할 경우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재무적 수단임

- 퀘벡은 집단적 기업, 면단위와 군단위 개발조직, 그리고 사회운동조직들을 결합시키는 비영리조직인 사회적 경제 회의소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인정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예를 들면, Réseau d'investissement social du Québec (RISQ)가 사회적 경제 회의소에 의해서 1997년에 설립되었는데, RISQ는 협동조합적 기업에 대하여 신용대출, 대출보증 혹은 참여적 대출을 5만 달러까지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5천 달러까지 소규모 기술적 지원을 받기 위한 대출을 제공함
- 사회적 경제 회의소의 이러한 자금 지원기능에 대하여 퀘벡 주정부는 매칭펀드를 제공하였고 RISQ의 운영비의 일부를 제공함. 2004년에는 사회적 경제 회의소는 퀘벡 경제개발부와 공식적인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함. 그리하여 사회적 경제 회의소는 사회적 경제의 합법적인 대표조직으로 인정됨. 이러한 일련의 정책적 이니셔티브는 시민사회활동가들의 제안을 통하여 이루어짐. 사회적 경제 회의소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의 다른 한 축은 퀘벡 협동조합 협의회 (Conseil de la coopération de Québec)이며, 이 조직은 퀘벡의 모든 협동조합을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법률적인 변화는 이 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퀘벡에서 사회적 경제운동이 보다 진전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강한 사회운동과 정부와 한 목소리로 협상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부문의 네트워크가 존재하였다는 점임
- 퀘벡의 사회적 경제 회의소(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는 사회적 경제를 위한 다기능적인 하부구조의 좋은 사례임. 이 조직은 다중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음. 이 조직은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고, 입법, 정책 및 프로그

램을 통하여 새로운 규칙과 수단에 대하여 연구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수립하며
부문별 조직의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에 적합한 자본과 신용자
원을 형성함

- 또한 지역개발 차원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
협동조합(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ves, RDCs)'은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
는 협동조합의 수와 창출된 일자리수를 기초로 퀘벡정부로부터 운영비의 일부를 지
원받고 있음. 퀘벡주 각 지역에 11개의 지역개발협동조합이 있으며, 이들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약 1만 여개의 일자
리의 창출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됨
-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은 연대협동조합들의 설립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지원을 담당
하는 조직들, 즉 지역경제개발회사(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s)와 지방개발센터(Local Development Centres)도 적지 않은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

(2)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지원조직과 활동

- 퀘벡주의 대표적인 금융협동조합인 데잘딩 금융협동조합은 데잘딩 금융보증기관
(Desjardins Financial Security)을 통하여 홈케어서비스를 담당하는 협동조합의 설립
에 대하여 그 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음
- 최근에 집단적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자금펀드들이 설립되었음.
예를 들면 RISQ는 파트너십 비즈니스의 발전을 돕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금융적 레버리지로 활용될 수 있는 자금을 투입하고 있음. 이러한 펀드는 미화
5만 달러까지 대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금은 일반적으로 다른 자금원등과 결합되
어 3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사이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지원되고 있음
- 2001년에 설립된 Capital Regional et Cooperative Desjardins (CRCD)은 주
(provincial)단위 세금우대의 도움으로 데잘딩 운동에 의해 설립된 벤처자본펀드임.
개별 투자자들은 한 주에 연간 35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이 투자를 통하여
CRCD는 자본, 전문가, 그리고 퀘벡내의 기업체 및 협동조합의 네트워크에 대한 접

근을 제공함

- 캐나다에서는 지역의 고용의 창출과 유지 목적으로 '노동자가 지원하는 투자펀드 (labour-sponsored investment funds)'가 주(province) 차원에서 형성되었음. 이는 1980년대 초에 퀘벡 주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펀드는 지역의 재생을 촉진하는 각종 투자를 수행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시장수익률을 제공함. 이 펀드를 구매하는 개인은 이 투자에 대하여 30%의 소득세 감면(15%는 연방정부로부터, 15%는 주 정부로부터)을 받게 되어 이러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이러한 제도환경 하에서 퀘벡에서는 퀘벡연대기금이 조성되었음. 참고로 2004년 현재, 노동자 지원의 투자펀드는 캐나다에서 이용가능한 벤처자본투자의 50%이상을 제공하였음
- 또한 퀘벡의 노동조합연합회가 1966년에 설립한 투자펀드기관은 Fondaction은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그리고 캐나다 원주민 등에 초점을 맞추는 특별 펀드들을 운영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퀘벡의 개발금융기관들은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많은 개발금융기관(CDFI)들은 금융이외에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주로 경영관리, 마케팅, 회계, 그리고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의 작성 등에 관한 기술적 훈련들과 관련되어 있음
 - 또한 퀘벡의 연대기금 (Québec Solidarity Fund)은 투자의 전제조건으로서 해당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것을 요구함. 이 훈련은 경제교육 및 훈련 재단 (Economic Education and Training Foundation)에 의해 지원되고 있음
- 이러한 민관 합동의 자금 지원 및 컨설팅 지원체제로 연대협동조합의 생존율은 다른 기업들의 생존율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부록Ⅱ]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에 관한 포럼정리¹⁸⁾

1. '농촌형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실천방안' 포럼

1) 발표문 요약

(1) 농촌형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 이은애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가. 사회적기업의 정의 및 역할

-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은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사회적 임무 지향적(social mission-driven) 조직'을 의미하며,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적기업은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둘째, 사회적기업은 창업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국가 생산성을 증대시킴. 셋째,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재생과 사회통합, 그리고 환경 문제와 같은 사회적 욕구에 부응함. 특히, 소외계층이 기술을 익히고 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수행함하며 넷째, 사회적기업은 공정거래와 같은 윤리적 실천을 주도하고, 윤리적 시장(ethical markets)을 촉진하여 기업들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실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증가시킴

18) (재)지역재단은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모색'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사회적기업가, 현장활동가 등을 초빙하여 세 차례의 포럼을 개최했음. 첫 번째 포럼은 「농촌형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실천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포럼은 「한국의 농촌형 사회적기업 확대전략」을 주제로, 세 번째 포럼은 「지역개발과 농촌형 사회적기업」을 주제로 개최하였음.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세 차례의 포럼을 통해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확대전략,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활동분야 등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전개했다. 이하는 이 포럼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나. 국내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 2007년 법 시행 이후 분기별로 현재까지 모두 7차에 걸쳐 총 252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았음. 이들 252개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 분포도를 분석해 보면 비수도권 비중이 41.8%('07년1차)에서 54%('09년7차)로 12% 증가하였고, 2007년말 인증 사회적기업의 52.9%가 대도시에, 58.8%가 수도권에 소재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수도권 편중도 문제가 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16개 광역 지자체로 구분시에는 아직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에 절대 다수가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소재는 62개, 농촌대상 19개, 농어촌에 소재하면서 농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12개이다. 향후 지역별 활성화 정책설계시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됨

- 노동부가 구분하고 있는 업종유형에 따라 분석해보면 취약계층 재활용 사업체의 약진으로 환경업종이 47개(19%)로 가장 많고, 가사간병 39개(15%), 식품제조 36개(14%), 제조업 29개(12%) 순으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노동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처 간 사업 아이템 중복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08년 말부터 사회적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선정 시 가사간병 분야를 대폭 축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중이 높은 편이며, 보육과 보육서비스 분야에서 증가 추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농산어촌소재 총 62개 사회적기업의 업종유형은 제조업이 22.5%, 간병, 환경사업이 각 21%, 사회복지 16%임. 농촌기반 사회적기업으로는 이장(농촌컨설팅), 흙살림(친환경농업교육, 로컬푸드), 생명농업지원센터(친환경 농자재 생산: 고삼농협). (유)해맑은환경(농가소독 및 방역), (합)햇살나눔(농산물가공사업), 청람사회복지회(독거노인 간병 및 농가지원),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재가케어서비스) 등이 있음

- 전체 사회적기업 근로자수는 약 1만 1천명으로 사회적기업 1개당 평균 28명,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64%이다. 전체 서비스 수혜자 수는 2만 2천여명으로 사회적기업 1개당 평균 2,192명, 취약계층 수혜비율은 67%이다. 노무비 전액을 영업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은 60%임

다. 농업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지역의 장점을 토대로 지역재생과 연결되는 창업, 즉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농촌의 복지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 환경보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을 이해하고 지역자원들을 조정·매개할 수 있는 인력양성 및 중간지원의 역할과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잠재적인 창업 가능성과 지역인재 및 기술을 발굴할 수 있는 시범단계에서의 TF팀 구성을 통해 지역민과 지자체 사이의 가교역할이 필요함
- 또한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의사결정구조에 참여시킴으로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사회적기업의 업종 및 지역·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 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귀농운동과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의 연계점을 찾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라. 정책과제

<①정부의 과제>

- 첫째, 인증제도 지속여부 재검토 및 인증기준 개선이 필요함. 특히 사회서비스 범주의 포괄적 적용이 필요함.
 - 현행법상, 사회서비스의 범주를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협소하게 규정한 결과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중 해당 범주에 속하는 기업은 59.8%에 불과함. 이에 공정무역, 농촌 지역개발, 문화예술 클러스터, 윤리적 소비지원 유통업, 여행서비스 등 기존의 사회서비스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 포괄 및 다양한 사업분야의 발굴이 필요함
 - 농업분야는 취약계층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에 맞는 대상자임을 증빙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으로 제도화가 되어 영농 현실과의 괴리가 있으며(동네사람들끼리 노사관계가 되는 입장 등), 실제 필요한 농민들(농장경영주)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제도 장치, 농업현실에 맞는 노동법 등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도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임
 - 또한 농업부문의 사회서비스 및 취약계층의 범주를 포괄 적용해 농업의 사회적 가치

와 낙후지역개발, FTA 개방 등에 대응한 고령자 소농인 보호를 위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함.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늘리기 위해 사회적일자리 참여 신청자격 및 최소 고용요건을 완화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사회적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본격화한 것을 참고할 수 있음

- 둘째,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지원제도 내실화가 필요함.
 - 현재 재정지원이 인건비 지원에 편중되어 즉시 고용확대에는 용이하나 사업 기반구축 투자비 부족과 추진주체의 정부의존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재정지원 방식 개편 필요함. 또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시장형성 및 제도간 연계 미흡으로 인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같은 시장형성 지원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현실임
 - 이에 대한 대안정책으로는 사회적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수립과 지자체 참여 유인을 통한 인증 이전단계 지원방안 마련되어야 하고, 공공조달에 있어 최다경력자 최저가 입찰의 조달관행에서 탈피해 업체 선정시 지역사회 취약계층 고용 및 훈련, 동일업종 내 근로조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적 효과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제한경쟁 입찰 기준완화 등 새로운 조달기준 정립이 필요함
- 셋째,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광역 지자체와 기초 자치단체간, 정부와 민간 추진체간 파트너십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부처별 사회서비스 일자리중 수익모델화가 가능하고 고용창출 역량이 큰 핵심 아이템을 발굴하여 부처간 협조하에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기업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 창의성 보장 및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기반 추진, 사회적기업 및 사회서비스산업 관련한 실태조사 정례화 및 정보 제공 등이 과제로 남아 있음

<②시민사회의 과제>

- 첫째,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인적·물적 자원과 경영전문성을 보유한 기업들의 사회공헌 차원에서의 참여가 중요함
- 둘째, 새로운 시민기반의 자본시장 형성과 투·융자 방식 개발이 필요함

- 사회적기업은 조직과 자산규모가 영세하며, 사회적기업 조직형태의 특수성(주식회사의 비중이 낮다는 점), 소유구조의 특이성(대주주의 지분율이 낮고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비영리기관이 주주인 경우가 많다는 점) 등으로 제도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조건임.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자본조달 방식은 회비나 기부금 뿐 아니라 정부 재정지원, 정부 및 기업과의 계약, 자본대부, 사회적 투자자를 통한 투자유치 등 보다 개방적이고 공격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음
 - 우리도 우선적으로 정부조직 및 공익적 금융지원 조직-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휴면예금관리재단, 근로복지공단 실적자 창업대부기금-들의 사업대상 기준에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금운용 규정 개정과 관리자 교육을 통하여 미국의 벤처형 자선조직과 같은 사회투자자적 관리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대안금융 활동들이 개발되어야 함. 즉, 사회연대은행이나 신나는 조합과 같은 마이크로크레딧, 함께 일하는 재단의 지역개발금고, 신용협동조합 정도가 활동 중인 국내 무담보 장기저리 지역투자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투자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인력확보가 사회적기업의 성패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이에 시민운동가로서의 문제분석과 대안제시 능력 뿐 아니라 사업개발 및 자원네트워크 활용, 리스크 관리능력을 갖춘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고 양성해낼 수 있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등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가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지하는 조직적 배려가 필요함
-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졸업생들의 지역사회 정주율을 높이고 대안적 사회진출의 경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대안적 생산자운동인 사회적기업은 대안적 소비자들이 있을 때 생존 가능하므로 윤리적이고 대안적인 소비자운동의 촉발과 연대, 사회적기업간 유대를 통한 내부시장 구축 등의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유기토종농산물 생산과 직거래유통으로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사회적기업 운영사례 - 이태근 ((사)흙살림 회장)

-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중심역량은 생산에 뒤야 함
 - 대부분 농촌형 사회적기업이 생태, 관광, 가공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데, 생산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농민소외 현상이 지속되게 됨
 - 특히 농촌은 대부분이 취약계층으로, 생산을 중심으로 해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됨

- 사회적기업 취업 후 농가 가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대략 살펴보면, 단적인 예로 논 3,000평 기준으로 조수익이 900만원, 이익이 400만원인데, 이런 기존 소득에 더해 사회적 일자리로 월 100만원을 올리면 농촌지역에서 생활이 가능해 지게 됨. 따라서 중소농들에게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

- 농촌주민은 직장생활 과정에 익숙치 않음. 따라서 법에서 정한 일자리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을 훈련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함
 - 농한기 때 사회적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과제인데 훈련, 교육 프로그램과 가공사업이 일자리 프로그램에 적절히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또 농작업 특성상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름에는 아침 일찍 일하거나 저녁 늦게 일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는 적용이 곤란한 점이 있고, 또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이 겸업으로 자기 농사를 짓고 있어서 근로시간 운영에 탄력적인 적용을 하기 어려운 점이 현실적인 문제임

- 농촌형 사회적 기업을 대안으로 잘 만들어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임

2) 주요 토론내용 요약

(1) 지정토론

○ 이은정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서기관)

-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저소득층 빈곤대책 차원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어 독자적인 자기영역이 없으며, 농어촌 고령화 대책도 노인들을 객체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음.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정은 아직 초안 단계임.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8개 분야에 대해 사회서비스 제공기준을 제시하고 5년간 목표를 설정해 그 달성정도를 점검할 계획임
- 사실상 농어촌에 가보면 노인밖에 없음. 사회서비스 기준을 만들어도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관이 적절치 않은 상황임. 사회적기업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당초에는 노동부에 사회적기업 관련 농어촌 특례를 적용해서 지원할 생각이었으나 농촌형 사회적기업, 공동체 회사 등으로 고민이 확장되었음. 농어촌지역 재생차원에서 공동체회사 형태 지원, 노동부 사회적기업 농어촌 특례를 병행해 농어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 사회적기업 사업과제로 추진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해서 컨설팅, 교육, 수익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련 농어촌공동체 회사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을 귀농·귀촌 정책의 한 수단으로 추진할 생각임. 이렇게 해서 농촌형 사회적 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정책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사회서비스 제공에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

○ 임동완 (영광 사회적기업 '청람' 사무국장)

- 자원봉사동아리 활동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농촌고령화가 심해 자원봉사로 한계가 있음을 느꼈음. 자원봉사활동은 공급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 20명의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신청해서 사회적기업 청람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현재 190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지적장애, 청각·지체장애, 퇴직근로자 등 80%가 취약계층임
- 돌봄 서비스(가사, 간병, 장애인 지원)와 농촌일손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인력이 부족해 농촌일손 지원사업은 일반농가 지원은 못하고 파프리카 재배단지 사업에 20명을 고용하고 있음
- 2008년 결산으로 4억원의 수익을 달성했지만, 올해가 노동부 지원 마지막 해라서 고

민임. 100% 자립해야 하는데 현재는 40% 자립수준임. 고민 끝에 700평 규모로 육묘장 사업을 새로이 시작했음

- 제도적 개선점으로 육묘장을 운영하려면 석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전업농이나 농업법인과 달리 우리는 사단법인이라서 면세유 혜택을 받지 못함.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이재국 (서천 '얼굴있는 먹을거리' 사무국장)

- 사회적 기업은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지역에서 누가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함. 누가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농촌형 사회적기업은 중소가족농, 귀농인 등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생산자조직이나 소비자 조직이 자체 유통망을 갖고 생산, 소비, 유통을 로컬푸드운동 관점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는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버는' 취지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농촌에서 일반적인 영농조합법인이 인정되지 않음
- '얼굴있는 먹을거리'는 작목반 조직이 아닌 작목간 생산자 조직이다. 20-25농가가 약 40여가지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두부와 유정란 배달을 통해서 형성된 유통망을 이용하고, CSA형태로 사업을 하려 한다.
- 다양한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 현재 두부가공 이외에 콩나물, 짬아찌 가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직매장 운영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받고도 적자운영이며, 가공센터는 두부가 경쟁력이 있다.
- 그밖에 서천 지역특성화 고교와 협약해서 웹사이트 운영과 온라인을 관리하기로 했고, 가정택배사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오프라인 모임을 구상하고 있다.

○ 김병수 (전통문화사랑모임 사무국장)

- 일례로 참깨 팔다가 참기름 짜서 팔고, 그러다가 나대지에 산초 심어 산초기름 짜서 팔고,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름짜는 기계 1대 정도 마을에 설치하면 됨
- 대규모의 가공공장이 아닌 중간규모 가공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흙살림의 경우 과제와 목표를 중심으로 사업이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렇게 해서 다양한 조직실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로컬푸드운동은 농촌에서는 생산, 유통사업이지만 도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농업도 음식개발, 다양한 상품을 기획하는 기획생산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음

- 생산 컨설팅을 하다 보면 농민들이나 생산자조직들은 소비자들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생산, 유통, 가공을 모두 하니 그럴 수밖에 없음
- 마을 하나가 작은 사회적기업이 될 수도 있음. 농촌형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려면 다양한 경로를 추적하고, 기획해야 함. 그리고 그것을 지원할 기금도 조성해야 함. 일례로 각종 지역개발 사업 내에 주민 뿐 아니라 농촌형 사회적기업도 주체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놔야 함

○ 양기운 (사회적기업 '새벽공동체' 대표)

- 노동부 관료는 '사회문제를 기업식으로 푸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함. 그렇다면 농촌형 사회적기업은 농촌문제 중 사회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접근하는데, 결론은 농촌지역문제로 접근해야 함
- 농촌지역 내부에서 재화와 사람이 돌아야 함. 그렇다면 농촌의 내부순환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농촌의 문제는 고령화, 가격경쟁, 큰 시장에 의존하고 모든 것이 단절된 단작화에 있다고 생각함. 농촌에서 사회적기업 논의는 단순함.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가격경쟁은 사회적 유통 방식 등 가격경쟁 배제되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단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급자족 농사의 생산·소비 목표를 설정해야 함
-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복지부는 자활기업.....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함. 그런 관점에서 농어촌 공동체 회사, 실효가 있을까 의문임. 중요한 것은 정부 재정을 어떻게 잘 쓸 것이냐 하는 것임. 각 부처에서 상호협력하여 가용예산을 활용하여 농촌형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함

(2) 자유토론

○ 정문찬 (한드미마을 대표)

- 농촌의 일은 모두가 사회적 문제임. 지난 8월 31일 사회적기업 서류를 제출했는데 4번 반려되었음. 현재 인증심사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음. 이은애 사무국장 발표내용 중 노동부와 문광부 간의 MOU 체결처럼 농림부도

농촌에서 사회적 기업하고자 하는 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안효민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집행위원장)

-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들이 농촌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지역재단 등과 같이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단체들과 농림부가 협력하여 노동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함
- 농촌현실에서 사회적기업은 농업생산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됨. 생산·경제 활동에 중심을 두면서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영농조합법인도 사회적기업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함

○ 사회자 : 박진도 (충남대학교수/지역재단 상임이사)

-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농림수산식품부도 있을 것임. 답변을 부탁함

○ 이은정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서기관)

- 농촌에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전부 해결할 수는 없음. 3월부터 노동부와 사회적기업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며 부처간 공조체제를 위한 시도로 지역개발, 로컬푸드, 문화재관리보호, 산림녹화 등을 주제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 영농조합에 대한 사회적기업 지원은 논리개발이 필요하며, 소위 농업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

○ 사회자 : 박진도 (충남대학교수/지역재단 상임이사)

- 한드미마을의 경우 왜 농촌형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가?

○ 정문찬 (한드미마을 대표)

- 우리 입장에서는 노동부나 농림수산식품부냐는 의미 없음.
- 돌아오는 농촌을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마을에서 다방면의 사업, 예를 들어 농산물 유통, 식재료 공급, 농촌유학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지역의 빈곤층 자녀들도 농촌체험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담당하

겠는가? 기존 체험마을이 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마을 여건으로서는 도농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함

○ **고경필 (부래미마을 마당쇠)**

- 경제사업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른 지역사업이 통합적으로 접근되지 않고 있음. 경제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며, 사회적기업의 취지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으로는 수익이 되지 않음. 그러므로 경제활동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합해서 추진하면 좋겠음

○ **김병수 (전통문화사랑모임 사무국장)**

- 농촌은 사회서비스 체계가 불확실하고 단절되어 있음. 지역문제로서 농촌문제 들여다 보면 다양한 아이템과 대안이 있을 것임.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사람이 없음
- 농촌에는 지역 내 자족성을 갖게 하는 다양한 업종과 직업군이 존재해야 함. 그 중심에 농업기반이 있는 것임. 하지만 농민들만 있어서는 지역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견인차 역할을 할 주체가 사회적기업이 필요함

○ **김영립 (홍천 우리생약농민연합회 · 한식구공동체 대표)**

- 노동부의 일자리,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농촌농민 문제까지 논의가 전개되어 왔음.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복지부 각각 정부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협력하던지 아니면 통합적 논의 틀 속에서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함

○ **윤종상 (횡성 영농조합법인 텃밭 대표)**

- 농업, 농촌문제의 모든 문제를 사회적기업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부분적 기능을 할 뿐임
- 농촌에서 사회적기업의 신청주체가 없는 것이 문제임. '텃밭'도 신청했으나 안 됐음. 유급 근로자 수가 문제인데, 대표는 유급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농촌 현실에서는 대개 영농조합이 상시근로자를 두기 어려운 실정임. 이런 현실을 노동부는 감안

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사회적기업 신청자격이 있는 기관이 거의 없음.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백명화 (횡성 사회적기업 열린재가사회서비스센터 대표)**

- 사회적기업을 통해 인건비를 해결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사업에 필요한 시설투자비 등 사업비가 부족한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런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횡성지역에서는 우리 '센터'와 '텃밭'이 사업을 연계해 유정란사업, 두부가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돌봄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유정란과 두부의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이재국 (서천 '얼굴있는 먹을거리' 사무국장)**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담당해야 함.
- 농촌형 사회서비스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형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야 함

○ **김정택 (학교급식전국네트 공동대표 · 전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회장)**

-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못해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함. 친환경쌀 유통하고 학교급식 공급하니까 농촌에서도 월급받는 노동자가 생기고 있음. 그런데 이들은 출퇴근 시간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반면 농촌에서 필요한 창의적, 열정적 역할은 다소 부족함
- 노동자이면서 주인인 것이 사회적기업임. 이태근 회장 발표에서도 간단히 언급되었지만, 이와 관련 노동자성, 농촌의 주체 등 농촌형 사회적 기업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지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사회통념과 정부의 인식을 계속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은 현재 시장경쟁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사회적기업 논의를 통해 공공영역의 역할로 되찾아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함

○ **문요한 ((주)이장 연구원)**

- 지역개발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중인데 영농조합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음

- 지역의 사회적기업 준비주체들이 사회적기업을 인건비 지원받는 수단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3) 발표자 정리발언

○ 이은애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 사회적기업은 시민사회의 잠재력, 도덕성, 전문성을 발견한 것임. 농촌지역은 그동안 사람키우는 전략이 부재했던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써 새로운 개념 규정이 계속되어 왔음. 이런 관점에서 다른 의미 부여가 필요함
- 사회적기업은 도시 불안정 고용을 흡수하는 장치로 시작했지만 지금 영세 자영업은 어떻게 할지, 농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제임
- 사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사라져가는 인프라를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지방대 출신의 청년인력을 그 지역의 사회적기업가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 농촌의 책임도 있음. 따라서 현재 농촌 주민만이 아니라, 우리끼리가 아니라 외부의 인력을 포함하기 위한 산-학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설계가 필요함
- 사회적기업 관련 정부 부처간 협력과 통합이 필요함. 그리고 정부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가치가 사라져서는 곤란함

○ 이태근 ((사)흙살림 회장)

- 농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동체 활동을 해 왔음. 이것이 정부의 인증여부를 떠나서 사회적기업 활동형태였음. 다시 말해 농촌은 행위 자체가 사회적기업 활동임
- 농촌형, 농업형으로 사회적기업을 구분하기 보다는 서로 결합된, 협력적 방식의 사회적기업이 추진되어야 함

2. '한국의 농촌형 사회적기업 확대전략' 포럼

1) 발표문 요약

(1) 농촌형 사회적 기업의 확대전략

-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시사점

-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음
 - 첫째는 '일자리 제공형'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부수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범주에 속함
 - 둘째는 '사회서비스 제공형'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부수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임
 - 셋째는 '혼합형'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데, 앞의 두 유형에 비해 시장성이 높은 유형임
 - 넷째는 '지역사회 공헌형'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지역사회 일반 주민을 수혜자로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 2009년 5월 28일 현재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총 244개인데, 그 중 농촌 지역에 소재한 것은 44개이며, 그것들 중 네 번째 유형인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은 그 수가 적은 편임
 -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내용 또한 대부분 폐기물 재활용과 같은 환경관리 분야 활동임.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의 수가 적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농림수산물부가 노동부의 정책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농촌형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 지원 대상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히 부각시켜야 할 유형이 바로 '지역사회 공헌형'이기 때문임
- 국내외 몇몇 연구들은 농촌의 사회적기업은 도시의 그것과는 다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함. 영국의 농촌청(Countryside Agency)은 단순히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지역사회 교통 분야, 지역사회 문화 서비스 공급, 문화유산 및 환경보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이 도시보다 농촌에 상대

적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음(Countryside Agency, 2003)

- 이는 교통 접근성이 안 좋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여건 자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님. 영국에서는 시장실패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발적 결사체 부문(voluntary sector)의 대응 수단으로서 농촌 지역의 사회적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우리 농촌의 현실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 프로그램이 협소하게 지원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를 왜곡시킬 수도 있음. 실제하거나 실제할 가능성이 있는 이론적 개념으로서의 농촌형 사회적기업 개념은 가능한 포괄적일수록 좋다고 생각함
- 즉, '사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차원에 있으며, 잉여를 축적하지 않고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업활동'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사회적 기업 개념을 유지하는 한 가급적 정책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임. 우리 농촌에서의 사회적 기업 활동은 이제 막 맹아가 돋는 시기이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실험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임

나. 농촌형 사회적 기업 확산 전략의 고려사항

- '어떻게 하면 농촌형 사회적 기업이 많이 출현하고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당면과제인데, 중범위 수준에서의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한 쟁점들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농촌 지역사회에의 기여라는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인 가치로 하는 기업활동'이라는 관점을 농촌 지역의 잠재적 사회적기업 참여 주체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임
- 둘째, 농촌 지방자치단체와 파트너십을 이루어 사회적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NPO)나 뜻있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 셋째, 농촌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을 형성하는 데 정부 및 지

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함

- 넷째,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 등 정부의 직접 보조금과는 다른 다양한 출처의 재원이 필요함
- 다섯째, 거버넌스를 잘 형성해야 함. 여타의 농촌개발 정책 사업들과 비교할 때 농촌형 사회적기업이야말로 특히 지역사회 민간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이 전제되어야 하는 일임.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민간 주체가 (진정으로 동등한 위치에 서) 파트너십을 형성하거나 지역의 민간 주체가 독립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을 펼치려 할 때,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시적인 수준에서 특정한 농촌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창립하는 일을 돕는 기술적 지원체계를 잘 마련하는 일 또한 중요한데,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지원 수단을 강구할 것을 제안함

- 사회적 기업 설립 전 지원 : 농촌 지역사회에 사회적 기업 활동 참여의 기회에 대한 인식을 고양함
- 설립 단계에서의 지원 : 이제 막 형식적 요건을 갖춘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사업 법인이 실제 상업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조직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지원함
- 설립 후 지원 : 사회적 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각 국면마다 필요한 다양하고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여 그 생존을 지원함

○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는 사업 발굴 보다는 성장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문제로 옮겨가야 하겠지만, 신생 사회적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수단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음

- 역량강화 : 잠재적 사회적기업 주체들이 뜻을 같이 하는 집단을 형성하고 사회적기업 활동을 계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함
- 지속적인 상담 : 사회적기업의 경영 주체들이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조력자가 지속적으로 또는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언함
- 일시적 기술적 지원 : 시장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재정 예측 및 계획, 사업 법인의 형식 선택 등과 관련하여 한 차례의 단기적이고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함
- 교육훈련 : 사회적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데 필요한 의식, 지식, 기술 등을 갖

추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을 실시함

- 네트워킹과 멘토링 : 사회적기업을 시작한 주체들이 선진지를 견학하거나 일대일 멘토링을 받거나 비슷한 입장에 있는 이들끼리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함
- 고정자산에의 접근성 : 이제 막 설립한 사회적기업이 고정자본을 크게 형성하기는 어렵다. 창업보육센터 등과 같은 방식으로 사무실을 지원함
- 자금에의 접근성 : 설립 초기의 사회적기업에 보조금이나 금융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자금 획득 기회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취득가능한 자금원들의 특징(특히 리스크)에 대해 잘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가능하다면 공공 보조금과 금융기관의 융자 자금을 패키지화하는 프로그램도 검토할 만함

2) 주요 토론내용 요약

(1) 지정토론

○ 문요한 ((주)이장 연구원)

- 노동부 용역으로 (주)이장이 연구한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함. 연구의 주요목적은 지역개발정책과 연계해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었고, 지역개발정책은 기반시설지원과 주민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 예를 들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활력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정보화마을사업, 전통테마마을사업 등 13가지 사업을 선정하고 이와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조사 연구했음
- 조사방법은 공무원, 사무장, 추진위원장 등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으며, 10군데는 면접, 인터뷰 등 심층조사를 진행했음. 연구결과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음. 사회적일자리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수준이었으며, 단순히 '인건비 지원받다가 끊기면 그만두고 말지'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실정임. 둘째, 인력은 필요하지만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쓸 수 없었다는 것임. 셋째, 지역에 영농조합이 있는데 영농조합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넷째, 권역별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농촌,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

- 이를 바탕으로 2가지 정도의 수익모델을 제기하였음. 지역개발정책지원 등은 사실상 하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주민역량이 그것을 운영할만큼 충분하지 못했음. 화천 구은리 마을의 경우 20억원을 투자해서 1년에 운영 수익은 1~2천만원이었고, 올해 4천만원 정도였는데 그것도 7-9월에만 수익이 발생되고 있음. 경제적 논리로 보면 자원낭비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한 소득기반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 거의 없었음. 그래서 첫 번째 모델로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소득기반시설과 체험시설 운영 인력 지원모델을 제시했음. 두 번째, 지역밀착형 모델을 제시했음. 현재 상향식 정책사업의 경우 외부에서 컨설팅 업체들이 입찰을 통해 들어가서 지역자원조사 등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경우 주민역량이 충분히 발휘할 수 없고, 또 그 업체가 떠나면 그것을 놀리게 됨. 지역단위로 그 지역에 기반한 지원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해 마을 지원하고, 사무장 제도도 지역기관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으로 농촌체험 요청이 들어오면 마을을 연계하는 일을 하도록 하며, 이러한 지원기관을 군단위로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노동부의 반응은 2번 수익모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음. 첫 번째 모델에 대해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화 계획을 따로 세울 것이라 함. 하지만 지역 인큐베이터 센터 설치가 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역량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질텐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음. 농림수산식품부가 사회적기업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점을 특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이강익 (춘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책기획실장)

- 일단 사회적경제와 관련 첫 고민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 등 여러 사업을 하는 이유, 목적을 명확히 해야겠다는 것임.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협동조합운동, 특히 80년대 이후 사회적 협동조합운동의 정신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그 이유는 그동안 사회적경제운동, 자활사업을 진행해 온 과정에서 중요한 고민이 발생하는데 첫째, 자활사업 초기, 지역에서는 협동조합운동을 제안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의 고민은 사회적 약자들의 협동운동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음. 반면, 정부에서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좀 더 지속가능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를 수용했고, 그 결과 시민사회 진영 내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국가의 사회서비스 대행기관 역할과 시민사회 자율적 안전망 구축 역할이 모순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음. 여러 시민사회조직들은 제도화된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자신이 가

지고 있던 이상을 펼치기 어려워 이탈하게 되었고, 결국 국가의 사회서비스를 잘 수행하는 역할만 제도화되고 초기 시민사회의 자율적 안전망 구축, 자립조직으로서의 자기 전망은 불투명해지게 되었음.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일자리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자기전망, 자립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안됨

- 둘째, 사회적경제 개념 자체로 보면 지역의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을 활용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적 경제임. 지역의 사회적 필요를 풀어야 하는데 농촌지역 사회적 필요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함
- 셋째, 주체의 문제로서 지역의 주체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일단 농촌형 사회적기업 범주가 문제임. 사회적경제에서 조직들은 다차원적으로 존재하고, 사회적기업은 그 일부분임. 그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보면 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공익형,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단,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 지역자활관련 일자리형, 시장형 등 자활사업단이 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생협과 같은 협동조합 등도 사회적경제조직이라 할 수 있음. 농촌형 사회적기업 지원을 고민할 때 사회적기업이라는 제한된 틀 보다는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시장형 정도는 같이 정책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더 중요한 것은 생산, 유통, 가공, 소비와 마을만들기, 문화복지 등이 연계된 사회적경제 조직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사업연계를 하도록 해 사회적경제 조직들끼리의 연대를 만드는 것임. 따라서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정책에 반영해야 함
- 농촌형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가? 농촌형을 구분하기도 애매함. 정책대상을 구획하는 일이 복잡하고, 특히,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농식품부가 어떻게 안을 수 있을지 의문임. 그래서 업종형태(로컬푸드 등)로 구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 로컬푸드 사업, 농촌관광사업을 시작할 때 관점은 농촌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 도농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음. 로컬푸드 사업은 지역간 연대사업임. 그래서 우리는 춘천-화천-인제-양구를 결합한 제휴모델을 고민 중인데 권역별 조직을 만들고 도(道)단위를 지원해야 함. 권역단위, 도단위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음. 정책제안을 하자면 '도

단위 로컬푸드지원센터'를 만들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교육사업을 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는 생산자 육성, 가공사업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 **사회자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 미리 확인하고 갈 것은 농촌형인가 아닌가의 판단기준을 사회적기업의 위치하는 곳이 농촌인가 도시인가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입지와 무관하게 활동내용 즉, 농업·농촌을 사업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냐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임

○ **김용우 (원주협동사회네트워크 지역농업위원장)**

- 근본적 얘기를 몇 가지 하고자 함.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자발성에 기초해야 하는데 한국사회는 계속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억압해 왔음. 농촌에서는 마을단위 협동조합 만들 수 없고 NPO도 만들 수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한다고 사회적기업이 잘 되는가? 또 다른 비자발적 조직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음. 마을단위 협동조합, NPO를 만들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은 협동조합과 거리가 있음. 농촌에서 영리추구를 위해 만든 제도일 뿐 마을공동체 육성위한 제도가 아님. 새로운 정책하나 더 보태는 것 보다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함
- 사회적기업은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지역살림 공동체임.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은 지역살림형, 복지서비스 제공, 농업살림 등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농촌형'이라는 말을 쓰려면 농업살림의 방향으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함. 농촌에서 무엇을 한다면 농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업이 함께 가는 것임. 농업, 농촌을 중심에 둔 사회적기업으로 가야 할 것이며, 그 방향이 농촌으로 향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귀농, 대안학교, 마을 공동체 등이 포함도아야 할 것임
- 세상의 모든 기업은 자립이 기본목표이며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자본의 형성과 관련이 있으며 자립은 자족을 기본으로 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3 "호"를 해결해야 하는데, 첫째는 호혜적 소유, 자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둘째는 호혜적 노동체계, 농촌형 노동구조 고민해야 함. 셋째는 호혜적 나눔을 어디로 나눌 것인가? 하나는 농산물, 농가공품 생산과 같이 도시로 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서비스, 도농교육, 대안교육이 농촌으로 향하는 것임. 이 틀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제시해야 함

○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 발제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함. 사회적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다른 말로 '지역사회 밀착형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말해 왔고, 사회적기업도 같은 개념임. 발표자께서 사회적기업으로 갈 것이냐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갈 것이냐에 대해 구분했지만 저는 본질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고, 어떤 외피를 갖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함
- 유럽의 경우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장기 실업자 대책을 추진하는 기관임. 사회적기업은 이윤제한이 기본이며,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지만 정부지원이 있음. 즉, 과거 국가 제공서비스를 민간으로 돌리면서 완전 영리기업에게 줄 수 없으므로 이때 이윤을 제한하면서 국가가 일부 지원하여 장기실업자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임. 미국은 창의적기업가 정신을 이용해서 사회문제 해소에 기업을 활용하고 있음. 여기는 이윤제한 없고 지원도 없음.
- 지금 노인인구 비중이 높고, 다문화가정이 거의 다 농촌에 있는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지 못할 가능성,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그들은 거대한 빈곤의 늪이 될 가능성 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한 모델 만들고 가능성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함
-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를 정부 인증기업에만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함. 지원방식과 관련해서도 지금처럼 새로 창출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방식이 얼마나 오래 갈지 의문임. 이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재정상태나 자립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명칭은 널리 쓰되 사회적기업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장애인, 출소자, 탈북자등에 인건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사회보험이나 퇴직금 등 지원으로 지원방식을 바꿔야 함. 그리고 창의적 기업가정신으로 사회공헌에 기여할 경우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을 쓰고, 정부지원보다는 민간지원 방식으로 지원방식도 다양화 되어야 함
- 만약 정부지원을 받는다면 이윤분배 제한, 의사결정의 민주성이 핵심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사실 현재 사회적기업 제도 자체에서 정부지원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지만 기존 제도를 활용할 필요는 있음. 어느 정도 특성을 살리려면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지자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지자체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없는 토지, 건물, 기계 등을 지원할 수도 있음

- 또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다가 농림부에서 돈을 주고 모니터링 하는 것,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다가 자금을 지원해 주고 농촌형 사회적기업 모델도 확산 시키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임. 농림부-노동부 MOU체결을 통해 영농조합, 농업회사 등 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되 선발은 철저하게 해야 함. 가령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대다수는 노인이고 젊은 사람 한 두 명인 마을에 마을의 이름의 빌어 소수에게 자원이 집중되는 방식은 부적절함. 많지는 않지만 좋은 모델을 발굴해내려는 노력이 필요함
- 거버넌스 문제는 노동부도 고민임. 기초지자체 역량이 다르고, 단체장과 공무원의 생각도 차이가 있는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잘 되는 곳은 잘 되지만 지역으로 돈이 내려가기 어려운 곳도 있음. 아직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야 함

(2) 자유토론

○ 김상현 (춘천 소양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

- 농촌자원은 자연자원, 농산물, 노인인데 사람없다고만 하지 말고, 노는 노인분들에게 두부만들기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함. 무조건 이익만 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함. 농촌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농사와 기업활동이 되어야 함

○ 박판주 (상주환경농업학교)

- 문요한 연구원 발표내용에서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유희시설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기존의 사무장 제도와 같은 사업내용 아닌가? 그렇다면 현재 그런 제도가 있는데 왜 농촌의 지역개발사업이 안 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함
- 사회적기업이 단순히 인건비지원으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함

○ 강태욱 (사천 비봉내마을 대표)

- 시설운영문제는 인력지원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문제임. 인력양성은 어느 정도 수준의 인력을 키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공유가 필요함
- 지역에 기반한 기관 간의 네트워크 필요성 주장에 동의함. 네트워크 설립과 그 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농업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 김연기 (뚝만지협회 회원)

- 지역을 다니다 보면 모두 지역의 특색이 없음. 지역마다 농산물의 특색이 없으면 판매도 어렵게 됨. 농촌형 사회적기업도 지역마다 특성을 반영하고 고민해야 함

○ 이빈파 (서울 관악지역 학운위협의회 대표)

- 지속가능한 도농교류가 중요함. 그것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방안임. 로컬푸드 운동이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과제, 영역의 범위까지 연결되며, 사회적기업의 인력지원 등 여러 문제를 정상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먹는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함

○ 김대립 (청원 영농조합 대표)

-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를 구분해야 함. 사회적기업이라면 아이টে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자립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정부지원에 의존해서는 성공한 모델을 만들기 어려움. 왜냐하면 정부가 정해진 틀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 틀에 맞추어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주민들의 독창적 아이디어가 발휘되기 곤란하기 때문임
- 어떤 틀을 정해 놓고 사회적기업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님. 지역에 맞게 농산물, 환경자원을 활용해 활동하고자 하는 사업아이টে을 심사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신청자의 자격을 엄격히 하기보다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함

○ 정순영 (옥천신문 기자)

- 사회적기업의 자립은 어느 정도까지의 자립을 말하는 것인가? 사회적기업이 왜 반드시 자립해야 하는가?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 내에서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유럽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시장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정부가 그러한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함

○ 윤종상 (횡성 영농조합법인 텃밭 대표)

- 기존의 사회적기업과는 차별화되는 농업형 사회적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 방향은 단작화된 농업을 바꿔 다품목 소량생산을 하는 협동형 농업을 실천하는 것이며,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면 다른 지역에서 그 모델을 보고 실천할 수 있을 것임

○ 김영규 (홍성 풀무생협 전무)

- 사회적기업이 진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임.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제이지만 농업을 경쟁력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함. 농촌에서 수익을 내는 사회적기업이 쉽지 않음. 오히려 농업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함

○ 김진숙 (청소년미래희망 대표)

-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함. 로컬푸드운동이 시대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이 쉽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3) 발표자 및 토론자 답변

○ 김정섭 (한국농경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적기업이 농촌발전을 위한 폭넓은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오히려 아주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의미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그동안 간과해왔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임
- 사회적기업이 자립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자립개념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받는 것도 포함해야 함.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전적으로 공공부문으로부터 자원을 조달 받아서 운영되는 조직이 되어서는 곤란함
- 농촌형 사회적기업을 선언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농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조직 정도로 잠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당함
- 농식품부가 정책을 펴도 인건비 지원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법, 정책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요함. 그렇게 하면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음. 농촌지역개발사업하면서 짓는 건물의 공적 관급공사, 한우사육 모니터링 사업 등의 예가 있음

- 농식품부는 노동부와 많은 협의를 해야 하지만 그냥 지자체 보고 하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임.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박찬입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 김정섭 박사의 마지막 주장과 관련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어느 민간주체랑 얘기할 것인지,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지자체가 마음에 드는 상대만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임
-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관련 정부가 바뀌어 정부 지원이 끊기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거나 정부가 요구하는 자판기가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함. 그래서 정부 지원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님

○ 문요한 ((주)이장 연구원)

- 사회적기업 지원이 현재 제도상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했다는 말씀을 드림. 안 되는 지역이 아니라 잘 되고 있는 지역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더 잘되게 해보자는 의견임. 더 중요한 건 지역 밀착형으로 사전에 자원을 개발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제안도 했음. 귀농·귀촌인들에게 2~3년 인건비 지원을 하여 그것이 종자돈이 되고, 안정적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김용우 (원주협동사회네트워크 지역농업위원장)

-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함. 그렇게 되려면 여기저기서 자연스럽게 협동조합, NPO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법과 제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임
- 조직이 종자돈이 있어야 인건비를 지원받고, 사회적기업이 돌아갈 수 있음. 그런데 새로 만드는 사회적기업들은 돈도 없으면서 인건비 지원에 매몰되어 있는데 이걸 안 됨.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자유롭게 협동조합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강익 (춘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책기획실장)

-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듦. 농촌형 사회적 협동조합 개념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한다는 생각임

- 로컬푸드 사업을 하면서 드는 고민인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연결되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소비자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연계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사회자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적이라는 말의 상대적 의미 즉,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맡겨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회적기업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적이라는 말의 상대적 개념으로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사회적기업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임.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개인과 국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체가 협동조합, NPO 등임
- 그리고 왜 '농촌형'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는 것인데,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법에는 사회적기업 활동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도시지역에서는 그 두 가지가 의미있지만 농촌에서는 이것만으로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형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농촌에서 필요한 것은 자연자원이나 환경의 유지보전, 지역사회개발 분야와 관련한 활동들이 필요하기 때문임
- 주체문제도 농촌에서는 농촌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자가 주체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행의 사회적기업에서는 이들의 주체적 참여가 어렵게 되어 있음

○ 박진도 (충남대학교수/지역재단 상임이사)

- 우선 사회적기업을 정부가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기업들 중에서 정부가 필요한 것에 대해 지원하는 형식을 정하면 됨
- 사회적경제의 영역은 넓을 수 있지만 사회적기업을 너무 넓게 정의하면 원래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 아닌가?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회적기업가가 운영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정의해야 사회적기업의 대상이 분명해 진다고 생각함. 그래서 창의력을 가진 사회적기업가가 농촌에 필요함
- 마을단위가 아니라 좀더 넓게 보면 농촌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음. 농촌에서도 사회적기업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

3. '지역개발과 농촌형 사회적기업' 포럼

1) 발표문 요약

(1)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활동분야와 그 가능성

- 김정원 (자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가.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정의

- 농촌형 사회적기업은 농업과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한 농촌재생이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는 내발적 발전을 통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조직되고 운영이 되는 사회적기업을 의미함
- 먼저, 농촌형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활동을 해야 하며 둘째, 사회적 기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농촌의 취약한 역량을 고려할 때 사회적 기업은 지역 외부에서 자원을 유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사회적기업의 운영이 지역 내 각 주체들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함

나. 농촌형 사회적 기업의 활동 분야

-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입각해 활동 분야를 아이디어 수준에서 설정한다면, 크게 '로컬푸드', '그린투어리즘', '마을 역량 강화'를 생각해볼 수 있음. 이 세 분야는 모두 농업 및 농촌을 기반으로 하며, 지속가능성의 추구, 농촌 내부 역량의 강화, 도시와 농촌의 관계성 중시, 지역 주체들의 밀접한 협력 관계 등의 특성을 갖고 있음

<①로컬푸드 분야 >

- 로컬푸드는 얼굴없는 거래로 상징되는 글로벌푸드와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의 대면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어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를 형성시키는 특성이 있음

- 글로벌푸드는 이윤을 매개로 집단 간 관계를 형성시키는데 반해, 로컬푸드는 신뢰를 매개로 집단 간 관계를 형성시킴. 따라서 로컬푸드는 사회 집단 간의 호혜적 관계를 이끌어내는 첩경으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음
 - 한편,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안전성의 문제를 통해 건강에 개입할 수 있고, 공공급식의 문제와 보건복지 분야에 개입할 수 있음. 또한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먹을거리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환경문제도 개선할 수 있으며 각종 농촌체험과 연계해서 교육 및 관광과 연결될 수도 있고, 농산물-음식-요리의 지역성을 부각시키는 문화적 효과도 있음
 - 또한 로컬푸드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생산자 조직 간의 네트워크는 농민의 역량강화로 나아갈 수도 있음
- 로컬푸드를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조직화와 관련해서 고민한다면, 농산물 가공과 유통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런 활동은 생산자인 농민들이 직접 담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 담당해야 할 부분인데, 현재 (유)나눔푸드나 샬롬의 집, 행복나눔도시락사업단은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사회적기업이 로컬푸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②그린투어리즘 분야>

- 그린투어리즘은 대체로 정부의 농촌개발정책과 결합되어 있는데, 이 정책들은 주로 주민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주민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
- 그린투어리즘이 성공적으로 마을(지역)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지 도시민이 농촌을 체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농촌은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도시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의 각종 문화 콘텐츠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결부되어야 함
- 그린투어리즘의 공공적 운영은 매우 중요하며, 이의 일환으로 마을회사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마을회사는 주민들이 출자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주요 역할은 마을의 그린투어리즘 분야의 활동임
- 아직 이 분야의 사회적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갖는

한계가 크기 때문임. 따라서 인증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마을회사’와 관련한 별도의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③마을역량강화 분야>

- 마을역량강화 영역은 농촌 지역민의 학습을 어떻게 도모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 식에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학습은 농업기술에 대한 학습이 아니라 지역자원의 발굴, 지역간 네트워크의 구축, 지역민 스스로의 다양한 실천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 등을 의미함
- 마을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은 기본적으로 농촌 마을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써 농촌지역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실천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어떤 측면에서는 그린투어리즘과 결합하기도 하며, 때로는 로컬푸드 영역과 결합할 수도 있음
- 다만, 이런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은 그린투어리즘이나 로컬푸드를 직접 사업으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으로 마을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함
- 따라서 현재의 농촌 지역민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농촌 외부에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을 조직해 구성될 수도 있고, 역량있는 귀농인을 조직할 수도 있음. 마을가꾸기와 지역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농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인 (주)이장은 이런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사례임

<표 6-7> 농촌형 사회적 기업 활동 분야의 내발적 발전과의 관계

	로컬푸드	그린투어리즘	마을역량강화
지속가능성 추구	· 산업간 연계로 지역순환경제 도모 · 소농 및 고령인구에 기여	· 지역의 잠재적 자원 발굴 · 친환경적인 체험 여행	·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추구
역량 강화	· 생산자 튼튼해짐 · 사업의 부산물 발생	· 주민 주도의 사업 구상 · 마을 주민이 직접 운영 · 사업의 부산물 발생	· 주민의 마을문제 해결능력 배양
연계성 강화	· 도농 교류로 외부 자원 유입 · 인근 도시로 확대 가능	· 도농 교류로 외부 자원 유입 · 출향민 활용 가능성	· 마을 외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방식
통합성 강화	· 주민 및 지역 주체간 협력 필수(학교급식, 결실계층 지원, 공공기관 구매 등) · 생산자 조직화 필수	· 주민 및 지역 주체간 협력 필수	· 주민 참여와 협력이 기본인 사업 방식

다. 농촌형 사회적 기업의 조직화 방안

<①주체의 형성>

- 사회적기업의 조직화는 시민사회의 주도적 실천을 기반으로 해야 하나 한국의 농촌에서 사회적기업의 조직화를 선도할 시민집단을 찾기는 쉽지 않음. 따라서 농촌형 사회적 기업의 조직화를 위한 주체는 좀 더 범위를 넓혀 비영리조직, 각종 생산자조직과 지역 주민 등 시민집단 외에 지방정부까지 포함해야 함
- 사회적기업의 조직화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은 주체들이 지역의 내발적 발전에 동의하는 것이며 사회적기업이 여기에 중요한 실천을 할 수 있는 조직임을 인식하는 것임. 그러한 의미에서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조직화에 지역자활센터가 적극적 주체로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됨

<②자원의 조직화>

- 사회적기업은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대신 이를 지역 내·외에 흩어져있는 각종 유·무형의 자원을 조직해서 보완해야 함. 따라서 자원의 조직화는 사회적기업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정부 및 기업의 각종 프로젝트는 지역의 재정적 취약함을 보완할 수 있는 자원이며, 출향민은 지역 외부에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임. 지역 내부에 있으나 많은 경우 지역발전에 결합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지 않는 귀농인도 중요한 지역의 자원이며 지역의 문화자원, 자연자원 역시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임

<③제도의 이용>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자활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대표적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들을 비롯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각종 농촌개발프로젝트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이 사업들을 상호 연계해야 한다는 것임
-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제정을 통한 사회적 시장의 창출도 중요함. 특히 지역 내 사회적 시장(사회적 시장이란 뚜렷한 학술적 정의가 이뤄진 개념은 아님. 대체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지역 내 유력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창출한 비경쟁시장을 지칭함)의 창출은 취약한 농촌의 현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가령, 학교급식이나 결식계층 급식과 같은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지방정부 등이 사회적기업에게 민간위탁을 준다면, 훌륭한 사회적 시장이 될 수 있음

<④경로의 설정>

- 사회적기업을 조직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경로의 설정임
 - 먼저, 모색단계는 조사를 통해 지역의 과제를 파악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함. 물론 이때 내발적 발전 전략에 입각할 필요가 있음. 사업을 발굴하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게 바람직한지 판단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의 준비로 연계시켜야 함
 - 둘째, 준비단계에서는 자원을 조직화해야 함. 물론 자원의 조직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외부와의 활발한 교류까지 포함함.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습과 훈련은 필수적임
 - 셋째, 사회적기업이 설립된 후에는 지속가능한 조직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또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해야 하며, 이 때 평가는 사회적 감사로 이뤄져야 함

(2) 주요 토론내용 요약

가. 지정토론

- 임경수 ((주)이장 대표)
 - 농촌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전부 농촌형 사회적기업은 아님. 김정원 박사가 발표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이 내발적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함. 그리고 주민교육이 사회적기업 성패의 중요한 관건임
 - 세계화와 자본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 이루어지다 보니 일자리가 축소되고, 그렇다 보니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농촌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함
 - 글로벌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함. 사회적기업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역사회 내의 연대와 협력 때문이며 특히, 농촌에서는 연대와 협력이 더 원활하기 때문에 농촌에서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이 큼

- 사회적기업은 보통 유럽식과 미국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식이 맞다고 생각함. 농업·농촌의 문제는 시장기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예를 들어 도농교류는 얼굴을 대면함으로써 형성되는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이는 사회적경제 시스템의 원칙으로 해결해야 함
- 김정원 박사께서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활동분야로 로컬푸드, 그린투어리즘, 마을역량 강화를 제기하셨는데 우선, 로컬푸드는 소농과 가족농이 접근해야 하는 분야임. 그리고 그린투어리즘은 현재와 같이 시장경쟁방식으로 마을간 무한경쟁을 시키는 체제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어렵다고 생각함
- 농촌에서 사회적기업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실천 중 하나임.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은 그러한 주민 활동 중 굉장히 표피적인 부분만을 커버함. 오히려 지역주민의 자발적 조직을 육성하고 이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하지만,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노동부의 기준에 맞추는데 이렇게 하면 망할 가능성이 큼. 오히려 자기활동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경우 제도를 활동해야 한다.
- 사회적기업을 위한 새로운 교육기관, 새로운 지원센터 등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공기관의 중복적인 역할을 조정할 필요도 있음

○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우선, 김정원 박사의 발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함. 첫째, 시민사회의 실천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함. 민간영역 전부인지 아니면 봉사단체나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인가? 둘째, 사회적시장이란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을 말하는 것인가? 셋째, 내발적 발전의 관점을 명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내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아닌가?
- 사회적기업을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정의도 있음.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형태 규정은 없음.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함
- 사회적 일자리는 일반 일자리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함. 사회적기업을 일반경쟁시장과 분리,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임. 사회적기업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이익을 추구해야 지속가능함. 또한,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은 반드시 필요한가? 정부지원을

사회적기업의 기본요건으로 생각하면 안 됨

- 사회적기업가는 봉사정신이 강해야 한다고 인식하는데, 오히려 사회적기업가라면 기업적 경영능력이 더 중요한 자질임. 영국에는 농촌 사회적기업(rural social enterprize)가 있는데 농민가게(shop), 직거래장터, 농촌환경보전, 커뮤니티, 의료·복지·교통·주거 관련 일들이 그들의 활동영역이다. 다만, 개별 영리추구 여부는 내용마다 차이가 있음

○ 이태근 ((사)흙살림 회장)

-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야 함. 그리고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활동분야로는 농업생산에 관심을 두어야 함. 농사지어서 농민들이 생존하려면 두가지 일(two-job)을 해야 함. 대농들은 사회적기업에 반대함. 결국 중소농들의 생산활동에서 사회적기업이 역할을 해 생산을 양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목표로 설정해야 함
-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도 중요하며 농촌형 사회적기업가의 육성도 중요함.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는 사회적기업가가 배출되어야 하고 서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임
-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형태는 마을형 기업이 핵심이라고 생각함

○ 김달수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

- 김정원 박사의 발표내용에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의 하나로 로컬푸드를 제기했음. 로컬푸드는 이제 도덕적 상식임.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의 발전경과를 보면 양에서 질로, 질에서 안전성으로, 다시 도농교류와 신뢰형성으로 발전했고, 이제 로컬푸드로 그 관심이 옮겨지고 있음. 하지만 국내 생협들은 지역농산물 판매에 소극적임. 사회적기업의 로컬푸드운동에서의 역할이 기대됨
- 그린투어와 관련 보령, 서천, 순천으로 컨설팅 투어를 다녀왔는데 가장 많은 문제제기는 자원간의 연계성이 없다는 것이었음. 다른 영역과의 네트워킹이 필요함.
- 일본의 예를 보면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 자체가 학습임. 이러한 것부터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도농상생과 연대를 위해서는 도시민들의 생활혁신이 필요함. 예를 들어 도시농업은 농촌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임. 도시농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활동도 농촌형 사회적기

업의 활동영역에 포함시켜야 함

나. 발표자 답변

○ 김정원 (자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김태연 교수의 질문과 관련 1, 2섹터가 아닌 그 밖의 영역이 시민사회영역이라고 생각함.
- 사회적 시장은 학술적 정의가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질문하신대로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대체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의해서 창출되고 있음
- 농촌형 사회적기업은 일반 사회적기업과 다른 활동, 다른 조직방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매개하는 계기는 '지역재생'이라고 생각함

다. 자유토론

○ 사회자 : 박진도 (충남대학교수/지역재단 상임이사)

- 농촌형 사회적기업 논의에서 '농업·농촌 자원활용'을 토대로 논의한다고 할 때 정부나 지자체가 농촌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람

○ 전남 녹색포럼 사무국장

- 농촌에서는 마을공동체 복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로 재편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중에서 농촌형 사회적기업도 역할이 있을 것임
- 농촌지역은 자본과 인력으로 부터의 단절상황인데 이것을 복원해야 함.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형성이 중요한데, 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김남진 (목포시민)

- 현재 농촌은 1차 농업생산으로 유지되기 어려움. 가공(식품산업), 유통, 농외소득 증대를 실천해야 함.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영세한 농민들이 각자 알아서 할 수 없음. 마을사람들이 분업을 해서 활동하도록 해야 하고 활동분야도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도시민 체험, 관광사업 등 다양한 분야를 더 개발해야 함

- 농촌형 사회적기업은 이런 일을 하는 마을의 조직체이고 마을기업임. 마을 중심, 농민중심으로 마을기업들이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이 지원해야 함

○ **한석주 (간디공동체 사무국장)**

- 농촌에서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하는 요인들부터 해결해야 함. 정주기반이나 교육 문제 등..... 그리고 공적부조를 재생시키고, 농촌문화의 생산기반을 살려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각 지역 마을단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함

○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영국 정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처음에 정부가 많은 자본투자를 했으나 지원이 끊기면 망하더라. 그래서 방식을 바꿔 모범적 사회적기업을 다른 곳으로 복제하려 했고 효과가 조금 있었음. 복제가 안되는 곳을 대상으로 왜 안될까하는 문제의식으로 살펴봤더니 성공하는 지역에는 지역리더가 있는 곳이라는 결론을 얻었음
- 다시 말해 사회적기업가의 양성과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임. 그리고 영국에서 사회적기업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해보니 '외롭다'는 것이었음.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임.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사회적기업가의 양성과 훈련, 그리고 그들의 네트워크 형성임

○ **임경수 ((주)이장 대표)**

- 농촌형 사회적기업은 도시와 다르고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다른 것이어야 함. 따라서 정부의 역할도 기존의 지원사업과 달라야 함. 그렇다면 농촌특수성을 반영해야 하고, 기존의 농업지원방식과 달라야 함. 농촌은 한 사업을 발굴하면 다른 사업이 축소됨. 예를 들어 할머니 폐지 줍기사업을 빼앗은 청년 폐지줍기 사업과 같음. 지역 내 내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외부에 빼앗겼는데, 이것을 극복해야 함
-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원업무기관의 활동을 통합해서 활용하고, 그 지원업무의 하나인 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함

○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처음에 영국에서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지원기관이 있었지만 농촌을 아

는 조직은 별로 없었음. 일반 컨설팅 업체가 많았고, 정부의 정책은 컨설팅 비용을 대주는 것이었음. 농민입장에서 상점(shop), 레스토랑 사업계획을 점점 받을 수 있었는데 초기에는 그 컨설팅 내용이 부실했으나 10년쯤 지나니 그 컨설팅 기관들이 농업농촌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했음

- 지역의 컨설팅 기관들은 정부나 다른 기관에 대해 잘 모름. 따라서 파트너십 형태의 상위기관 설치가 필요함. 그리고 지원기관 통합 전에 좀 더 많은 지원기관들이 먼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함. 정부의 지원은 외부의 지원기관들이 농업농촌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

○ 이태근 ((주) 흙살림 회장)

- 농촌지역에 사람이 있어야 함. 사람이 유지되고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필요함. 그리고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또 그것을 네트워크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임수진 (전 농어촌공사 사장)

-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본부기능을 강화해서 대기업 등 일반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리고 사람 모으고, 자본 모으는 역할을 농식품부가 지원해야 하며,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기업 생산물품을 팔아주는 기능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김정택 (전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회장)

-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가가 관건임

○ 김상현 (춘천 소양호권역 추진위원)

- 일례로 조건불리지역 지원자금을 전액 출자해서 땅 사고, 풍력발전하고, 팬션짓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잘 사는 마을을 만든 예가 있음. 그러한 사례를 농촌형 사회적기업과 접목해 볼 필요가 있음

○ 김태인 (함께일하는재단 팀장)

-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노동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임. 사회적기

업이 업종별로 분화하고 있어 부처별로 지원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방식으로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노동부가 간사역할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사회자 : 박진도 (교수/지역재단 상임이사)**

- 지역리더의 육성, 지역주체의 한 유형으로써 농촌형 사회적기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농촌형 사회적기업은 지역성이 강조되어야 함. 또한 농촌형 사회적기업은 공공성과 경영, 경쟁 모두를 배제할 수 없으며, 일반기업과는 살아남는 방식이 달라야 함. 이런 점에서 농촌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 참고문헌 >

- 김성기(2008), 「사회적 기업 특성에 관한 쟁점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36권 2호
- 박은희(2009), 『대구경북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2009, 대구경북연구원
- 박찬임(2009), 「사회적 기업 창출 및 육성을 위한 과제」, 『노동리뷰』 노동연구원
- 신봉호·성주인(2006),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활용」 박시현 외, 『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전략』, 농촌경제연구원
- 엄형식(2008),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유럽 경험과의 비교와 시사점』, 정책연구원 총서 02, 서울: 실업극복국민재단
- 장원봉(2008), 「한국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전망」 『동향과 전망』 75호
- 지경배(2008), 『강원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강원발전연구원
- Borzaga, C. and J. Defourney, 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 Borzaga, C. and Spear, R. (eds.) 2004, *Trends and Challenges for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in Developed and Transition Countries*, edizioni 31, Trento
- Borzaga, C. and E. Tortia, "Social Enterprises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hanging Boundaries of Social Enterprises*, Noya, A. (ed.), Paris: OECD.
- Cafaggi, F. and P. Iamiceli, 2009, "New Frontier in the Legal Structure and Registration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In *The Changing Boundaries of Social Enterprises*, Noya, A. (ed.), Paris: OECD.
- Girard, J-P, "Solidarity Cooperatives(Quebec, Canada): How Social Enterprises Can Combine Social and Economic Goals," In *The Changing Boundaries of Social Enterprises*, Noya, A. (ed.), Paris: OECD.
- Chaves, R. and J. Campos, 2007, "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 http://www.eesc.europa.eu/groups/3/index_en.asp?id=1405GR03EN
- Defourny, J., 2001, "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In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Borzaga, C. and J. Defourney, (eds.), London: Routledge

- Defourny, J., 2005, *Social Enterprise in an Enlarged Europe: Concept and Realities*, Kracow Social Economy 2005.
- Hansmann, H., 1996, *The Ownership of Enterpris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Leibenstein, H., 1966, "Allocative Efficiency vs. X-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6(3): 392-415.
- Nyssens, M. 2006,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ies*, London: Routledge
- Kerlin, J.A., 2009, *Social Enterprise: A Global Comparison (Civil Society: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 Office of the Third Sector, 2006, *Social Enterprise Action Plan-Scaling New Heights-*, Cabinet Office, U.K. (신경희, 이인희 역,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ネットワーク, 2009,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のすべて』

ぎょうせい

細内信孝(2006), 『みんなが主役の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 ぎょうせい,

細内信孝(2001), 『地域を元氣にする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 ぎょうせい,

細内信孝(1999),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 1999, 中央大學出版部